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3년 12월 18일)

연구수행기관	한림대학교
연구책임자	조은경 (심리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이인영 (법학과 교수)

목 차

요약문	15
I. 서론	3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33
1) 수용자 처우와 인권일반론 및 문제점	33
2) 여성수용자 규모	36
3) 여성수용자 처우관련 규정	37
4) 형평성 문제	39
5) 여성수용자의 생활실태와 처우실태 및 문제점	42
3. 여성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48
1) 여성수용자의 인권 및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분석	48
2) 여성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49
3) 여성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보장을 위한 현행법 분석 및 개선방안의 모색	50
II.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조사	51
1. 조사 방법	51
1) 조사 기관 및 조사 일정	51
2) 여성 수용자 조사 방법	53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조사	56

4) 여성 교도관 조사	56
2.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57
1) 응답자의 특징	57
2) 거실 생활	68
3) 여가 활동	74
4) 의료 실태	82
5)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한 문항	90
6) 교육	101
7) 작업	108
8) 집필	113
9) 접견	115
10) 서신	120
11) 규율과 징벌	122
12) 수용자 권리 구제 수단	128
13) 분류 처우	134
14)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138
15) 개선을 바라는 점	140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 조사 결과	143
1) 거실 내 시설 조사	143
2) 거실 외 시설 조사	156
III. 기준점으로서의 피구금자처우규칙과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비교	186
1.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현행 행정법령과의 비교	186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186
2) 피구금자의 분리	187

3) 거주설비	189
4) 개인위생	192
5) 의류 및 침구	194
6) 급식	198
7) 운동 및 경기	201
8) 의료	202
9) 규율 및 징벌	208
10) 계구	213
11) 정보 및 불복신청	217
12) 외부와의 교통	220
13) 도서	227
14) 종교	228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230
16) 피구금자의 이송	234
17) 시설직원	236
18) 감독	242
19) 수형자분류	243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247
21) 수형자 교도작업	249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2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256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수형자	259
25) 미결수용자	260
2. 현행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4
1) 수용자의 인권 보장 및 제한규정	264
2) 여성수용자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점	267

IV. 여성수용자의 처우방향과 실태조사와의 비교282

1. 여성수용자 처우규정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282
1) 피구금자의 수용의 기본원칙	282
2) 피구금자의 분리	284
3) 거주설비	288
4) 개인위생	292
5) 의류 및 침구	295
6) 급식	298
7) 운동	301
8) 의료	303
9) 규율 및 징벌	312
10) 계구	317
11) 정보 및 불복신청	320
12) 외부와의 교통	325
13) 도서	331
14) 종교	332
15) 피구금자의 소유물 보관	335
16) 피구금자의 이송	336
17) 시설직원	338
18) 감독	342
19) 수형자 분류	342
20) 수형자에 대한 특전	345
21) 수형자 교도작업	349
22)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354
23) 수형자의 사회관계 및 갱생보호	357

24) 정신장애 및 정신이상 수형자	358
25) 미결수용자	361
V.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364
1. 주요 항목별 여성수용자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364
1) 피구금자의 분리 및 여성수용시설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2) 거주설비	366
3) 수형자 분류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368
4) 의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69
5) 외부와의 교통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0
6) 수형자 교도작업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1
7)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2
8) 규율 및 징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및 입법례	374
VI. 여성 교도관 조사	377
1. 조사기관의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현황	378
1) 여성 교도관 현황	378
2)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379
3) 기타 직원 현황	379
4) 여성 교도관 교육 현황	380
2. 여성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381
1) 설문지 구성	381
2)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382
3) 기관별 여성교도관 응답 비교	384
4) 남성교도관과의 비교	391

5) 직급별 비교	392
6) 여성 교도관 학력별 비교	395
7) 직무탈진감과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396
3. 여성 교도관 면담조사 결과	399
1) 면담 실시 과정	399
2) 여성 교도관 면담 결과	399
VI. 논의 및 제언	410
1.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처우상의 문제점	410
1) 여성수용자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문제점	410
2) 여성수용자의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	411
3) 여성 수용자의 생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412
4) 분류심사상의 문제점	413
2.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416
1) 거주설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6
2) 개인위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8
3) 의류 및 침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18
4) 급식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9
5) 운동 관련 문제점	420
6) 의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1
7) 규율 및 징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4
8) 계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6
9) 정보 및 불복신청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6
10) 외부와의 교통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28
11) 도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29
12) 종교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30

13) 피구금자의 이송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0
14) 수형자에 대한 특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1
15) 수형자 교도작업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2
16) 수형자의 교육 및 오락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433
3. 여성 교도관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434
4. 여성 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435
1) 여성 수용자 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435
2)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436
3) 가족 접견 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437
참고문헌	439
부록 1: 시설조사표	443
부록 2: 여성수용자 설문지	
부록 3: 교도관 설문지	
부록 4: 심층면접 조사표 (여성수용자용)	
부록 4: 심층면접 조사표 (여성교도관용)	

표 목 차

<표 1-1> 구금시설 수용자 성별 인원	37
<표 1-2> 교도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43
<표 1-3> 수감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문제	44
<표 2-1> 여성 수용자 조사대상 시설	52
<표 2-2> 조사기관별 여성 수용자 수용 현황 대비 조사인원 수	52
<표 2-3> 여성 수용자 조사 일정	53
<표 2-4> 기관별 수용자 면담 대상자 특징	55
<표 2-5> 설문 응답 여성 수용자의 나이	58
<표 2-6> 설문 응답자의 학력	59
<표 2-7> 설문 응답자의 입소전 결혼 상태	60
<표 2-8> 설문 응답 여성 수용자의 자녀 관계	60
<표 2-9> 설문 응답자의 직업	62
<표 2-10>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63
<표 2-11> 설문응답자의 범죄 전과	64
<표 2-12> 설문응답자의 전과 경력 (복수 응답)	65
<표 2-13> 설문응답자의 교도소 복역 경험	66
<표 2-14> 설문응답자의 입소 범죄명	67
<표 2-15> 설문 응답자의 형기	68
<표 2-16>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	69
<표 2-17>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70
<표 2-18>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의 폭행 경험	71
<표 2-19>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의 대응	71
<표 2-20> 교도관의 차별적 대우	72
<표 2-21> 마음이 불편한 경우	73

<표 2-22>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74
<표 2-23>	운동량	75
<표 2-24>	운동공간과 기구	76
<표 2-25>	TV시청과 라디오 청취	78
<표 2-26>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복수응답)	78
<표 2-27>	도서구매와 신문열람	80
<표 2-28>	종교집회	81
<표 2-29>	구금시설 내에서 해본 여가 생활(복수응답)	82
<표 2-30>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	84
<표 2-31>	구금시설에 입소 후 겪은 증상(복수응답)	85
<표 2-32>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	86
<표 2-33>	부인과 질환	88
<표 2-34>	치과진료	89
<표 2-35>	정신적인 문제	90
<표 2-36>	임신과 출산 경험 여부	91
<표 2-37>	임신에 관한 문항	92
<표 2-38>	출산에 관한 문항	93
<표 2-39>	수유에 관한 문항	94
<표 2-40>	성적 수치심에 관한 문항	96
<표 2-41>	입소시 신체검사에 관한 문항	98
<표 2-42>	성폭행 관련 문항	99
<표 2-43>	남자 교도관의 순찰에 관한 문항	100
<표 2-44>	차별 대우	101
<표 2-45>	기관별 직업교육, 정신교육, 신입자교육 실시 유무	102
<표 2-46>	입소할 때 받은 교육	103
<표 2-47>	입소 후 받아 본 정신교육	105
<표 2-48>	직업교육	106

<표 2-49>	직업교육에 대한 희망	108
<표 2-50>	작업유무 및 작업의 종류	109
<표 2-51>	작업 상여금	110
<표 2-52>	작업에 대한 태도	111
<표 2-53>	작업 희망 여부	113
<표 2-54>	집필신청에 관한 문항	114
<표 2-55>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	115
<표 2-56>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	117
<표 2-57>	접견실외에서의 면회	120
<표 2-58>	가족과의 면회 및 서신	121
<표 2-59>	서신 검열과 폐기에 관한 문항	122
<표 2-60>	징벌 경험	123
<표 2-61>	최근 5년간 여성 수용자 징벌 현황	123
<표 2-62>	징벌 경험에 관한 기타 문항	124
<표 2-63>	체벌경험 및 기타 문항	126
<표 2-64>	금치 집행시 의사의 건강진단 여부	127
<표 2-65>	징벌에 대한 이의 제기	128
<표 2-66>	청원절차에 대한 교육	129
<표 2-67>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권리	130
<표 2-68>	고소	130
<표 2-69>	면담 신청	131
<표 2-70>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	132
<표 2-71>	진정신청에 따른 부당 대우	134
<표 2-72>	분류심사	135
<표 2-73>	기결 응답자의 누진계급	136
<표 2-74>	분류처우에 관한 문항	137
<표 2-75>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139

<표 2-76> 출소 후 재정 문제	139
<표 2-77> 수용생활 중 힘든 점 (자유응답)	140
<표 2-78>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자유 응답)	140
<표 2-79> 수용 기관별 거실 수와 여성 수용자 수	143
<표 2-80> 거실당 수용인원	145
<표 2-81> 분리 수용	146
<표 2-82> 조명등	147
<표 2-83> 창문과 환기시설	148
<표 2-84> 수도시설과 화장실	150
<표 2-85> 바닥 난방	151
<표 2-86> 거실 내 선풍기	152
<표 2-87> 거실 벽면 상태 및 TV	155
<표 2-88> 사물함	156
<표 2-89> 신체 검사실 환경	157
<표 2-90> 목욕탕 시설	159
<표 2-91> 목욕	160
<표 2-92> 세탁 및 건조실	162
<표 2-93> 급식	165
<표 2-94> 의료시설	169
<표 2-95> 정신과 진료	170
<표 2-96>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설치 여부	171
<표 2-97> 장애인 거실	172
<표 2-98> TV 및 라디오에 관한 항목	174
<표 2-99> 조사기관별 종교시설	175
<표 2-100> 면회실 및 접견실 시설	177
<표 2-101> 여성 수용자 출역 현황표	178
<표 2-102> 임신, 출산, 양육	180

<표 2-103> 생리대 지급	182
<표 2-104> 여사동내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현황	183
<표 2-105> 진정함에 관한 항목	184
<표 3-1> 여성 수용자의 죄명 별 인원 (1992년-2001년)	268
<표 3-2> 여성범죄자의 전과	269
<표 3-3> 여성수용자의 형명 및 형기별 인원	270
<표 3-4> 여성 수용자의 범수 별 인원 (1992년-2001년)	271
<표 3-5>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	272
<표 3-6> 여성 수형자의 학과교육실적 (1992년-2001년)	273
<표 3-7> 여성범죄자의 직업	274
<표 3-8> 여성 수형자의 직업훈련실적 (1992년-2001년)	275
<표 3-9> 여성 수형자의 석방사유별 인원 (1992년-2001년)	276
<표 3-10> 여성범죄자의 혼인관계별 분포	277
<표 3-11> 여성범죄자의 생활정도	278
<표 6-1> 교도관 설문 응답자 수	377
<표 6-2> 개별면담 여성교도관 소속별 분포	378
<표 6-3> 기관별 여성 교도관 직급별 현황	378
<표 6-4> 기관별 의사, 간호사, 영양사 현황	379
<표 6-5> 각 기관별 기타 직원 현황	380
<표 6-6> 최근 5년간 여성 교도관 교육이수 실적	381
<표 6-7> 여성 교도관 설문조사에 사용된 척도	382
<표 6-8> 설문조사 교도관 직급별 분포 및 연령 분포	383
<표 6-9> 설문조사 교도관 근무 부서 및 최종학력별 분포	383
<표 6-10> 기관별 여성교도관 vs. 여성수용자 비율현황	384
<표 6-11> 근무기관별 여성교도관의 직무탈진감, 직무 특성 및 직무 만족도	386
<표 6-12> 남녀교도관 직무탈진감,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	392

<표 6-13>	교도관 직급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전체 교도관)	393
<표 6-14>	여성교도관 직급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394
<표 6-15>	여성교도관 학력별 직무탈진감 및 직무특성 비교	396
<표 6-16>	여성교도관 설문 문항간 상관관계 분석	398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요약문)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의 생활실태 및 구금 환경을 조사하여 그들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하고, 여성수용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처우보장 규정의 운영실태 및 법리적 함의를 분석하여, 여성수용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권리와 처우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실증적 연구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개별면담, 구금시설 환경조사, 여성교도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개별면담 등으로 구성되었고, 규범적 연구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과 비추어 여성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현행법 분석 및 외국 법령과의 비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여성수용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 및 처우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성수용자 구금시설은 여성전용교도소 1곳을 포함한 5개 교도소와 구치지소 1곳을 포함한 4개 구치소 그리고 보호감호소 등의 10개 시설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총 501명이었고, 개별면담을 실시한 여성수용자는 총 81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교도관은 총 115명

이었고 개별면담에 응한 여성수용자는 총 35명이었다. 여성교도관과의 비교를 위해서 남성교도관 106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여성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1) 거실생활

여성수용자들이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은 거실의 냉난방이 잘 안됨(41.3%), 거실공간이 협소함(41.9%),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33.5%),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음(29.1%) 등이었다. 이 결과는 이전의 여성수용자 생활실태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1999)에서도 유사하게 지적된 바 있어서 거실생활 면에서 별로 향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조사된 10개 구금시설 중 여사동 전체에 거실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곳은 2개 시설이었는데 이 시설에서는 병실과 출역수 거실에만 바닥난방이 가능했다. 시설에 따라서 바닥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곳도 있었다. 조사시설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여름철 냉방을 위해서 거실벽에 선풍기가 장착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행형법과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규칙에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범이 있으나 조사된 모든 시설에서 이 원칙은 환자, 문제수용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미결수와 기결수는 서로 다른 거실에 분리수용 되고 있었지만 연령이나 범죄경력을 고려한 분리수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2) 개인위생

대부분의 시설에서 여름에는 매일 샤워를 하고 겨울에는 1주일에 한번 목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정해진 횟수와 시간 내에 해야 하므로 여성수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의류 및 침구에 대한 세탁을 원할 때마다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냄새 등 청결문제를 호소하는 여성수용자들이 많았다. 절수를 이유로 일정 시간에만 거실내 수도시설이 작동하는 곳이 22.7%, 거실 내 수세식 화장실이 작동하지 않는 곳인 54.5%로서 여성수용자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3) 급식과 건강유지

급식의 양은 부족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급식의 질은 구급시설마다 여성수용자들의 평가가 상이했고 비위생적인 식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 사람은 9.2%를 차지하였다. 조사된 10개 시설 중 유자격 영양사가 있는 곳은 6군데뿐이었다.

4) 운동과 여가활동

행형법 시행령에는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수용자들의 운동 시간을 30분인 경우가 60.1%, 20분 이내인 경우도 13.6%로 대부분의 여성수용자들이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운동기구가 별로 없었고 운동시설이 실내에 있거나 너무 협소한 시설도 있었다.

TV시청과 라디오 청취는 시간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시설에서 가능했으나 수용자가 방송이나 채널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수용자들은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었는데 일부 시설에서는 영화관람, 운동회, 합동생일잔치, 명절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었다. 구급시설에 비치된 도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여성수용자가 51.4%였으며 자비로 도서구매신청을 하는 사람이 54.9%로 나타났다.

5) 종교활동

조사된 10개 구급시설 중 여성수용자를 위한 종교시설이 없는 곳이 2군데 있었는데 한 곳은 직원 식당에서 종교집회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아예 여성수용자들의 종교집회가 없었다. 종교집회가 있는 모든 시설에서 기독교 집회가 있었으며 그 외에 불교, 천주교 집회가 많았다. 정기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수용자는 45.5%였고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람도 20.2%나 되었다.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사람보다(22.2%) 불만족한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29.2%).

6) 의료문제

약 절반 정도의 여성수용자가 입소 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했으며, 정기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25%에 불과했고,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은 79.6%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은 입소시 혈압과 몸무게 정도만 측정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정기검진도 교정청에서 실시하는 순회 X-ray 촬영이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 시설에서 여사동 내에 여성수용자 전용 진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4군데밖에 없었으며 여사동에 진료실이 없는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진료를 받아야 되어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여사동 내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2군데였고 그 외는 남사동 의무과에서 외부 치과 의사가 방문진료를 할 때 진료를 받거나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제 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의 진료가 가능한 시설은 10중에서 3곳에 불과했으며 심리적인 문제나 적응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7) 생리, 임신, 출산, 양육

여성수용자가 매달 겪는 생리와 관련해서는 생리대의 지급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생리대는 자비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에서 지급해주고 있었다.

구금생활 중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들 중 병방에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은 52.2%였으며 구금시설 내에서 산전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성전용구금시설 1군데밖에 없었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외부병원 진료절차를 받아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 출산이 임박한 여성수용자는 1개월-3개월 정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외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금시설 내에서 출산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사 대상 구금시설에서 유아전용실이나 유아놀이방을 갖춘 곳은 한 군데도 없어서 구금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를 대동한 여성수용자들은 거실에 대한 특별배려가 있긴 하지만 거실이 좁아서 아이가 커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유아의 목욕이나 유아용품의 소독 등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아플 경우 엄마 때문에 아이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8) 성적 수치심

조사대상 여성수용자들 중 43.8%가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적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낀 때는 신체검사 받을 때로 나타났다(68.9%) 목욕할 때와 이송할 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수용자들이 약 20% 정도 되었다. 여성 교도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다고 한 응답자도 15.8% 있었다. 입소시 신체검사 절차상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하고, 생리중인 여성수용자에게 생리대까지 제거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9) 교육

여성수용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3곳,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2곳, 신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곳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여성전용시설 1곳밖에 없었고 어떤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4곳이나 있었다. 입소할 때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여성수용자는 68.1%에 달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대부분 수용생활 중 지켜야할 규율 및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 접견, 형기 기산일 및 종료일, 징벌 등에 관한 내용이 많았고 수용자의 기본권리나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정신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는 23.4%에 불과했는데 학과교육이나 교양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수용자가 있어도 교육받을 대상이 너무 소수라서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고 기관측에서는 말하였다.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는 15.6%에 불과했는데 그들 중 37.4%만이 직업교육이 출소 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직업훈련을 받은 장기수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이 너무 오래 전의 일이고 교도소 자격증은 빨리 나가려고 따는 것이지 출소 후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46.7%가 앞으로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희망하는 직업교육은 미용, 조리, 제빵, 미싱 양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부통근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는 1.6%에 불과했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정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대부분의 구금시설에서 기결 여성수용자가 소수인데다가 그들 대부분 식당이나 사동에 출역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10) 작업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여성수용자는 35.1%였으며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직원 식당 취사가 가장 많았고, 청소, 기계자수 및 미싱, 마대 자루 만들기, 봉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작업이 힘들고(65.6%) 지루하지만(38.8%) 재미있고(40.6%) 유익하다(45.2%)는 사람도 있었다. 직원식당 출역수에게는 거실 수용면에서 난방과 휴식 등 다소의 배려는 있었지만 노동의 양과 질로 미루어볼 때 작업 상여금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작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62.2%였으며 그 중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싶다는 여성수용자가 가장 많았다. 거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여성수용자가 많다는 사실과 작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매우 많다는 것은 수적 열세라는 이유로 여성수용자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선택권이 없는 작업지정은 여성수용자의 적극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11) 접견

조사 대상자의 66.7%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구금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이라고 한 것은 가족과의 교류가 여성수용자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전반적으로 면회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짧다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는 72.8%가 칸막이가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를 면회한 후에는 긍정적인 기분보다는 부정적인 기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견실이 아닌 장소에서 면회하고 싶은 사람으로 자녀(41.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31.7%), 배우자/애인(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수용자의 경우 출소 후 엄마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

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다. 여성수용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점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임을 감안할 때 가족들을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배려해주거나 가족합동접견, 부부접견, 주말면회, 원격화상접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수용자의 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수용자 전용 접견실이 있는 곳은 10개 시설 중 8군데였고, 원격화상접견실을 갖춘 시설은 7군데였다. 여성수용자를 위한 부부접견실이나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을 갖춘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12) 집필과 서신

응답자의 62.7%는 집필신청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집필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들 중에서 집필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이 15명, 집필허가를 받은 문서에 대해서 압수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명이었다. 허가받지 않은 집필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은 경우도 5명 있었다. 여성수용자들은 집필의 내용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구금생활에 관한 내용은 압수 당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구금생활 중 집필한 것은 어차피 출소시에 못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피상적인 내용들만 적게 된다고 말했다. 집필 형식도 노트 등 정해진 용지에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신을 작성한 후 폐기된 경험이 있는 여성수용자는 43명이었고 그 중 서신이 폐기된 사실과 폐기 이유에 대해 통고 받은 사람은 33명밖에 안되었다.

13) 징벌

징벌을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6%였는데 그 중 경고와 금치가 각각 7명, 작업정지가 1명이었다. 한 가지 잘못에 대해 이중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4명 있었으나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징벌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징벌위원회를 거

처서 징벌이 결정된 것인지를 모르는 여성수용자도 절반 가량 되었다. 여성수용자를 위한 조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구금시설은 없었으며 대개는 상담실 혹은 직원의 집무실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징벌시 계구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3명, 체벌을 받아본 적이 있는 응답자 15명 있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체벌은 정좌와 자술서 쓰기로 나타났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들 중 집행 전이나 후에 의무관의 진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진찰을 받았다고 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징벌혐의나 집행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여성수용자보다 모르고 있는 여성수용자들이 더 많아서 여성수용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14) 수용자 권리 구제 수단

부당한 처우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권리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여성수용자는 17.1%에 불과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여성수용자는 27.6%에 불과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해본 적이 있는 9명의 여성수용자 중에서 청원 결과에 대해 전달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41.2%였는데 면담신청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면담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27.6%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를 알고 있는 여성수용자는 57.4%에 불과했고 알고 있더라도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실시된 교육이나 교도관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48.4%였고 나머지는 책이나 신문, 다른 수용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처우에 불만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많았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 절차를 몰라서, 신청서를 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등의 이유로 면전진정 신청을 못한 여성수용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수용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면 교도관 선에서 차단되거나 진정서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고소, 청원, 인권위원회 진정신청, 면담신청 등을 해본 여성수용자는 총 57명이었는데 그 중 12명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한 집필보고전이 제때 처리되지 않았거나 서류가 검열을 받은 뒤 발송되지 않아서 진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여성수용자도 9명씩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수용자들은 각종 권리구제수단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은 낮았다.

15) 분류처우

기결 여성수용자들 중에서 분류심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2.6%였는데, 그 중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등을 받았다는 사람보다 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 자신의 누진계급을 알지 못하는 수용자도 25.1% 있었고 누진계급 산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수용자는 33.9% 있었다. 누진계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교도관의 편파적 행위와 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한 수용자가 가장 많았다. 본인의 책임점수를 알고 있는 수용자보다 모르는 수용자(63.8%)가 더 많았고 책임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모르는 수용자가 대부분이어서(78.1%) 책임점수와 소득점수에 대한 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교도관의 재량이라고 생각해서 생활을 잘 하면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수용자들이 많았다. 누진계급에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지 모르는 수용자가 59.9%였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 지식보다는 동료 수용자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분류심사결과와 책임점수 및 매월 소득점수에 대해서 교도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아울러 여성수용자들은 자신의 분류심사결과를 알려고 교도소 측에 요구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4. 여성교도관 조사 결과

여성교도관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여성 교도관의 근무여건과 직무 만족도가 여성 수용자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여성교도관들은 남성교도관에 비해서 직무특성 및 직무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탈진감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여성 교도관은 남성 교도관들보다 '정서적 소진', '비인격화'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성취감', '직무만족도', '직업 재선택 기회'와 같은 항목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서적인 탈진을 많이 느끼는 여성 교도관일수록 여성 수용자에 대한 비인격화 경향도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 낮았고, 교도관 직업을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성교도관들은 같은 일의 반복, 수용자들을 관리하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수용자들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같은 부적정서를 여러 번 경험할수록 교정직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직급별로 비교했을 때 직급이 낮을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직업에 대한 애착도 낮았다. 여성교도관의 직무 만족도, 정서적 탈진감, 비인격화 경향성은 여성수용자들의 처우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교도관이 이처럼 직무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인원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듯하다. 각 시설마다 여성교도관의 숫자는 최소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자리를 비워도 기본 업무에 차질이 올 정도였다. 여성교도관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잦은 야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은 남성 수용자 사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들은 정보의 측면에서 다소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으며, 교육 혜택이나 인사고과 점수에서 남성교도관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여성교도관의 근무환경은 남성 교도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수용자 사동의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교도관이 더불어 겪게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5. 여성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1) 여성수용자 전용 수용시설 및 설비 필요

유엔의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조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가능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여야 하며, 남성과 여성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여성용으로 할당된 설비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저규칙 제23조에서는 여성용 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에서는 제4조에 남성과 여성은 격리 수용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단순히 이성간의 격리수용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적합한 행형시설이 필요하다. 계속 증가하는 여성수용자의 수를 고려하면 여성수용자 전용의 시설이 필요하고 그 시설은 여성의 생리적 특성, 특히 산전·산후 간호와 부인과 진료를 위해 필요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현재 여성전용 수용시설이 1개소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수용시설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체계의 필요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수용자의 경우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정처

우의 근간인 개별처우의 기본이념에 비추어보면 소수라 해서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여성 수용자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처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동등성은 남성과 똑같은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적합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특성, 수용생활에 대한 적응태도, 처우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여성수용자의 분류심사와 분류기준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3) 직업훈련의 선택 가능성 및 전문성 제고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71조에 의하면 교도작업은 가능한 한 석방 후 정직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수형자의 능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실용적인 직업훈련은 적당한 직업선택에 부합하고 시설관리와 규율에 필요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35조에 의하면 '수용자의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은 수형자에게 장래의 생계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해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 규칙이 수용자에게 원하는 종류의 작업의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행형법의 규정은 전적으로 소장이 정하는 규정상의 작업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선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 여성수용자의 작업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위한 양장, 자수, 미용, 요리 등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출소 후 많은 여성들에

게는 가정주부로서 돌아갈 가정을 이미 상실했거나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위해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할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러한 직업훈련은 출소 후에 여성수용자에게 독립된 생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더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여성수용자에게도 사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설관리와 규율이 적용되어야 하겠다. 여성수용자의 경우에도 원하는 종류의 작업을 고를 수 있는 적극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4) 가족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행형법 제18조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기준규칙에 의하면 접견권은 기본권으로서 필요한 감독을 전제로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행형법은 필요할 때에는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제한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형법 시행령의 규정형식으로 30분 내로 접견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접견횟수를 매월 4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1988년 12월 9일 채택)의 부속문서 원칙 제19조에 의하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를 둔 여성수용자의 경우 그들의 원만한 수형생활과 성공적인 재사회화

를 위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처우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을 위한 방문접견의 확대실시로 부모역할 훈련이나 상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미성년 자녀 접견시에 일반 접견실이 아닌 특별 접견실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은 현행 행형법의 규정에 따른 소장의 재량에 의해 시행처분이 아닌 여성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 것이다.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의 일상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여성수용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와 처우 보장규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구금시설의 환경 및 여성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여성 수용자의 처우 상 인권문제는 남성 수용자 또는 일반적인 수용처우의 문제와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처우 권리 이외에 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이 적극적으로 처우를 받을 권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 수용자들의 생활과 처우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그것이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가지는 법리적 함의를 분석하고 여성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금시설의 여성수용자들에 대한 권리와 처우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금 여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성 수용자의 생리적, 신체적 특성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신체구조나 생리작용에 있어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월경, 임신, 출산, 폐경 등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생리작용과 남성에 비해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남성과는 달리 정기적인 월경 및 월경간의 여성 심리는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분비로 인하여 상당히 불안해지며

인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최응렬, 1998).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의 수용소내의 생활과 작업환경을 남성과 차별을 두어, 여성의 생리적, 물리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박경선, 1996).

여성 수용자의 심리적 특성

여성은 남성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준거해 볼 때 심리적인 차이점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과 불안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IV, 1994). 수용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불안과 우울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에 따른 처우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간 관계 지향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여자 수용자의 수용소내의 적응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가정을 가진 여성은 아내와 엄마로서 기대되는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한다.¹⁾ 관계 지향적인 여성의 특성상 구금 생활 중에도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가족에 대한 역할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범죄자가 출소 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문제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특성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통념은 남성 범죄자보다 여성범죄자를 더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9년 실태조사에 응답한 총 719명의 여성 수용자들 중에서 328명 (46.4%)이 결혼해서 남편과 가정이 있으며 525명 (74.2%)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여성 수용자들의 가정 유지와 모성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용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겪어야 할 고통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자 수용자에 있어서의 직업훈련 및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현재 여성 수용자에게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여성상에 맞는 직업, 즉, 양장 봉제, 한복, 수자수 공예, 미용, 한식 조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에 나아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인 훈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여성 수용자의 처우상 인권문제는 남성 수용자 또는 일반적인 수용처우의 문제와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용 시설 내에서의 남성과의 차별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처우 권리 이외에 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이 적극적으로 처우를 받을 권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 수용자들의 생활과 처우 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그것이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가지는 법리적 함의를 분석하고 여성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 수용자 처우와 인권 일반론 및 문제점

수용자의 처우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의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입장은 범죄인을 개선하고 교화하여,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록 일반인들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그들의 인간존엄성과 관련

된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

오늘날 행형의 지도이념 중의 하나는 재소자와 사회 사이에는 격리, 고립화, 차별화의 방향이 아니라, 가능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유사한 방향으로 생활 처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국에서 제정, 개정된 행형법은 물론,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지침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한인섭, 1990).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입장과 목표와는 달리 현재 구금시설 내의 수용자들의 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용조건

현행 행형법은 수형자를 폐쇄 시설에 독거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그밖에 규율 위반에 대한 징벌조치의 하나로 징벌방에 수용이 있다. 그러나 행형 실재를 살펴보면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은 엄격한 구별 없이 시설 운용이 편의라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독거수용제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 1시간 내외의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감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 감방의 면적도 지극히 좁고,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배어 있으며, 통방과 면담의 기회도 허락되지 않아 사실상 가중된 징벌효과를 자아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감방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폐쇄적 시설에서의 독거수용형태는 그것의 반인도적 측면에서는 물론, 범죄자의 사회복귀 이념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행형의 추세와도 배치된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개방적 처우가 원칙이 되고 있고, 이러한 개방처우 가운데도 개방된 시설내에서의 처우 및 외부통근제, 귀휴제, 주말구금제와 같은 반자유 처우, 그리고 교도소와 사회의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처우소(half-way house)등과 같은 다양한 처우형태가 실험되고 제도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방처우의 경향은 결국 재소자의 자율과 책임감을 함양하고, 처우내용의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품성과 자질의 함양을 꾀하는 것으로, 독거수용제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용실태와 관련 법제를 살펴 볼 때 현대적 형사정책의 방향과 상반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념에 위배되는 측면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한인섭, 1990).

(2) 위생과 의료조건

재소자가 심신의 이상이나 질병을 호소할 때 행정당국은 가장 적합한 의료적 검진, 치료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거기에 대응하여 재소자들은 소내 병원시설에의 진료청구권이 보장되고, 소내 시설로 감당하기 곤란한 질병일 경우에는 사회내 치료시설로 이송되어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2001년 9월 현재, 전국교도소 의료관계 정원 64명에 비해 54명이며 이 가운데 구금시설에서 상근하지 않는 비전임이 10명으로 되어 있어 실제 상근 의사는 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 64명, 약사 2명, 공중보건의를 23명으로 의사 1인당 재소자의 수는 1,161명으로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술직 등 의료보조인력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의사들이 교소도라는 특수환경과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구금시설 내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현실적인 보수체계나 근무 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전문의료인력 확충과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 공중보건의를 현실적으로 증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도 일반적으로 수용시설 내에서의 작업조건, 징벌집행, 권리구제, 서신 및 집필권, 계구 사용 등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앞에서 이야기 된 바와 같이 현재 범죄자의 처우가 개선과 교화 그리고 재사

회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특히 여성수용자의 있어서의 그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것이다. 우선 여성수용자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여성 수용자의 규모

전체 범죄 가운데 여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 범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이 각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범죄율은 전체범죄율과 비교하면 10%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범죄자의 수와 비교해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 수용자의 비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약 5% 정도이다. 그러나 여성 수용자의 비율이 남성 수용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처우가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수적 열세의 경제학적 논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며 그러한 논리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표 1-1> 구금시설 수용자 성별 인원

구분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62,982	70,036	64,641	61,346	61,921
기결수용 자	소계	34,372	36,811	38,737	38,224	38,521
	남	33,381	35,400	37,218	36,874	37,162
	여	1,172	1,411	1,519	1,350	1,359
	여성비율(%)	3.4	3.8	3.9	3.5	3.5
미결수용 자	소계	28,609	33,225	25,904	23,122	23,400
	남	26,459	30,388	24,063	21,521	21,649
	여	2,150	2,837	1,841	1,601	1,751
	여성비율(%)	8.1	8.5	7.0	6.9	7.5

출전: 법무부 교정국 통계자료 (2002). <http://www.moj.go.kr/corrections/data>

3) 여성 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우리 나라 행형법 및 관련 법규정에서 여자수용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행형법(行刑法) 제4조 “남자와 여자는 격리 수용한다” 라고 하여 단순한 분리 수용이 아닌 별도 건물의 격리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동법(同法) 제8조 신입의 여자가 소생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와 수용 중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 생후 18개월까지 같이 있게 할 수 있으며,

·동법(同法) 제10조 여성수용자의 신체와 의류에 대한 검사는 여자 교도관이 하도록 하고,

·동법(同法) 제24조로 수용자의 두발은 위생상 짧게 깎게 하였으나 여자수용자는 예외로 하였고,

·동법(同法) 제30조 임신부는 환자에 준하여 처우하게 하였다.

·행형법시행령(行刑法施行令)에서는 제13조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유아를 다른 보호자에게 보호하게 하거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고 있으며,

·제18조 여자신입자(女子新入者)나 여자수용자의 목욕시의 참여는 여자교도관이 하게 하고,

·제28조 남자교도관은 여자교도관 참여 없이 독거수용한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51조 수용자를 이송할 때 남자와 여자수용자를 함께 이송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94조 여자수용자에게는 화장품의 사용을 허가하며

·제103조 여자수용자의 분만에 필요하다면 조산부를 둘 수 있게 한다.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2조 임신부는 수용자 분류처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계호근무준칙(戒護勤務準則) 제163조 유아를 대동한 부녀(婦女)에 대하여는 특히 유아의 보육면에 유의하도록 하였으며 임부에게는 출산준비를 해주도록 하고 생리중인 자에 대하여는 자극적인 언동을 삼가게 하고,

·계호근무준칙 제326조 출정시 여자수용자는 여자직원이 검신하게 하고,

·계호근무준칙 제328조 출정자 동행시 여자와 남자는 분리동행 하도록 한 점

등이 여자수용자에 대한 배려의 전부이다 (강봉학, 1998).

이러한 법률에서 고정관념적인 여성상, 즉 여성의 두발에 관련된 조항과,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여성의 인권보다는 남성의 측면에서 보는 여성다움을 위한 항목으로 보여진다. 모성보호와 관련된 조항 역시, 기본이 되어야

함에는 당연한 일이지만, 여성에 대한 처우가 단지 모성과 관련된 사항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엄마로서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봉학(1998)은 수용관리적 측면에서의 규정만 있을 뿐 여자수용자에 대한 배려적 규정은 없다고 보았다. 여성은 남성과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수용자에게 반드시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4) 형평성 문제

(1) 여성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의 문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9년에 여성 수용자의 처우실태를 조사하면서 여성수용자들이 남성 수용자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에 대한 처우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여성 수용자들은 그들에 대한 처우가 남자 수용자에 비하여 '열악한 편'이라 응답한 빈도가 총 676명중 228명으로 33.7%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수는 53명으로 7.8%, 더 좋은 편이라 응답한 수는 75명 11.1%이며, 잘 모르겠다 라는 응답이 320명으로 47.3%로 나타났다.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인 형평성의 결여는 교정처우의 양(quantity)과 질(quality)은 물론이고 다양성과 가용성의 측면에서 남성 범죄자의 교정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도소의 여성수용자에게 제공되는 많은 교화 개선적 프로그램의 부정적 특징의 하나는 프로그램들이 출소 후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전통적, 또는 전형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도작업으로는 목공, 인쇄공, 철공, 양화공, 영농공, 식품가공, 플라스틱공, 스테인레스공, 축산공, 장류공, 직조공, 신발공, 편직공, 봉제공, 석공, 블록공 등 16개공과 외부통근작업 및 위탁작업 등이 있

으며, 작업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작업 등급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힘이 약한 여자수용자들은 높은 등급을 받는 작업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실시할 수 있는 작업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 범죄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우 프로그램이 적고 질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 내용도 미용이나, 한복, 수자수 등 전통적인 가정주부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많은 여성들은 출소 후 가정주부로서 되돌아갈 가정을 이미 상실하였거나 가장으로서의 생계부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여성 출소자들이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은 기술은 출소 후 여성 범죄자의 독립적인 생활의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범죄자에 대한 교정교육과 처우 등 교화 개선적 프로그램은 대부분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금시설에서 제한된 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금시설화(prisonization)에 더불어 여성 수용자에게는 여성 고정관념화까지 가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여성 수용자 분류의 문제

교도소 수용자 분류는 재소자의 특징과 위험성에 따라서 적절한 보안 시설과 교화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교도소 여성 수용자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남성 수용자에 비해서 여성 수용자의 분류는 과학성과 엄밀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이윤호, 이수정, 공정식, 2000). 여성 재소자는 남성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덜 폭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류를 통한 관리의 전문화 필요성이 적게 대두되었을 수도 있다. 현재 교정당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제도는 성중립적 분류(gender-neutral classification)로서 남녀 재소자에게 동일한 요소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보안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 중립적 분류제도를 여성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검증되

지 않은 채 여성에게 사용되고 있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분류제도를 만들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되고 그러한 제도를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며, 성별을 분류요소로 고려할 때는 차별적 처우라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Nesbitt & Argento, 1984).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 적합한 분류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부적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폭력성이 낮고 전과 기록이 많지 않으며 폭력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낮고 자녀와의 접촉 등이 특별히 필요한 여성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류체계는 수적 열세와 비용이라는 논리로 인해 여성 수용자가 받아야 할 처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와 여성범죄자는 분류상으로는 동일한 보안 등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구금 시설에 수용된 여자 재소자는 남자 재소자에 비해 위험성이 적고 도주의 가능성도 낮으며 폭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동일한 보안 처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과잉분류하는 결과를 낳는다. 여성 범죄자의 특성상 여성 수용자는 보안보다는 교화개선적 관심에 강조를 둔 분류제도가 적합하다. 그러나 현행 분류제도는 남성 재소자들을 위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성 수용자들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만들어진 현행 분류제도가 여성 수용자의 분류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와 인식이 높기 때문에 분류제도를 여성 수용자에게 맞도록 수정하거나 가중치나 분기점(cutting point)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이운호, 이수정, 공정식, 2000, p.127). 가장 바람직하게는, 여성 범죄자를 여성 전용 구금 시설에 수용하고 여성 교도소 단위의 분류절차를 개발하여 수형기간과 수용생활태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여성 전용 교도소가 전국적으로 한 개뿐이고, 남성 중심의 구금시설에 여성을 분산 수용하다보니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남성 중심으로 교정시설이 운영되다 보니 그 동안 여성 수형자의 처우에 대해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라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처우가 이뤄지고, 제대로 된 교정교화가 되어야 수감시설이 그 몫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전국 유

일의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가 2003년 10월 600명 수용규모에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 여성 전용교정시설이 확대 설치될 필요가 있다(최응렬, 1998).

5) 여성수용자의 생활실태와 처우실태 및 문제점

(1) 생활실태와 문제점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들의 인권실태를 알아보려면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구금시설 내에서 받게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동료 수형자와 교도관과의 관계들도 이해해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6년과 1999년에 실시한 여성수용자들의 수형생활실태 및 처우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겪고 있는 처우실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다. 청주여자교도소(330명) 및 수원교도소(29명), 의정부교도소(15명), 대전교도소(15명)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 결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66.7%로서 가장 높았고, 동료 수형자들과의 관계(12.0%)와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8.8%) 및 교도소에서의 일상생활(8.5%)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구금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지 모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남성보다 견디기 어려워하는지도 모른다.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와 교도소 일상생활 문제는 인권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2> 교도소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가장 견디기 힘든 점	명(%)
가족에 대한 그리움	228 (66.7)
동료 수형자들과의 관계	41 (12.0)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	30 (8.8)
교도소에서의 일상생활(목욕, 의료, 물품지급 등)	29 (8.5)
자유가 없는 것	10 (2.9)
이성에 대한 그리움	3 (0.9)
없음	1 (0.3)
계	342 (10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9년 조사는 여성 수용자들의 처우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청주여자교도소(284명) 및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여성 수용자 7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은 겨울철의 추위(62.6%)와 여름철의 더위(50.1%) 등 날씨와 관련된 적응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주거 공간의 협소함(50.1%)도 절반의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약 1/3의 응답자들은 위생문제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시설문제나 환경의 문제 외에 특이한 점은 동료 수용자간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심리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구금시설 내에서 동료 수용자나 관리직원과의 관계 문제는 수용자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래에서 여성 수용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6년과 1999년에 실시한 여성 수용자 생활 환경에 대한 조사 및 2000년에 실시한 여자 수용자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기결 여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결 여성 수용자나 다른 구금시설의 여

성 수용자에게 꼭 들어맞는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라도 여성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할 수는 있으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표 1-3> 수감생활 중 어려움을 겪는 문제

구 분	명 (%)
겨울철의 추위	445 (62.6)
거실공간의 협소함	356 (50.1)
여름철의 더위	348 (48.9)
수용자간의 갈등	271 (38.1)
목욕 및 샤워의 부족	225 (31.6)
건강문제	189 (26.6)
식사의 위생문제	68 (9.6)
경제적인 문제	68 (9.6)
사생활의 노출	51 (7.2)
사 례 수	665 (10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수형자들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그들이 거주하는 거실이고, 수용환경을 결정하는 것은 거실의 환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실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거실의 개인 당 면적, 밝기, 환기상태, 화장실의 위생문제, 화장실 이용의 어려움, 거실의 난방온도, 습기정도 등인데, 여성 수형자들은 거실의 환경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특히 거실의 난방온도, 거실의 습기상태, 거실의 개인 당 면적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성 수형자의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대부분이 가임기의 여성이 많아 몸을 잘 살펴야 함에도 그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듯하다. 거실의 난방온도가 낮고, 습기 상태 역시 안 좋아 옷을 든든히 입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의복이나 침구가 추위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수형자들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의복이나 물품 등에 대한 불

만도 많았는데 수형자들은 특히 겨울철 옷이나 침구가 추위를 막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침구의 위생상태 역시 좋지 않고, 내의에 대한 품질도 낮게 평가하였다. 내의에 대한 품질이 낮아 입지 않고 밖에서 들여와서 입음으로써 국가의 예산도 낭비되고, 내의가 버려지거나 걸레나 수건 등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침구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도 여성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빨래를 자주 하거나, 햇볕에 말릴 수 있는 시간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침구가 더럽더라도 오랜 시간 쓸 수밖에 없다.

공동 생활을 하는 특성상, 시설의 위생상태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샤워시설이나 시간에 대해 큰 불편이 없다고 설문조사에는 답했지만 목욕, 샤워문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31.6%나 된다는 사실은 수용자들이 개인위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운동이나 오락, 의료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TV의 경우 수형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운동의 경우엔 하루에 16분 이상 30분 이하라고 대답한 수형자가 79%에 달했다.

거실의 개인 당 면적이 작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움직임이 적은데다 운동량도 적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수감 생활 중 건강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74%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 수형자가 자신의 건강이 수형 생활로 인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써, 실제 수형 환경이 이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병이 생겼을 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전체 응답자의 70%가 수월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여성 수형자들은 수형 시설 내의 의료 상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다고 여겨진다. 교도관에 의한 몸수색을 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교도관의 경우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이 여성 수용자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검색이나 혹은 목욕시의 감시가 필요 이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

리고 생리대의 지급이나 생리통에 대한 의료 지원 등 여성 수용자의 생리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였다.

(2) 관계적 측면에서의 실태와 문제점

교도소 여성 수형자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동료 수형자와의 관계가 12%,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 8.8%, 교도소에서의 일상생활(목욕, 의료, 물품지급 등)이 8.5% 등이었다 (표2 참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료수형자나 교도관들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은 커다란 스트레스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견디기 힘든 점으로 여성 수형자들은 꼽았지만, 면회나 주말 면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수형자들은 대부분 면회를 부자유스럽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자식이나 갓난아기가 있는 경우에도 칸막이 앞에서 짧은 시간 면회를 실시하여 대개 형식적인 면회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수형자들은 면회시간이 짧은 이유를 수형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회 환경을 개선시키고 가족들과의 만남,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수형자들이 가족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는 것은 출소 후 그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여 재적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동료 수용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고민이 생겼을 때 별로 말하지 않거나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전체 응답이 52.7%로 절반이 넘었고, 출소 후에 만나지 않을 거라는 응답도 70.5%로, 교도소 내 동료 수형자들과의 친밀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여성 수형자의 경우 범죄에 대한 전념이나 출소 후 공모 등의 문제가 남성보다 적기 때문에 동료 수용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역기능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신뢰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와 위안을 느낀다. 정서적 지지감 상실과 대인관계의 소외감은 여성 수용자들에게 우울함이나 불안함을 증가시켜 정신적인 침체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

수용자간의 갈등은 거실을 옹기는 방법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수용자들간에 공동체적인 인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갈등의 완화와 정서적 지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도관이나 관리직원의 비인격적인 처우는 직원에 대한 훈련을 통해 수용자들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을 바꿔주고, 교도관에게도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3) 수용자 프로그램과 문제점

현재 교정기관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정교화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수형자 처우의 궁극적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으며, 교정 시설 내에서의 교정활동은 수형자 개개인의 자질을 개선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현재 교도소에서는 학과교육, 정신교육, 직업훈련, 종교활동, 정서활동, 취업장 참여, 신입자 교육, 외부활동 참여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수용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정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장 참여와 외부활동 참여가 그러한데, 취업장 참여는 참여율에 비해 그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는 취업장 참여가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 외에 별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취사를 위한 참여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하다. 여성 수용자에게 취사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은 출소 후 가정주부로서의 복귀에는 크게 저해요인이 안 되겠지만 사회로의 복귀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프로그램이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취사에

적합하다는 발상은 거꾸로 말하면 남성은 취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며, 이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여성 수형자에게도 다양한 취업장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일을 함에 따른 보람과 만족감을 얻게 하여,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 수형자들이 원하는 직업모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려해 주는 것도 만족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외부 활동에는 외부통근작업, 외부출장 직업훈련, 사회견학 등이 있는데, 여자 수형자를 대상으로는 외부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수형자들이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정도는 44.8% 정도로 그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이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처우받을 권리가 무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남자수형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부 활동 참여를 여성 수형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취업장 참여와 외부활동 참여는 여성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거나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회 재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1) 여성수용자의 인권 및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분석

수용자의 인권의 내용으로 실질적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를 하는 등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또는 잔인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경험하지 않을 자유 등 특정한 조건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이다. 이러한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용자가 처우를 받을 권리와 비자발적인 처우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수형자의 권리와 관련하

여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의 대부분의 처우가 비자발적 강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우가 일종의 보상 또는 특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처우를 받을 권리가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정처우가 수용자를 개선교화하기 보다는 더 오래 구금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실질적 인권의 내용으로 주장되고 있다. 현재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는 수적 열세와 일반 공공의 관심의 열세로 인해 처우의 형태가 여성수용자의 특수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수용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질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다. 예를 들어, 여성수용자의 교정교육의 대부분이 전통적 성역할에 부합되는 내용의 가정생활교육, 가사 등에 치중되어 있고, 교도작업의 분야 역시 취사장이나 의복공장 등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성수용자에 대한 관심의 부재와 정책의 불평등은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를 제도상 체제상 남성수용자의 교정처우에 예속되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전통적 성차별성의 주장이 오히려 여성수용자의 특수한 필요와 다양한 처우에 대한 걸림돌로서 작용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성수용자의 특수성 인정과 독립한 인격체로서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처우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 처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처우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여성수용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외국의 경우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전체 수용인구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여성수용자를 위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은 비용-편익 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정도로 여성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가 일반시민이나 공공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범죄율이 전체범죄율과 비교하여 10%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수용

자의 수와 비교할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여성수용자 자체만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의 접근이 필요하였다. 즉, 여성범죄의 증가와 여성수용자의 양적 변화와 아울러 여성수용자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교정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성에 대한 인지로 인하여 여성범죄 일반은 물론이고 여성범죄자, 여성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보다 앞서 여성수용자의 인권,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 현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수용자의 권리신장을 위해서 여성수용자의 교정처우의 양과 질은 물론 다양성과 가용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외국의 현행 법규정과 교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제안규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여성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보장을 위한 현행법 분석 및 개선방안의 모색

현행 행형법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보면 여성의 두발, 화장품 등의 남성적 측면에서 여성다움을 위한 규정,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해방지에 대한 규정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수용자의 전체 대상자가 너무 적고, 그 결과 여성 교도소가 전국적으로 1개이고, 시설수가 적다는 것은 시설의 다양성이 무시되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법률규정에 노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수용자가 남성수용자에 비해 마약이나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배려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모성보호의 관점에서 여성들만의 건강과 의료문제가 야기되는 데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규정 또는 수용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성수용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 및 처우보장을 위한 향후 입법방향성 즉 현행법의 개정 내지 보완을 위한 정책방향성을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II.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조사

1. 조사 방법

1) 조사 기관 및 조사 일정

(1) 조사 기관 선정 방법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법무연감, 2002)에는 2001년 현재 여성 기결 수형자는 1,359명으로서 전체 수형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미결 수용자는 총 1,751명으로서 전체 미결수형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사기관으로는 여성수용자 전용 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를 우선 포함시키고, 구금시설 중 건립된 지 오래된 곳(1980년대 초반 이전)과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곳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여성수용자 인원이 많은 곳과 적은 곳으로 분류하여 각 구획에 해당하는 기관을 한 곳씩 선정하였다. 그 밖에 구치소 1곳과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0개 기관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영등포구치소를 방문하여 조사도구의 유용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예비조사기관을 제외한 10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만 분석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수용자들의 설문조사, 개별면담, 시설조사, 그리고 여성교도관 설문과 교도관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졌다.

<표 2-1> 여성 수용자 조사대상 시설

여성수용자 수	오래된 시설		최근 시설	
	다수	소수	다수	소수
교도소	광주	춘천	의정부	여주
구치소	서울	-	인천	울산
기타	청주여자교도소	천안구치지소	청송제2감호소	

각 기관별 여성 수용자 조사 인원은 표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총 조사인원은 501명으로서 선정된 조사기관에 수용된 총 인원 1,560명의 32.1%에 해당하였다. 조사 인원 중 기결수는 305명, 미결수는 196명이었다.

<표 2-2> 조사기관별 여성 수용자 수용 현황 대비 조사인원 수

(2003년 7월 현재)

시설명	설립연도	총 여성수용자	기결	미결	조사자 비율(%)
A	1971	28/126	9/28	19/98	5.6
B	1994	27/78	1/17	26/61	5.4
C	1982	37/41	37/41	-	7.4
D	1987	58/368	29/84	29/284	11.6
E	1997	60/205	23/51	37/154	12.0
F	1989	32/27	7/7	25/20	6.4
G	1986	54/116	25/41	29/75	10.8
H	2001	60/89	54/75	6/14	12.0
I	1981	48/51	23/28	25/23	9.6
J	1989	97/459	97/459	-	19.4
계		501/1,560	305	196	100.0

(2) 조사 일정

<표 2-3> 여성 수용자 조사 일정

날짜	기관	수용자		교정 공무원	
		설문	면담	설문	면담
9월 1일	A	28	4	18	3
9월 3일	B	27	4	3	2
9월 4일	C	37	8	25	4
9월 17일	D	58	8	21	4
9월 19일	E	60	8	10	3
9월 24일	F	32	8	14	4
9월 26일	G	54	8	24	3
10월 1일	H	60	8	38	4
10월 2일	I	48	8	18	2
10월 8-9일	J	97	18	50	6
계		501	82	221	35

2) 여성 수용자 조사 방법

(1) 수용자 설문 조사

거실 내 주거생활에 관한 내용, 식사에 관한 문제, TV, 운동, 종교생활 등 여가활동에 관한 문제,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 교도소(구치소)의 의료상황에 대한 질문,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질문, 교육에 관한 질문, 육아·가족 문제, 면회 문제, 교도관·관리 공무원·기관과의 관계, 정신건강상태 등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강당이나 교회당 혹은 직원 식당에 여성 수용자들을 모아 놓고 집단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

였다.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들은 조사원이 옆에서 읽어주거나 보조를 해주었다.

(2) 수용자 심층면담

수용자 심층 면담은 총 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기관에서 4명- 8명씩, 조사원들이 관심을 가진 수용자 유형을 직접 선정하였다. 현재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수용자, 수용소 내 임신·육아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 미성년자인 수용자, 징벌의 경험이 있는 수용자, 작업을 하고 있는 수용자, 외국인 수용자, 그밖에 특히 사항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한 경우 역시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관별 심층 면담자 유형은 <표 2-4>와 같다.

<표 2-4> 기관별 수용자 면담 대상자 특징

기관	면담자 특징
A	징벌, 미성년자, 출역수, 임신부,
B	누범자, 미성년, 환자, 임신부
C	청각장애, 적응장애, 최근입소자(피부병 환자), 출역수 3, 교육이수자, 3범
D	공황장애, 마약 사범, 교육이수자, 국보법 위반, 외국인, 징벌자(마약), 임신부, 무기수
E	우울증, 마약사범, 5범 이상, 미성년, 환자2, 징벌자, 목디스크 환자
F	트랜스젠더, 당뇨병환자, 미성년, 공무집행방해, 작업, 초범, 교육이수자, 면담 요청자
G	간통, 당뇨환자(방장), 미성년, 국보법위반, 환자, 징벌자, 교통특례법, 살인(정신이상)
H	청각장애, 정신장애(당뇨병), 환자, 미성년, 교육이수자(작업), 출역 2, 직원 불만 면담요청자
I	우울증(알콜중독), 마약 사범, 출역수2, 간통, 출소예정자(작업), 징벌, 문제 수용자
J	마약(징벌, 정신이상), 우울증, 시각장애, 출역수3, 학사과정 준비자, 미성년자, 장애인, 외국인3, 징벌, 대동유아수용자, 임신부, 환자, 절도누범

여성 수용자의 면담에서는 가족문제, 외부인과 서신왕래 및 교통시의 어려움, 거실환경 및 개인위생의 문제, 서신과 집필, 의료 및 건강관리, 교육과 작업, 징벌, 권리구제절차, 생리, 육아, 임신 등 여성의 특수성에 관한 내용, 성차별, 성폭력, 분류심사(기결수의 경우에만) 등에 관하여 약 1시간 가량 조사원과 일대일로 면담하였다. 개별 면담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들이 수용자의 불편 사항이나 불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자유로운 면담 분위기가 요구되었다. 자유로운 응답을 위해서 수용자와 조사원이 직원의 입회 없이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것 때문에 조사팀과 교도소/구치소 측간에 약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원만히 해결되어 여성 수용자들과의 면담이 교도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조사

수용자 거실 입실 조사기준은 거실수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수를 입실 조사하였으며, 거실수가 5개 이상 10개 미만일 경우에는 사동 출입구에서 가까운 방부터 무작위로 4개방을 입실 조사했으며 거실수가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수용자 수가 많은 방 3개, 수용자 수가 적은 방 2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입실 조사하였다. 이 때 병방을 포함했다. 시설조사는 조사원이 입실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수용자에게 물어 직접 확인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교도소/구치소를 방문하기 전에 기관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제출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조사 당일엔 교도소/구치소에서 제출한 자료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보고에서는 각 교도소/구치소를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고 A 부터 J까지 기호로 표기할 것이다.

4) 여성 교도관 조사

(1)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당일 근무하고 있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개 구금시설에서 여성 교도관 총 115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남성교도관과의 비교를 위해서 106명의 남성교도관에게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직무탈진감, 직무만족도, 직무특성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2)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심층면담

여성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여성 교도관 35명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였다.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조사 당일 근무자들 중에서 각 직급별로 1명씩 면담하는 것이었으나 시설에 따라서 하위직 여성 교도관을 더 많이 면담을 한 경우도 있었다. 교도관직 선택 동기, 근무 여건과 관련한 애로 사항, 여성 교도관으로서 부적절한 요인들, 직무 특성 관련 질문, 직무교육, 여성 수용자의 관리상 특징, 여성 교도관의 복리 제도 등에 관하여 약 30분-1시간 가량 한 명의 남성 조사원이 일대일로 면담하였다.

2. 여성 수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하였다. 문항별로 무응답자 혹은 오류 반응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조사 결과에서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빈도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1) 응답자의 특징

(1) 나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수용자들의 평균 연령은 39.40세로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은 40.0세, 최빈치는 40세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 수용자들의 연령대는 10대(16세-19세)가 21명으로 11.2%, 20대가 98명으로 19.6%, 30대는 109명 21.8%, 40대는 139명 27.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50대는 68명으로 13.6%, 60대는 27명으로 5.4%, 70대는 4명으로 나타났다.

<표 2-5> 설문 응답 여성 수용자의 나이

나 이	인원수 (%)
16-19	21 (11.2)
20-29	98 (19.6)
30-39	109 (21.8)
40-49	139 (27.8)
50-59	68 (13.6)
60-69	27 (5.4)
70-79	4 (1.0)
계	468 (100.0)

(2) 학력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155명 (32.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91명(19.7%)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수용자는 총 246명(53.4%)에 달했다. 이는 여성 수용자들의 학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6> 설문 응답자의 학력

학 력	인원수 (%)
무학	24 (5.1)
초등학교 중퇴	20 (4.2)
초등학교 졸업	31 (6.5)
중학교 중퇴	42 (8.9)
중학교 졸업	56 (11.8)
고등학교 중퇴	42 (8.9)
고등학교 졸업	155 (32.7)
전문대 중퇴	11 (2.3)
전문대 졸업	17 (3.6)
4년제 대학 중퇴	29 (6.1)
4년제 대학 졸업	28 (5.9)
대학원 이상	6 (1.3)
계	461 (100.0)

(3) 결혼상태

수용자들의 입소 전 결혼 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가 104명으로 22.1%로 나타났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중이 35명으로 7.4%,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응답자가 186명으로 39.6%, 결혼했으나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사람이 37명으로 7.9%, 이혼이 73명 15.5%, 사별이 35명으로 7.4%로 나타났다.

<표 2-7> 설문 응답자의 입소전 결혼 상태

결혼 상태	인원수 (%)
미혼	104 (22.1)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	35 (7.4)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186 (39.6)
결혼했으나 남편과 별거 중	37 (7.9)
이혼	73 (15.5)
사별	35 (7.4)
계	470 (100.0)

(4) 자녀관계

<표 2-8> 설문 응답 여성 수용자의 자녀 관계

문항	보기	인원수 (%)
자녀	있다	133 (29.3)
	없다	321 (70.7)
자녀수	1명	100 (42.7)
	2명	96 (41.0)
	3명	25 (10.7)
	4명	11 (4.7)
	5명	2 (0.9)
입소 후 가족간의 관계 변화	매우 나빠졌다	101 (21.9)
	조금 나빠졌다	92 (19.9)
	변화가 없다	184 (39.8)
	조금 좋아졌다	37 (8.0)
	매우 좋아졌다	48 (10.4)

현재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133명(29.3%)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321명(70.7%)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여성 수용자가 100명(42.7%)와 2명인 경우가 96명(41%)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인 경

우는 25명(10.7%), 4명은 11명(4.7%), 5명은 2명(0.9%)으로 나타났다.

입소 후에 가족 간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184명(39.8%)이었고, 매우 나빠지거나 조금 나빠진 경우가 193명(41.8%), 조금 좋아지거나 매우 좋아졌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85명(18.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수용생활로 인해서 여성 수용자들의 가족 간 관계는 좋아진 경우보다는 나빠진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 직업

여성 수용자들의 입소 전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직으로 38명이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회사를 다녔다고 응답한 수는 35명이며, 상업, 음식점, 유흥업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 학원 강사, 유치원, 유치원장, 보육교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직업으로는 제빵사, 영양사, 연구원, 숙박업, 세무사, 백댄서, 무속인, 목회자, 교수, 간호사, 공무원이 있었다.

<표 2-9> 설문 응답자의 직업

직업	인원수
주부	73
무직	38
회사원	35
상업	31
음식점	27
유흥업	23
의류업	22
자영업	21
판매 종업원	20
학생	20
개인사업	20
교사	14
서비스업	12
파출부 및 청소	8
미싱사	7
보험설계사	6
건설업	3
자원봉사	2
제조업	2
축산업	2
기타	13
무응답	102
계	501

(6) 종교

현재 수용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가 207명으로 4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교(168명, 35.3%), 천주교(65명, 13.7%)의 순서로 나타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35명(7.4%), 기타가 1명이었는데 이 응답자의 종교는 무속신앙과 원불교라고 답했다.

<표 2-10> 여성 수용자들의 종교

종 교	인원수 (%)
종교 없음	35(7.4)
불교	168(35.3)
기독교	207(43.5)
천주교	65(13.7)
기타	1(0.2)

(7) 범죄 관련 사항

여성 수용자들 중 이전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170명(36%)이었고, 전과가 없는 사람은 302명(64%)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여성 수용자 중에는 전과가 1번인 사람이 57명(25.2%)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 수용자들은 초범이 64%에 해당하고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재범이 33.5%를 차지하고 있어서 범죄 성향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 설문응답자의 범죄 전과

문항	보기	인원수 (%)
전과 기록	없다	302 (64.0)
	있다	170 (36.0)
전과 횟수	1번	57 (33.5)
	2번	33 (19.4)
	3번	23 (13.5)
	4번	8 (4.7)
	5번	7 (4.1)
	6번	9 (5.3)
	7번	10 (5.9)
	8번	4 (2.4)
	9번	5 (2.9)
	10번 이상	6 (3.5)
	무응답	8 (4.7)
	계	170 (100.0)

기존에 전과 경력이 있는 경우, 무슨 범죄로 인한 것인지를 적게 하였는데, 절도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는 44명, 마약은 18명, 폭력은 12명, 벌금형은 1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법규 위반, 공문서 위조는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으며, 도박, 약사법, 청소년 보호법, 부정수표 단속법은 각각 3명, 살인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용자들은 이전에 절도나 사기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폭행, 살인, 강도 등의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들의 일반적으로 초범 혹은 재범이 많으며 폭력성 범죄보다는 재산범죄 혹은 기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진다.

<표 2-12> 설문응답자의 전과 경력 (복수 응답)

범죄 명	명 수	범죄 명	명 수
절도	58	살인	2
사기	44	범인 은닉	1
마약	18	윤락법	1
폭력	12	식품위생법	1
벌금형	11	부동산 임대법	1
교통 법규	5	집시법	1
공문서 위조	5	특수 강도	1
도박	3	사문서 위조	1
약사법	3	방화	1
청소년 보호법	3	여권법	1
부정 투표 단속법	3	간통	1

이전에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있는 여성 수용자는 101명(22%)이었고 없는 사람은 358명(78%)으로서 이전에 교도소에 복역한 적이 없는 여성들이 훨씬 많았다. 이전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횟수는 1번이 41명(47.1%)으로 가장 많았고 2번은 14명(16.1%), 3번은 10명(11.5%) 등으로 나타났다. 5번 이상의 경우도 22명(22.9%)으로 나타났으며 10번 이상도 2명(2.3%)이 있었다.

<표 2-13> 설문응답자의 교도소 복역 경험

문항	보기	인원수(%)
교도소에 복역	없다	358(78.0)
	있다	101(22.0)
복역 횟수	1번	41 (40.6)
	2번	14 (13.9)
	3번	10 (9.9)
	4번	2 (2.0)
	5번	2 (2.0)
	6번	7 (6.9)
	7번	3 (3.0)
	8번	4 (4.0)
	9번	2 (2.0)
	10번	2 (2.0)
	무응답	14 (13.9)
	계	101 (100.0)

입소 범죄명을 살펴보면, 사기가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가 70명, 살인이 47명,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이 20명, 공금횡령이 12명으로 나타났다. 살인, 폭행,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로 인해서 구금된 사람은 총 69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13.8%에 불과했다.

<표 2-14> 설문응답자의 입소 범죄명

입소하게 된 범죄 명	인원수	입소하게 된 범죄 명	인원수
사기	196	위증	2
절도	70	무고죄	1
살인	47	국가 보안법	1
항정신성 의약품 위반	20	의료법	1
문서 위조	13	변호사법 위반	1
공금 횡령	12	산림법	1
교통법 위반	10	청소년 성매매	1
폭행, 상해	7	폐기물 위반법	1
간통	6	과실치사	1
강도	5	공무집행 방해	1
폭행, 상해치사	4	상습도박 및 개장	1
방화(방화치사, 방화미수)	3	관세법	1
살인미수	3	위장 결혼	1
유사수신	3	유해화학 관리법	1
부정수표단속법	2	윤락	1
약사법위반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1
		계	422

현재 형기가 결정된 사람은 총 332명으로 이 중 무기징역 이상 형기를 받은 사람은 1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범죄로 인해 받은 형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는 1년에서 2년 사이를 받은 수가 97명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 순서로는 3년 이하가 21명, 4년 이하가 15명, 5개월 이하가 13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형기를 받은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났다. 형이 확정된 여성 수용자 중에서 1년 이하의 단기 형이 138명(41.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고, 5년 이상 - 무기징역의 장기수도 37명(11.1%)이 있었다.

<표 2-15> 설문 응답자의 형기

문항		명 수
이번 범죄로 받은 형의 종류	징역	320(63.9)
	무기징역이상	12(2.4)
	미확정	136(27.1)
형기간	5개월 이하	13
	6개월-1년	125
	2년 이하	97
	3년 이하	21
	4년 이하	15
	5년 이하	7
	6년 이하	4
	7년 이하	11
	8년 이하	3
	9년 이하	-
	10년 미만	1
	10년 이상 12년 이하	25

2) 거실 생활

(1) 가장 불편한 점

여성 수용자들이 거실 생활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를 보기에서 세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여성 수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은 냉난방이 잘 안됨(41.3%)과 거실 공간의 협소함(41.9%)이었고 그 다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33.5%)을 꼽았다.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음(29.1%)과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27.1%), 몸이 아픈 것(23.0%)도 상당히 많은 수용자들이 불편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표 2-16> 거실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

문 항	응답자수 (%)	문 항	응답자수 (%)
거실 공간의 협소함	210 (41.9)	사생활 유지 어려움	91 (18.2)
냉난방이 잘 안됨	207 (41.3)	필요한 생필품을 살수 없음	82 (16.4)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168 (33.5)	교도관의 비인격적인 대우	69 (13.8)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음	146 (29.1)	세탁을 자주할 수 없음	68 (13.6)
다른 수용자들과의 갈등	136 (27.1)	비위생적인 식수	46 (9.2)
몸이 아픈 것	115 (23.0)	수돗물이 부족함	34 (6.8)
화장실 사용	99 (19.8)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하는 것	34 (6.8)
		기타	35 (7.0)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9년 조사에서도 여성 수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은 겨울철의 추위(62.6%)와 여름철의 더위(50.1%) 등 날씨와 관련된 적응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주거 공간의 협소함(50.1%)도 절반의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1999년 조사에서도 약 1/3의 응답자들은 위생문제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와 1999년의 조사결과는 공통적으로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거실 공간의 협소함과 냉난방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는 목욕과 화장실 등 위생적인 문제와 건강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문제나 환경의 문제 외에 특이한 점은 동료 수용자간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심리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구금시설 내에서 동료 수용자나 관리 직원과의 관계 문제는 수용자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1/3 이상의 여성 수용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77명(15.4%)이었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50명(10.0%)이었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 당한 후에 교도관이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30%에 지나지 않았고 '교도관에게 알려도 소용이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가 36%나 되었고 '교도관에게 알렸으나 무시당했다'도 18.0%에 달했다.

개별 면담에서 한 여성 수용자는 “말 많고, 혼자 일 안하고, 돈 없는 사람은 왕따 당하기 쉽다.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체 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수용자는 “입소한 지 오래된 동료 수용자들이 신입자에게 생활 규칙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다른 수용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표 2-17>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거실내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응답자 수 (%)
매우 좋다	106 (21.2)
약간 좋다	96 (19.2)
그저 그렇다	258 (51.5)
별로 안좋다	24 (4.8)
매우 안좋다	9 (1.8)
무응답	8 (1.6)
계	501 (100.0)

<표 2-18>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의 폭행 경험 (단위: 명(%))

다른 수용자들로부터의 폭행 경험	없다	있다	무응답	계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적이 있다	416 (83.0)	77 (15.4)	8 (1.6)	501 (100.0)
거실 내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426 (85.0)	50. (10.0)	25 (5.0)	501 (100.0)

<표 2-19>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의 대응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 당한 후의 대응	응답자수(%)
교도관에게 알려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15 (30.0)
알렸으나 무시당했다	9 (18.0)
보복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다	4 (8.0)
알려도 소용없어서 알리지 않았다	18 (36.0)
무응답	4 (8.0)
계	501 (100.0)

(3) 교도관의 행동에 대한 인식

교도관이 특정 수용자를 특별히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59명(31.7%)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다른 수용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경우가 109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가 48명이었다.

<표 2-20> 교도관의 차별적 대우

문항	내용	응답자수(%)
교도관이 특정 수용자 배려	없다	312 (62.3)
	있다	159 (31.7)
	무응답	30 (6.0)
다른 수용자도 그렇게 느끼는가	그렇다	109 (%)
	아니다	2 (%)
	잘 모르겠다	48 (%)

(4) 심리적인 안녕감

여성 수용자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루 일과 중 특별히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사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특별히 불안한 사건이 일과 중에 있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167명(39.6%)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불편감이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경우는 가족과 관련한 것으로 19명이 지적하였고 동료관계, 교도관과의 관계 등도 19명이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지적하였다. 가족과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11명으로 나타났고, '가족이 면회 오지 않을 때' 라고 응답한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다. 관계와 관련해서는 '동료들의 관계'라고 응답한 경우가 19명, '교도관의 관계'가 19명으로 나타났으며, 아플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명, 전반적인 불안과 관련해서는 아침에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1명, 오후에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5명, 잠들 때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4명으로 나타났으며 19명은 생활 자체가 걱정과 불안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출감 후에 대한 걱정은 1명이 응답하였고, 재판 전 날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0으로 나타났다.

<표 2-21> 마음이 불편한 경우

문항	보기	인원수 (%)
하루 일과 중 특별히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시간	없다	255 (60.4)
	있다	167 (39.6)
언제 (복수 응답)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11 (6.5)
	가족이 면회 오지 않을 때	8 (4.7)
	동료들과의 관계	19 (11.3)
	교도관과의 관계	19 (11.3)
	아플때	9 (5.3)
	아침에	11 (6.5)
	오후에	15 (8.9)
	잠들때	14 (8.3)
	생활 자체가 걱정과 불안이다	19 (11.3)
	출감 후에 대한 걱정	1 (0.6)
	재판 전 날	10 (6.1)
	기타	6 (3.5)

수용생활 중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불안해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수는 37명으로 8.6%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불안해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료들과의 불화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도관과의 관계는 9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무관심으로 버려질까봐 두렵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명,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응답한 수가 1명으로 나타났다.

<표 2-22>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문항	보기	인원수 (%)
신변의 위협	없다	392 (91.4)
	있다	37 (8.6)
어떤 경우	동료들과의 불화	11 (29.7)
	교도관과의 관계	9 (24.4)
	무관심으로 버려질까봐	2 (5.4)
	작업 중 사고	1 (2.7)
	기타	2 (5.4)
	무응답	12 (32.4)
	계	37 (100.0)

(5) 한 달에 사용하는 영치금

조사에 응답한 여성 수용자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평균 영치금은 114,524원 (표준편차 82,173)이었고 중간값은 100,000원이었다. 수용자에 따라서 0원부터 70만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한달에 7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한다고 한 사람의 반응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수용자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대부분이 영치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주로 간식, 부식과 약품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여가 활동

(1) 운동

여성 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은 '한 시간도 하지 않는다'부터 90분까지로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30분(301명, 60.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분(68명,

13.6%)으로 나왔다. 평균시간은 29.5분이었고, 중간값은 30분이었다. 대개의 수용기관은 운동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용자들이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용자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운동 시간 30분 중에서 20분 정도는 운동을 하고 10분은 샤워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운동시간에 땀을 씻는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수용자들도 여러 명 있었다.

<표 2-23> 운동량

운동량	명(%)
매우 부족하다	231(46.1)
조금 부족하다	166(33.1)
적당하다	90(18.0)
다소 많다	3(0.6)
매우 많다	3(0.6)
무응답	8(1.6)
계	501(100)

현재의 운동량에 대해서 여성 수용자의 대다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1명(46.1%)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66명(33.1%)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나타났다. '적당하다'는 90명(18.0%)이었고,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는 각각 3명(0.6%)씩에 불과했다.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들은 구금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변비가 생겨서 변비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표 2-24> 운동공간과 기구

문항내용	보기	응답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1999년)
여성수용자 전용운동공간	없다	183(36.5)	
	있다	306(61.1)	
운동공간 크기	비좁다	284(56.7)	323(46.0)
	적당하다	175(34.9)	225(32.1)
	충분하다	28(5.6)	154(21.9)
운동기구 사용여부	예	249(49.7)	291(42.2)
	아니오	243(48.5)	398(57.8)

여성 수용자 전용 운동 공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06명(61.1%)의 수용자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용시설에 남자 수용자들의 운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수치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운동 공간이 있다고 하여도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공간 크기가 '비좁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284명(56.7%)으로 나타났다. 운동기구 사용 여부에는 '사용할 수 있다'(249명, 49.7%)와 '사용할 수 없다'(243명, 48.5%)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 공간이 충분치 않고, 공간도 비좁으며,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년) 연구에서도, 운동공간 크기가 비좁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6%(323명)으로, 여성 수용자의 운동 공간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동기구 사용여부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가 398명(57.8%)으로 현재 조사결과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운동기구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여성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배드민턴채, 홀라후프 정도였다.

운동공간의 문제는 실내에서만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구금시설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B소와 E소는 고층으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로서 수용자의

운동공간이 실내에 있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땅을 밟고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실내에서만 운동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여성 수용자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2) TV 시청, 라디오 청취

TV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라디오 청취보다는 TV시청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기적으로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시청을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는 436명(87.0%)이었고, 라디오 청취를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고 대답한 수용자는 314명(62.7%)이었다. TV시청의 경우 그 다음이 '매주 일정한 날 정기적으로 한다'(33명, 6.6%)였고, 라디오 청취의 경우엔 '비정기적으로 가끔한다'(58명, 11.6%)로 나타났다. TV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7명(1.4%), 라디오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45명(9.0%)으로 조사되었다. 1999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성수용자들의 TV 시청률을 조사했을 때는 응답자의 27.8%가 TV를 시청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2003년 현재에는 모든 구금시설에서 징벌실을 제외한 수용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0분부터 720분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하지만 TV를 하루에 720분 본다고 한 응답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TV 시청시간의 평균은 216.85분(중간값은 180분), 최빈값은 180분(132명, 26.3%)으로 나타났다. TV채널 수는 1개라는 경우가 390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라디오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3명(92.4%)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TV의 경우에는 대개 녹화된 방송들을 틀어주며, 라디오는 FM 음악 방송이 주로 나온다고 했다.

<표 2-25> TV시청과 라디오 청취

문항내용	보기	응답자 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1999)
TV 시청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	436 (87.0)	367 (51.8)
	매주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한다	33 (6.6)	107 (15.1)
	부정기적으로 자주 한다	9 (1.8)	6 (0.8)
	부정기적으로 가끔 한다	8 (1.6)	32 (4.5)
	TV를 시청한 적이 없다	7 (1.4)	197 (27.8)
라디오 청취	매일 정기적으로 한다	314 (62.7)	
	매주 일정한 날이 정기적으로 한다	29 (5.8)	
	비정기적으로 자주 한다	17 (3.4)	
	비정기적으로 가끔 한다	58 (11.6)	
	라디오를 들은 적이 없다	45 (9.0)	
라디오 채널 선택 가능 여부	예	10 (2.0)	
	아니오	463 (92.4)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466명(93.0%)이 '연속극'이라고 대답하였고, 오락프로가 384명(76.6%), 영화가 376명(75%)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뉴스는 240명(47.9%), 다큐멘터리는 175명(34.9%)으로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타에는 교육방송, 건강프로, 비디오 시청 등이라는 대답이 있었다.

<표 2-26> 볼 수 있는 TV 프로그램(복수응답)

	뉴스	연속극	오락프로	다큐 멘터리	영화	스포츠	기타
명(%)	240 (47.9)	466 (93.0)	384 (76.6)	175 (34.9)	376 (75.0)	275 (54.9)	28 (5.6)

(3) 도서, 신문열람

수용자의 절반 정도인 275명(54.9%)이 자비로 도서를 구입한다고 대답하였다. 각 수용시설에 열람할 수 있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명(79.8%)이 수용시설 내에 열람도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비치도서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한다'가 126명(25.1%), '약간 불만족한다'가 132명(26.3%)으로 '매우 만족한다'(25명, 5.0%), '약간 만족한다'(29명,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있으나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도서의 종류로는 '교양, 소설 같은 문학서적'을 원한다는 수용자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화책, 잡지'등을 보고 싶다는 수용자가 55명,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를 원하는 수용자는 50명이었다. 그밖에 종교서적, 전문서적 등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책을 자주 바꾸어주고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대답도 16명이 나왔다.

한번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권수는 '제한이 없다'가 88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1권부터 무제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1권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76명(15.2%), 3권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60명(12.0%)등으로 나타났다. 대출 기간은 1주일(150명, 29.9%)이 가장 많았고, '제한이 없다'가 63명(1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27> 도서구매와 신문열람

문항	보기	인원수 (%)
도서 구매 신청(자비)	예	275 (54.9)
	아니오	222 (44.3)
열람 도서 비치	예	400 (79.8)
	아니오	91 (18.2)
비치 도서종류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126 (25.1)
	약간 불만족	132 (26.3)
	보통	150 (29.9)
	약간 만족	29 (5.8)
	매우 만족	25 (5.0)
신문 열람 가능여부	가능하다	464 (92.6)
	불가능하다	20 (4.0)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허락해주지 않는다	5 (1.0)
신문 구독 신청(자비)	없다	188 (37.5)
	있다	284 (56.7)

(4) 종교생활

수용시설 내에서 종교집회나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정기적으로 참석한다'라는 수용자가 228명(45.5%)으로 절반 정도의 수용자가 정기적인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는 수용자도 101명(20.2%)나 되었다.

종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경우가 200명(39.9%)으로 나타났고, '매우 불만족'(67명, 13.4%)과 '약간 불만족'(79명, 15.8%)이 '약간 만족'(39명, 7.8%)과 '매우 만족'(72명, 14.4%)보다 조금 더 높아, 전체적인 종교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소의 경우 여성 수용자를 위한

종교시설이나 종교집회가 없었다.

<표 2-28> 종교집회

문항내용	보기	응답자 수(%)
종교집회/예배참석여부	참석하지 않는다	85(17.0)
	가끔씩 참석한다	68(13.6)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228(45.5)
	참석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101(20.2)
종교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67(13.4)
	약간 불만족	79(15.8)
	보통	200(39.9)
	약간 만족	39(7.8)
	매우 만족	72(14.4)

(5) 기타 여가 활동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구금시설 내에서 해봤던 여가 생활에 대해 물어 보았다. 대부분의 여성 수용자들은 특별한 여가 활동이 없었는데, 그래도 영화 관람을 해본 수용자가 106명(21.1%)으로 가장 많았다. 운동회(98명, 19.6%), 합동 생일잔치(68명, 13.6%) 등이 다소 있었고 기타 오락활동에는 공연이나 명절 행사, 비디오 시청 등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 활동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본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 기관들 중 J소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보다 공연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에어로빅이나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을 해보았다는 여성 수용자들도 있었다.

<표 2-29> 구급시설 내에서 해본 여가 생활(복수응답)

	운동회	합동생일잔치	연극	영화관람	장기자랑	기타오락활동
명(%)	98 (19.6)	68 (13.6)	24 (4.8)	106 (21.1)	56 (11.2)	36 (7.2)

4) 의료 실태

(1) 건강진단, 정기검진 여부

입소 후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11명(42.1%)의 수용자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279명(55.7%)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정기검진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있다'(107명, 21.4%)라는 대답이, '없다'(378명, 75.4%)라는 대답보다 많아 수용시설에 들어오고 난 후의 건강진단이나 정기검진을 받은 수용자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강진단을 받기는 했어도 그 후에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는 수용자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한 여성 수용자가 75.4%나 된 것은 1999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수감생활 중에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63%에 해당하며,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7%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정기검진이 뭐냐고 물어본 수용자가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본 조사에서는 정기검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없다'라고 답한 경우도 있을 듯하다. 정기검진이라는 막연한 용어 대신에 x-ray 촬영, 혈압측정, 혈당검사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입소 전과 비교해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약간 나빠졌다'(196명, 39.1%)라는 응답을 한 수용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이 '똑같다'(121명, 24.2%), '매우 나빠졌다'(114명, 22.8%)의 순으로 나타났고, '약간 좋아졌다'(44명, 8.8%)와 '매우 좋아졌다'(21명, 4.2%)는 그 수가 적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건강상태가 나빠진 수용자(61.9%)가 좋아졌다는 수용자(13.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거실 환경과 운동량, 심적인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의무과 진료 편의성

의무과에 대한 항목에서 먼저 '의무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의 수용자들이(256명, 51.1%) '필요한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특별히 아픈 적이 없다'는 수용자들은 163명(32.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파도 눈치가 보여 진료를 못 받았다'(38명, 7.6%)나 '얘기를 했는데도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25명, 5.0%)고 말한 수용자도 있어서 의무과 진료를 신청하고 받는 것이 수용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눈치를 봐야 하는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의무실 이용 편의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진료 신청 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203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용시설에서 정해진 날짜에 진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응답한 수용자도 136명(2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 신청을 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수용자가 58명(11.6%)이었는데, 이것도 진료 날짜가 정해져 있어 자신이 진료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반영한 대답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교도관의 눈치가 보여 진료신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수용자도 33명(6.6%)나 되었다. 한편,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부족하다'(247명, 49.3%)고 말한 사람이 '잘 갖춰져 있다'(184명, 36.7%)라는 사람보다 많아, 각 기관에서 의약품의 종류와 양을 더 적절하게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어떤 여성 수용자의 경우 "약품 종류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여러 병인데도 한 가지 약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여성 수용자도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면 피부병약과 무좀약이 똑같다. 그리고 작은 용기에 넣어준다."며 필요한 약품이 부족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표 2-30> 건강검진 및 정기검진

문항	보기	인원수 (%)
입소 후 건강진단	없다	279(55.7)
	있다	211(42.1)
입소 후 정기검진	없다	378(75.4)
	있다	107(21.4)
입소 전과 비교해 현재 건강상태	매우 좋아졌다	21(4.2)
	약간 좋아졌다	44(8.8)
	똑같다	121(24.2)
	약간 나빠졌다	196(39.1)
	매우 나빠졌다	114(22.8)
의무과 진료 받은 적 있는가	특별히 아픈 적 없었다	163(32.5)
	아파도 눈치가 보여 진료를 못 받았다	38(7.6)
	얘기를 했는데도 진료를 해주지 않았다	25(5.0)
	필요한 진료를 받았다	256(51.1)
의무실 이용 편의성	진료신청 후 즉시 진료 받을 수 있다	203(40.5)
	진료신청해도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58(11.6)
	진료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불편하다	136(27.1)
	교도관의 눈치가 보여 진료신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33(6.6)
필요한 의약품 구비	잘 갖춰져 있다	184(36.7)
	부족하다	247(49.3)

(3) 구금생활 중 겪는 건강 문제

구금시설에 입소한 후 겪은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용자들이 겪

은 증상으로는 두통이었는데, 수용자 3명중 2명은 두통을 겪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불량과 관절염이었는데,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고, 앉아 있는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 싶다. 그 밖에 생리불순(38.7%), 냉대하증(26.1%)을 많은 여성 수용자들이 겪었다고 응답해서 부인과 질환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함을 짐작할 수 있고, 우울증, 불면증, 자살욕구 등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증상들도 상당 수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상에 걸린 적이 있는 수용자도 92명이나 되어 나타나 거실내의 난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에서는 동상에 걸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61.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겨울철에 바닥 난방이 가능한 구급시설이 증가함으로써 겨울철 동상에 걸리는 문제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표 2-31> 구급시설에 입소 후 겪은 증상(복수응답)

문항	응답자 수 (%)	문항	응답자 수 (%)
두통	330(65.9)	신경통	159(31.7)
소화불량	251(50.1)	피부병	152(30.3)
관절염	210(41.9)	냉대하증	131(26.1)
생리불순	194(38.7)	디스크	105(21.0)
우울증	192(38.3)	동상	92(18.4)
불면증	166(33.1)	자살욕구	70(14.0)

(4) 외부 의료기관 진료

입소 후에 외부 의료 기관의 진료를 받아본 여성 수용자는 113명(22.6%)으로 조사되었다. 무응답자 3명을 제외한 110명 중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사람은 90명(81.8%), 관비로 낸 사람은 20명(18.2%)으로 자비로 진료비를 낸 사

람이 네 배 가까이 많았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외부 진료는 자비부담이 원칙처럼 되어 있었고 영치금이 없는 경우에는 관비로 내어준다고 수용자들은 말했다. 본인이 부담한 경우 진료비 총액은 6,000원에서 500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362,861원(중간값은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500만원인 경우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자비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미결수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결수와 동일하게 의료 보험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여성 수용자들 중에서 비싼 진료비를 내고 외부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해도 신청절차가 오래 걸려서 필요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개별 면담시 많이 나왔다.

<표 2-32>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

문항	보기	인원수 (%)
입소 후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	없었다	367 (73.3)
	있었다	113 (22.6)
진료비 부담	본인	90 (81.8)
	관비	20 (18.2)
	계	110 (100.0)

(5) 부인과 진료

여자 수용자의 특성상 부인과 질환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입소 후 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399명(79.6%)의 수용자

들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60명(12.0%)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인과 진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구급시설은 J소 밖에 없었으므로 다른 시설에 수용된 여성들은 외부 의료기관에 가야지만 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성 수용자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생리적 특성상 부인과 검진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적절한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급시설에 있는 여성 수용자들이 건강상 어려움을 상당히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소 후 부인과 질환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없다'가 325명(64.9%), '있다'가 129명(25.7%)으로 수용자 4명 중 1명은 부인과 질환을 앓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기검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질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질문에서는 '의무실에서 약을 타서 먹었다'라는 대답이 51명(43.2%)이었고,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가 17명(14.4), '영치금으로 약을 사먹었다'가 16명(13.6%)이었다. '시설내 간호사의 진료를 받았다'와 '외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라고 대답한 수용자도 각각 5명(4.2%)씩 있었다. 하지만, '그냥 참았다고 대답한 수용자가 24명(20.3%)이나 되어 수용자들이 부인과 질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표 2-33> 부인과 질환

문항	보기	인원수 (%)
입소 후 부인과 정기검진	없다	399(79.6)
	있다	60(12.0)
입소 후 부인과 질환 경험	없다	325(64.9)
	있다	129(25.7)
부인과 질환 발생시 대처	의무실에서 약을 타서 먹었다	51(43.2)
	영치금으로 약을 사먹었다	16(13.6)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17(14.4)
	시설내 간호사의 진료를 받았다	5(4.2)
	외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5(4.2)
	그냥 참았다	24(20.3)
	계	118(100)

(6) 치과 진료

입소 후에 치과 진료를 받아보았다고 한 여성 수용자는 121명이었고 필요했으나 진료를 못 받았다고 응답한 수용자도 93명이나 되었다. 치과 진료 장소로는 '시설에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받았다'가 11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외부치과에 가서 받았다'고 한 수용자가 12명 있었다. 진료비 부담은 대부분(82.9%)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했고, 교도소/구치소에서 지급해주었다고 말한 수용자는 17.1%에 불과하여 외부 의료 기관에서 일반 진료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로 진료비를 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치과 진료비 총액은 1만원부터 160만원까지로 나타났으며, 평균 122,732원(중간값은 3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34> 치과진료

문항내용	보기	응답자 수(%)
입소 후 치과 진료	불필요했다	172(34.3)
	필요했으나 진료를 못 받았다	93(18.6)
	진료를 받았다	121(24.2)
치과진료 장소	외부치과에 가서	12(9.8)
	시설에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111(90.2)
	계	123(100)
치과 진료비 부담	본인	97(82.9)
	교도소/구치소에서 지급	20(17.1)
	계	117(100)

(7) 정신과 진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진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대다수의 수용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신과 의사나 일반의사, 간호사, 카운슬러의 상담을 받아 본 수용자는 총 22명에 불과하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의사의 진료를 못 받았다’라고 응답한 수용자도 46명이나 되었다. ‘고민이나 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교도관이나 의무관, 직원,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수용자는 총 49명에 불과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라고 대답한 수용자가 17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동료 수용자에게 털어놓는다’, ‘일기나 편지를 쓴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종합해 볼 때, 수용자들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 수용자들은 전문적인 상담가나 의사,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동료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나 정신적

문제가 더 심해지는 수용자의 경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2-35> 정신적인 문제

문항내용	보기	응답자 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진료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	341(68.1)
	정신적 문제가 있었지만 의사 진료를 못받았다	46(9.2)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13(2.6)
	일반의사 혹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6(1.2)
	전문 상담자(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았다	3(0.6)
고민이나 심리적 문제의 해결	동료 수용자에게 털어놓는다	135(26.9)
	교도관에게 상담을 받는다	40(8.0)
	의무관을 찾는다	5(1.0)
	교무과 직원에게 상담을 받는다	1(0.2)
	전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다	3(0.6)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참는다	170(33.9)
	일기나 편지를 쓴다	81(16.2)

5)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한 문항

(1) 임신·출산·양육

구금 생활 중 임신을 경험한 적이 있는 수용자는 25명이었고, '구금 생활 중 출산 경험이 있는' 수용자는 16명이었다.

<표 2-36> 임신과 출산 경험 여부

문항	보기	인원수 (%)
구급 생활 중 임신 경험	없다	417(83.2)
	있다	25(5.0)
구급 생활 중 출산 경험	없다	427(85.2)
	있다	16(3.2)

임신 중에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전 검사는 14명이 정기검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10명은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 여성 수용자는 “건강 진단은 2주일에 한번 정도 받는데, 혈압·상당·몸무게 등을 체크한다. 하지만, 외부 병원을 나간 적은 한번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수용시설에 있는 산모의 경우 일반 산모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더 많으므로 정기적인 산전 검사는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산전 검사 비용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위에서 보았던 진료비나 치과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경우가 16명으로, 시설에서 지급해준 경우(3명)보다 많았다. ‘임신 기간 중 병방에 수용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12명은 병방에 수용되었다고 하였고, 11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임신 경험이 있던 여성 수용자의 절반 정도가 일반 거실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한 여성 수용자는 “힘들면 누워도 되는데 방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앉아 있으면 힘들다”라고 대답을 해서 임신부가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임신부뿐만 아니라, 동료 수용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산모나 태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병방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임신 중인 한 여성 수용자는 다른 환자들과 같이 병방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더 스트레스를 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임신부만 따로 거실을 지정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임신 8개월 된 또 다른 여성 수용자는 입소 전 임신 초기에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을 복용한 것 때문에 태아가 걱정되어 외부 병원에 가서 기형아 검사

를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 진료가 너무 많이 밀렸다고 해서 외부 진료를 나가지 못했고 나중에 외부 병원에 가게 되었으나 이미 너무 늦어서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몹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임신 초기에는 한 달에 한번, 임신 후기에는 적어도 2주에 한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외부 진료를 받으러 나가기가 힘든 시설에서는 임신부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표 2-37> 임신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임신 중 정기적인 산전 검사	예	14(58.3)
	아니오	10(41.7)
	계	24(100)
산전 검사 비용 부담	본인이 부담했다	16(84.2)
	시설에서 지급해주었다	3(15.8)
	계	19(100)
임신 기간 중 병방 수용 여부	예	12(52.2)
	아니오	11(47.8)
	계	23(100)

구금생활 중 출산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 중, 외부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한 경우가 11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3명(20.0%)이었다.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에는 출산이 임박한 수용자들에게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귀가하여 출산과 몸조리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교도소/구치소 내 출산 보조 인력은 '없다'는 경우가 12명(85.7%)이었고, '있다'가 2명(14.3%)이었다. 이는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출산 후 산후조리기간을 묻

는 질문에서는 2개월이 8명(47.1%), 1개월 이내가 7명(41.2%)이었고, 3개월 이상이라는 경우도 2명(11.8%)으로 나타났다. '출생 신고서의 아이 출생지는 어디로 기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외부 병원명이 적혀 있다'가 8명(57.1%), '출산한 구급시설이 적혀있었다'가 2명(14.3%)이었다. 기타로는 입양을 보냈거나,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대답이 있었다. 구급시설에서 출산을 한 경우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서에 구급시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소 의아한데 사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38> 출산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출산 장소	교도소/구치소 내	0(0.0)
	외부 산부인과	11(73.3)
	집	3(20.0)
	기타	1(6.7)
교도소/구치소내 출산보조 인력	없다	12(85.7)
	있다	2(14.3)
산후조리 기간	1개월 이내	7(41.2)
	2개월	8(47.1)
	3개월 이상	2(11.8)
출생신고서의 아이 출생지	출산한 구급시설이 적혀있었다	2(14.3)
	외부 병원명이 적혀있다	8(57.1)
	기타	4(28.6)

출산 후 수유에 대한 항목에서는 '모유를 먹였다'는 수용자가 3명, '분유를 먹였다'는 수용자가 11명으로 나타났다.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인 경우, 더 비중이 큰 쪽으로 대답하게 하였다. 모유를 먹였다면 어디서 먹였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거실 내에서'가 5명이었고, '거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와 '거실이

아닌 별도의 수유실에서'가 각각 1명씩이었다. 유아를 대동한 여성 수용자들이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므로 유아도 함께 데리고 있으면서, 거실에서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유를 먹일 경우, 자비로 분유를 구입했다고 한 수용자가 8명이었고,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제공해준다고 한 수용자는 5명으로 나타났다. 분유를 먹일 경우, 젓병을 사용하게 되므로 젓병 소독은 매일 해야 하는데, '분유를 먹인 경우에 젓병 등을 소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끔씩 소독 할 수 있었다'가 6명, '전혀 소독할 수 없었다'는 3명, '자주 소독할 수 있었다'는 3명으로 나타나 유아 용품의 위생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9> 수유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출산 후 모유수유 여부	모유를 먹였다	3(21.4)
	분유를 먹였다	11(78.6)
모유수유 장소	거실 내에서	5(71.4)
	거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	1(14.3)
	거실이 아닌 별도의 수유실에서	1(14.3)
분유 구입	자비로 구입했다	8(61.5)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일부 부담	0(0.0)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제공	5(38.5)
젓병 소독	전혀 소독할 수 없었다	3(25.0)
	가끔씩 소독할 수 있었다	6(50.0)
	자주 소독할 수 있었다	3(25.0)

유아를 데리고 수용 생활을 하는 경우에 따른 어려움을 알기 위한 항목에서

‘유아를 데리고 수용생활을 한 경우에 거실 배정 등에 배려를 받았는가’를 물어보았다. 5명(50.0%)의 수용자가 ‘배려를 해주어 특별 거실에서 생활했다’고 대답했으며, 5명(50.0%)의 수용자는 ‘배려해주지 않아서 일반 거실에서 생활했다’고 대답하였다. 구금 시설 내에서 아기를 키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먹이는 것과 거실 환경 때문에 아이가 자주 아팠다’,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했다’, ‘아이가 커가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는데 비해 거실이 너무 좁다’ 등이 있었다. 즉, 아이를 가진 수용자가 일반 거실에서 생활할 때는 그에 따른 불편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오래된 시설에서는 거실에 개미 등 벌레도 나와서 아이에게 나쁘다고 하였다. 유아 전용 거실이 나 유아 놀이방이 없이 좁은 일반 수용 거실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이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아이에게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를 대동한 수용자를 면담한 결과 직원들에 많이 배려를 해주어서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운동시간도 다른 수용자들보다 좀 더 주었고, 목욕시간도 별도로 배려를 해주었고, 빨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이가 많이 보챌 때는 직원들이 잠깐씩 데리고 놀아주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여성 수용자는 “아이가 거실 바깥을 알기 시작해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거실 밖에 나가는 것이 아이에게겐 오히려 감질나고 아이가 자꾸 나가려고 보채니까 엄마도 힘들다. 차라리 아이가 바깥을 모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가 점점 커가는 것이 두렵다.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유아용 비디오라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틀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낮 시간에라도 유아들이 유아 전용 놀이방에서 놀 수 있는 시설이 하루 빨리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 다.

또 다른 수용자는 대동 유아의 예방접종은 외부 병원에 가서 하는데 아기가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나가는 경우 엄마 때문에 아이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했다.

(2) 성적 수치심

<표 2-40> 성적 수치심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없다	252(56.3)
	있다	196(43.8)
검신할 때	아니오	42(18.9)
	예	153(68.9)
목욕할 때	아니오	145(65.3)
	예	50(22.5)
이송할 때	아니오	153(68.9)
	예	42(18.9)
여자 교도관의 말·태도	아니오	160(72.1)
	예	35(15.8)
남자 교도관의 말·태도	아니오	192(86.5)
	예	3(1.4)
작업장에서	아니오	193(86.9)
	예	2(0.9)
	무응답	27(12.2)

구금생활 중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 여성 수용자들은 196명(43.8%)에 달했다. 성적 수치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검신(신체검사) 할 때라고 응답한 수용자들이 가장 많았다. 목욕할 때와 이송할 때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 수용자들이 약 20% 정도 되었다. 여성 교도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 수용자의 비율(15.8%)이 남성 교도관의 말이나 태도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여성 수용자의 비율(1.4%)보다 더 높았다. 여성 수용자들이 남성 교도관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남성 교도관에 의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듯하다.

입소시에 신체검사는 여자 교도관이나 여자 간호사가 구두로 건강사항을 물어서 문진을 작성하고 키와 몸무게를 재고 옷을 모두 벗어서 신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신체검사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의무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한다. 그러나 조사된 여성수용자들 중 39.3%는 입소시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가에 대해서 응답자 39.7%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입소시에 신체검사를 실시한 사람이 남자교도관(12명)이거나 남자 의무관인 경우(25명)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수용자들의 면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는데, 신체검사 시 생리 중이던 수용자에게 생리대를 떼어 확인하는 등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한 수용자는 신체검사가 수용소에 입소 후 가장 힘든 부분이었으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면담을 한 다른 수용자는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 전에 한 여자다. 아무리 같은 여자 앞이라고는 하지만, 그 앞에서 발가벗고 앉았다 일어섰다가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은 정말 하기 정말 수치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여자 수용자는 자신이 생리중이라서 교도관에게 몇 번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속옷만 입고하면 안되겠냐고 했으나 발가벗고 생리대까지 떼어서 교도관에게 보여줘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2-41> 입소시 신체검사에 관한 문항

문항내용	보기	응답자 수(%)
입소시 건강진단	받았다	293 (58.5)
	안받았다	197 (39.3)
입소시 신체검사는 누가	여자교도관	335 (66.9)
	여자간호사	100 (20.0)
	남자교도관	12 (2.4)
	남자의사	25 (5.0)
입소시 신체검사	혼자 받았다	246 (49.1)
	다른 신입자들과 같이 받았다	227 (45.3)
신체검사 때 성적 수치심	없었다	270 (53.9)
	있었다	199 (39.7)

(3) 성폭행 경험

입소 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문항에서 8명의 여성 수용자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그들 중 1명은 동료 수용자에 의해서, 2명은 남성 교도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수용자의 대처방식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말하지 않았다’가 2명이었고, 나머지는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않거나, 말해도 조사되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이 조사는 익명의 조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본 문항은 막연히 ‘성폭행’이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언어적 혹은 신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 혹은 강간 중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만약 남성 교도관이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것이 조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42> 성폭행 관련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입소 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나	없다	451(90.0)
	있다	8(1.7)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가	동료 수용자	1(25.0)
	남자 교도관	2(50.0)
	여자 교도관	-
	기타	1(25.0)
성폭행 피해 후 교도소/구치소 측에 사실을 알렸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말하지 않았다	2(40.0)
	말해도 수용이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않았다	1(20.0)
	내가 직접 말했으나 조사되지 않았다	1(20.0)
	다른 수용자들이 말했으나 조사되지 않았다	1(20.0)
	말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되었다	-

(4) 남성 직원의 출입여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간이나 야간에 남성 교도관이 여성 교도관을 동반하지 않고 여사동을 순찰하는 일은 없다고 응답했고 면담시에 물어보았을 때도 있을 경우에는 주로 보안과장이 여성 교도관과 함께 매일 혹은 며칠에 한번씩 여사동을 순찰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여자 교도관 없이 남성 교도관이 거실을 순찰한다고 한 응답자가 12명, 야간에 남자 교도관이 거실을 순찰한다는 응답자가 15명 정도 나왔다.

수용자 면담결과 여자 교도관을 동반하지 않은 남자 교도관의 순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자 교도관과 동반할 경우도 미리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남자 교도관의 순찰은 엄격히 통제되는 것으로 보였다.

<표 2-43> 남자 교도관의 순찰에 관한 문항

단위: 명(%)

문항	없다	있다	잘모르겠다	무응답	계
주간에 남자 교도관에 여자 교도관을 동반하지 않고 거실 순찰	423 (84.4)	12 (2.4)	57 (11.4)	9 (1.8)	501 (100.0)
야간에 남자 교도관이 거실 순찰	405 (80.8)	15 (3.0)	74 (14.8)	7 (1.4)	501 (100.0)

(5) 남자 수용자에 비해 차별대우

수용생활에서 남자 수용자에 비해 여자 수용자들이 차별 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88명이었고, '있다'는 99명으로 19.8%, '잘 모르겠다'는 176명으로 나타났다.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여자 수용자들이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생활환경의 문제로 시설, 교육여건, 운동 시간 등의 문제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처우상의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이 19명, 보호감호소의 경우 가출소율에서 남자 수용자와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면담시 어떤 것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영치품목이 남자 수용자 위주로 되어 있어 팬티 시키면 남자 속옷이 들어와서 가족 접견물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다른 수용자는 '남자는 어학반도 있는데 여자는 할 자격이 안 된다. 운동회를 해도 여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 박수만 치다 왔다. 다 남자 위주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밖에 TV 프로그램 선택이나 처우, 작업 등 여러 분야에서 남자수용자는 가능 한 것이 여성수용자에게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용시설은 남성수용자의 수가 여성수용자의 수보다 훨씬 많고, 때문에 여성수용자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J소 같은 경우는 여성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여성수용자들이 수용 시설내에 소수로 남아있는 한 이러한 차별은 계속 되며, 여성 수용자들이 여러 수용소에 흩어져 있는 한 처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성만을 위한 전용 수용시설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4> 차별 대우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남녀 차별	없다	188(40.6)
	있다	99(19.8)
	잘 모르겠다	176(35.1)
차별 이유	생활환경의 문제(시설, 교육여건, 운동 시간 등)	70
	대우, 처우의 문제	19
	감호소 출소율의 차이	4
	모른다	2
	기타	6

6) 교육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곳이었으며,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2곳, 신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5개 시설로 나타났다. 세 가지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J소 한 군데 밖에 없었고, 어떤 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A소, E소, G소, I소 등이었다.

<표 2-45> 기관별 직업교육, 정신교육, 신입자교육 실시 유무 (2003년 현재)

기관명	직업 교육		정신 교육		신입자 교육	
	기관자료	수용자응답	기관자료	수용자응답	기관자료	수용자응답
A	무	2	무	-	무	10
B	무	36	무	-	유	5
C	유	7	유	36	무	13
D	무	1	무	2	유	13
E	무	-	무	1	무	8
F	무	1	무	1	유	14
G	무	-	무	-	무	8
H	유	17	무	5	유	21
I	무	-	무	-	무	13
J	유	36	유	36	유	19

주. 기관자료는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고한 것. 수용자 응답은 설문조사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수를 보고한 것임.

그러나 수용자 설문 결과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들이 설문에 응답할 때 현재 구금된 수용소에서의 교육만을 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용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의 경우 예전에 받았던 교육에 대해서도 응답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1) 신입자 교육

입소할 때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여성 수용자가 68.1%(341명)에 달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한 사람은 26.7%에 불과했다. 하지만 규율 및 구금시설 내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교육은 54.5%의 수용자가 받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입소시에 교도관으로부터 받은 생활규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수용자가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수용자가 있는 것 같다. 입소시 교육을 받은 내용은 생활규칙에 관한 것 외에 접견 및 서신에

관한 내용(19.8%), 징벌에 관한 내용(17.4%), 형기 기산일 및 종료일(15.0%),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12.6%) 등에 관한 것이 많았고, 청원절차에 관한 것을 교육받았다고 한 수용자는 6.4%에 불과했다.

수용자 심층 면담에서 신입자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소 시 계장님이 '생활 잘하라'와 같은 짧은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생활하게 된 수용자에 의해서 시설에서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 듣는 경우가 거의 전부로 체계적인 교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면담에서는 나타났다.

<표 2-46> 입소할 때 받은 교육

단위: 명(%)

교육의 내용	없다	있다	무응답
아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41(68.1)	134(26.7)	26(5.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401(80.0)	75(15.0)	25(5.0)
접견 및 서신에 관한 내용	377(75.2)	99(19.8)	25(5.0)
규율 및 구금시설내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	203(40.5)	273(54.5)	25(5.0)
징벌에 관한 내용	389(77.6)	87(17.4)	25(5.0)
청원 절차에 관한 내용	444(88.6)	32(6.4)	25(5.0)
분류심사 및 누진 처우에 관한 내용	413(82.4)	63(12.6)	25(5.0)
기타	455(90.8)	21(4.2)	25(5.0)

(2) 정신교육

입소 후 정신교육을 받아보았다고 한 여성 수용자는 109명이었다. 정신 교육을 받아본 응답자 중 몇 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1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회, 3회가 각각 24명, 12명으로 나타났다. 정신교육을 받아본 경우 정신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받았다 라고 응답한 수가 54명, 교양교육이 7명, 수용소 내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 시청각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면담 시 정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수용자들은 정신 교육에 대해

모두 긍정적이었고, 또한 정신 교육을 받지 않은 수용자들도 앞으로 정신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초반의 한 여성 수용자는 기초학력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관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만 눈이 아파서 컴퓨터는 못하겠고 여기서 배우는 워드는 나가서 쓸 일도 없다.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수용자에게서라도 공부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용자도 남사동에 중국어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도 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했으나 교도소 측에서는 ‘남자 수용자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며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구치소에서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성 수용자를 여성 교도관이 근무 중 틈틈이 학과공부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성 수용자가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교육을 받을 대상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할 수 없고 따라서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적 열세 논리에 의한 여성 수용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육이 전무한 A소, E소, G소는 여성 수용자의 인원이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는 것을 이유로, 그 중에서도 기결수가 대부분 식당 출역을 나가고 있어서 교육받을 인원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정신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어떤 시설에서는 외부 초청 공연이 있을 때 큰 강당에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를 함께 관람하게 하되 좌석 배치를 고려하여 남녀 수용자가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없도록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만약,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희망하는 남성 수용자의 교육을 운영하는 방식을 좀 달리하거나, 시간을 다소 축소해서 운영하거나, 수용자 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표 2-47> 입소 후 받아 본 정신교육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정신교육 받아본 경험 유무	없다	356 (76.6)
	있다	109 (23.4)
횟수	1회	36 (35.3)
	2회	24 (23.5)
	3회	12 (11.8)
	4회	8 (7.8)
	5회	7 (6.9)
	6회	2 (2.0)
	7회	2 (2.0)
	8회	5 (4.9)
	9회	-
	10회 이상	6 (3.0)
정신교육의 내용	강사초빙교육	54
	교양	7
	규칙	2
	종교	3
	시청각	3
	생각안남	3
	기타	5

(3) 직업교육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 여성 수용자는 15.6%에 불과했다.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들의 현재 받고 있는 직업 교육은 컴퓨터, 미용, 기계 자수, 미싱, 양재,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이 출소 후 사회적응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약간 혹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112명)이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99명)보다 조금 더 많았다.

<표 2-48> 직업교육

문항	보기	인원수 (%)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나	아니다	362 (84.4)
	그렇다	64 (15.6)
귀하가 받고 있거나 받아 본 직업교육이 출소 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전혀 도움이 안될 것 같다	47 (15.7)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	52 (17.3)
	약간 도움이 될 것 같다	71 (23.7)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41 (13.7)
	잘 모르겠다	89 (29.7)

수용자 면담 결과 직업 교육이 사회에 나가서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수용자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수가 비슷하였는데, 면담에 응한 한 수용자는 “수용 생활 1년 2개월 동안 지내고 나갔을 때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영어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컴퓨터 배울 수도 없고... 교도소에서 애들은 또 다른 범죄를 꿈꾼다. 미용기술이라도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범죄 다시 저지르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 쓸데없이 멍하니 앉아 있다.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들 J교도소로 가길 원한다. 거기 가면 일도 할 수 있고.. 미용도 배우고 할 수 있으니까”라며 수용소 내에서 직업 교육이 필요하며, 유용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또 다른 수용자는 “교도소 자격증은 어디까지나 교도소 자격증이다. 나가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다. 자격증 따는 것은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에 가는 길이 빨라지니까.. 그냥 하는 거지 활용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응답해서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수용소 내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은 그 수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미용 교육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 의하면 미용재료가 교육생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된 실습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대개 자격

증을 따기 위한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J교도소에 있는 장기수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여러 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몇 개씩 땀지만 출소 후에 기술을 써먹으려고 해도 이미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로 사회적응에 좀 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사한 여성 수용자들 중 46.7%가 앞으로 직업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고, 32.7%는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직업 교육은 미용(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이 44명으로 가장 많은 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조리 36명, 제빵 21명, 미싱 양재가 1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엇이든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13명, 외국어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수가 11명, 컴퓨터 관련 기술 4명, 간호조무사 4명, 꽃꽂이 3명, 운전 2명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이 적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용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업교육을 희망하지만 받지 못하는 수용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통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여성수용자는 총 8명(1.6%)에 불과했다.

면담을 통해 나타난 수용자들이 원하는 직업 교육은 미용, 조리사, 제빵사, 메이크업 등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직업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에 있어서는 직업교육을 원하지 않았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직업 교육 보다는 실제적인 재판과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2-49> 직업교육에 대한 희망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나	원하지 않는다	164 (32.7)
	원한다	234 (46.7)
원하는 직업 교육 (복수 응답)	미용(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44 (18.8)
	조리	36(15.4)
	제빵 기술	21(8.9)
	미싱, 양재	15(6.4)
	무엇이든 하고 싶다	13(5.6)
	외국어	11(4.7)
	컴퓨터 관련 기술	4(1.7)
	간호조무사	4(1.7)
	꽃꽂이	3(1.2)
	운전	2(0.9)
	기타	15(6.4)
외부 통근교육을 받아본 경험	없다	389 (77.6)
	있다	8 (1.6)
	무응답	104 (20.8)
외부 통근교육 종류	김공장	1 (12.5)
	미용	1(12.5)
	도자기공장	1(12.5)
	무응답	5(62.8)

7) 작업

(1) 작업 내용

조사 대상자들 중 35.1%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5.7%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재하고 있는 작업은 직원 식당일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계자수 및 미싱이 29명, 마대 자루 관련 작업이 22명, 청소가 20명, 봉재 18명, 은박지 돛자리 9명, 컴퓨터 교육이 5명, 미용 3명, 훈련 교육 3명, 공장(마대)이 2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여자 수용자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직원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수인 19명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아직 형기가 결정 안된 미결의 경우 '추가 사건이나 재판 등의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명, 그 외 '건강상의 문제로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1명, '형기가 짧아서 못한다'라고 응답한 수용자는 2명, 그 외 4명이 기타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2-50> 작업유무 및 작업의 종류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현재 작업을 하고 있나	하고 있다	176 (35.1)
	하지 않는다	279 (55.7)
	무응답	46 (9.2)
작업 내용	식당	33(18.75)
	기계자수(미싱)	29(16.5)
	청소(풀뽑기, 잡일 등)	20(11.36)
	마대자루 관련작업	22(12.5)
	봉재	18(10.2)
	은박지 돛자리	9(5.1)
	컴퓨터	5(2.8)
	미용	3(1.7)
	훈련교육	3(1.7)
	기타	2(1.1)
	무응답	32(18.2)
	총계	176(100)

(2) 작업 상여금

작업에 대해서 상여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67.5%,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7.1%이었고, 받고 있지만 얼마인지 모른다가 8.6%로 나타났다. 작업 상여금의 금액은 일당 500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원이상 600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 수용자와의 면담에서 작업 상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작업 상여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문지에 응답한 여성 수용자들이 실제로 작업 상여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에 대한 고지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면담에 응한 한 여성 수용자는 J교도소에 있을 때 매달 상여금과 점수를 알려주었지만 이송되어 온 현재 수용시설에서는 상여금을 알려주지 않고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표 2-51> 작업 상여금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작업 상여금	안받고 있다	12 (7.1)
	받고 있다	114 (67.5)
	받지만 얼마인지 모른다	43 (8.6)
일당 얼마인가	100원미만	3 (2.6)
	200원 이상-300원 미만	6 (5.3)
	300원 이상-400원 미만	13 (11.4)
	400원 이상-500원 미만	19 (16.7)
	500원 이상-600원 미만	45 (39.5)
	600원 이상-700원 미만	3 (2.6)
	700원 이상-800원 미만	4 (3.5)
	800원 이상-900원 미만	3 (2.6)
	900원 이상-1000원 미만	1 (0.8)
	1000원 이상	11 (9.6)
	무응답	6 (5.2)
	계	114 (100)

(3) 작업에 대한 생각

작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응답한 수용자는 65.6%, 힘들지 않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27.9%로 여성 수용자들이 작업에 대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작업이 힘들다고 응답한 경우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작업 환경의 나후'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 자체가 힘들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7명,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응답한 사람이 14명,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수가 5명, 그 외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교도관과의 관계 때문' 등이 각각 2명에 의해 지적되었다. 식당 출역수를 개별 면담했을 때 작업시간이 상당히 길뿐만 아니라 작업의 내용이 중노동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작업이 '재미있다'와 43명으로 40.6%가 응답였고, '유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47명(45.2%), '지루하다'는 38명으로 38.8%이었으며, '내 적성과 흥미에 맞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7.9%로 3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와 관련하여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40명(35.1%)으로 나타났다. '힘들다', '유익하다'에 경우에는 그렇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지루하다', '내 적성과 흥미에 맞다' '출소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에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미있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힘들며, 적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 후 사회 진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 작업에 대한 태도

작업에 대한 생각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
힘들다	80(65.6)	34(27.9)	8(6.6)	122(100)
재미있다	43(40.6)	43(40.6)	20(18.9)	106(100)
유익하다	47(45.2)	40(38.5)	17(16.3)	104(100)
지루하다	38(38.8)	50(51.0)	10(10.2)	98(19.6)
내 적성과 흥미에 맞다	36(37.9)	46(48.4)	13(13.7)	97(19.0)
출소 후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40(35.1)	48(42.1)	26(22.8)	114(100)

현재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작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189명 (62.2%)으로 나타났고,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115명으로 37.8%로 나타났다. 여성 수용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작업은 교도소 내에서 실시되는 작업 즉 공장, 사소, 식당 등과 관련된 작업이 39명이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교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고 응답한 수가 58명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에 나가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수가 3명,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4명, 미용, 뜨개질, 제빵을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 봉사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수가 3명으로 나타났다.

F소는 기결 여성 수용자의 숫자가 너무 적고 불규칙하여 직원 식당을 외부 업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었다. 한 명의 기결 수용자가 하루에 4시간 정도 취사장에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여성 수용자들도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일자리가 없다. 하다 못해 여성수용자들에게 김밥이라도 맡게 해서 소내 수용자들의 간식으로 판매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표 2-53> 작업 희망 여부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앞으로 작업을 희망하나	아니오	115(37.8)
	예	189(62.2)
희망하는 작업	교도소내 일(공장, 사소, 식당 등)	34(18.0)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9(4.8)
	교도소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58(30.6)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3(1.5)
	창의적인 일	4(2.1)
	미용, 뜨개질, 제빵	9(4.8)
	봉사활동	3(1.5)
	기타	5(2.6)
	무응답	64(33.9)
	계	189(100)

J소 외의 다른 구금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 수용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작업은 직원 식당 취사였는데 작업 시간은 대개 새벽 5시부터 오후 폐방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중노동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보통 식당 출역의 경우 2교대로 이루어져 있다. 식당 출역수들에게는 바닥 난방이 되는 거실에 수용해 주고 다른 수용자에 비해 식사의 질도 좋으며 거실에만 갇혀 있기 않기 때문에 다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고, 작업 상여금을 받는 것 외에 책임점수의 소각에도 유리하며 가석방이나 특별절견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은 힘들어도 하고 싶어하는 여성 수용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노동의 양과 질로 미루어볼 때 작업 상여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8) 집필

전체 응답자의 62.7%는 집필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집필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 수용자들 중에서 집필신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

람이 15명이었고 집필한 문서를 압수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29명이었다. 집필허가를 받은 문서에 대해서 압수를 당하거나 수정의 요구를 한 경우도 4명 있었고 허가 받지 않은 집필을 했다는 이유로 정좌 등의 징벌을 받은 사람도 5명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노트에 글을 쓰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지만 구금생활 중 집필한 것은 출소시에 못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노트를 검사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에 대한 내용은 적지 못하고, 직원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내용은 쓰지 않는다고 많은 수용자들이 말했다.

<표 2-54> 집필신청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집필신청	해본 적 없다	314 (62.7)
	집필신청 거부된적 없다	110 (22.0)
	집필신청 거부당한 적 있다	15 (3.0)
집필문서 압수경험	없다	388 (77.4)
	있다	29 (5.8)
허가받은 집필문서 압수 혹은 징벌 경험	없다	412 (82.2)
	있다	4 (0.8)
허가받지 않은 집필에 대한 징벌	없다	404 (80.6)
	있다	5 (1.0)

집필을 할 수 없는 이유로 든 것은 주로 집필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집필을 할 수 없는 경우(예: 소내 생활에 대한 실태나 불만 사항, 출소 축하편지, 공부한 내용 등)와 집필 형식에 문제가 된 경우(예: 편지지나 다른 종이에 안되고 공책에만 글을 쓸 수 있다)로 크게 나뉘어졌다.

9) 접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6년에 실시한 여성수용자들의 수형생활 및 처우 실태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66.7%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교도소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이라고 응답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교도소에서의 일상생활이나 동료 수용자와의 갈등,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보다 더욱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가 가족과의 면회 및 서신 교류를 원만히 하는 것은 구금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표 2-55>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점

가장 견디기 힘든 점	빈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228(66.7)
동료 수형자들과의 관계	41(12.0)
직원들의 비인격적 대우	30(8.8)
교도소에서의 일상생활(목욕, 의료, 물품지급 등)	29(8.5)
자유가 없는 것	10(2.9)
이성에 대한 그리움	3(0.9)
없음	1(0.3)
계	342(100.0)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본 연구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가족과 면회하는 횟수를 물어본 결과, 가족이 매일 면회를 온다고 한 여성 수용자는 41명(8.2%)에 불과했고 주 1회-3회 정도 면회를 오는 사람은 166명(33.2%)이었다. 일년에 한두 번 가족이 면회를 온다는 사람도 59명(11.8%)이나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면회시간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조사되지 않았지만, 과거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면회시간이 많을 때는 12.72분, 보통의 경우엔 9.21분, 적을 때는 7.20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면회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35.2%(179명)를 차지했었다. 이번 연구에서도 면회시간이 짧다는 여성 수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 수용자는 "교도관이 적고 있으니 말을 다 할 수 없다. 시간이 너무 짧으니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고, 또 다른 수용자도 "시간이 너무 짧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성수용자 중에서 수감생활 중에 미성년자 자녀와 면회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14명(22.8%)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면회한 환경은 대부분(72.8%) 칸막이가 있는 일반 접견실이었으나 항상 칸막이가 없이 면회했다고 한 사람도 15명(13.1%)이 있었으며 유아인 경우에는 칸막이 없이 면회했다고 한 사람도 2명 있었다. 미성년 자녀를 면회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죄책감(47.4%), 우울감(35.9%), 창피함(15.8%) 등 부정적인 기분을 긍정적인 기분보다 더 많이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편안함(8.8%), 행복함(7.0%), 즐거움(4.4%) 등의 긍정적 정서도 상당히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의 면회는 죄책감과 창피함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하게 도와주고 면회 후에 편안함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해주어서 수용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환경을 개선하여 칸막이가 없이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표 2-56> 미성년 자녀와의 면회

문항	보기	응답자 수 (%)
미성년 자녀와 면회	없었다	314 (62.7)
	있었다	114 (22.8)
미성년 자녀 면회환경	항상 칸막이 없었다	15 (13.1)
	유아인 경우에 칸막이 없었다	2 (1.8)
	항상 칸막이 있었다	83 (72.8)
	계	114 (100.0)
미성년 자녀 면회 후 기분	즐거웠다	5 (4.4)
	우울했다	41 (35.9)
	불안했다	5 (4.4)
	편안했다	10 (8.8)
	짜증났다	1 (0.9)
	행복했다	8 (7.0)
	창피했다	18 (15.8)
	최책감이 들었다	54 (47.4)
	계	114 (100.0)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에 대한 항목에서는 79명(15.8%)의 수용자가 접견실외의 장소에서 면회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87명(77.2%)의 수용자는 정해진 접견실에서만 면회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를 희망한다는 수용자는 445명(88.8%)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수용자들이 접견실이 아닌 장소에서의 면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견실이 아닌 장소에서 면회를 할 때 접견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녀(206명, 41.7%)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159명, 31.7%)와 배우자/애인(108명,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견실이 아닌 장소에서 면회를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면회 분위기에 관한 과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년) 연구에서는 면회실 면회의 분위기에 대한 항목에서

‘입회 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유로웠다’가 44.8%(299명)이었고, ‘입회 교도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부자유로웠다’가 35.5%(237명)으로 조사되었었다. 그리고 ‘매우 부자유스러웠다’라는 응답자도 10.2%(68명)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면담에서 “교도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불편하다. 교도관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다 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교도관끼리 돌려보는 것 같다. 같은 방 수용자가 말조심하라고 했었다.”라는 응답이 나와, 수용자들이 접견 시 교도관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수용자는 “칸막이 없이 마주보고 면회를 하고, 면회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접견 시 먹을 것이 나와서 같이 먹고 했음 좋겠다.”라고 응답을 해서,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 수용자들이 구금생활 중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견디기 힘든 점임을 감안할 때 가족들을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절실한 욕망일 것이다.

12개월 된 유아를 대동하고 생활하는 어떤 여성 수용자와의 면담에서, 그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밖에 있는 남편과 3살 된 큰 아이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고맙지만 언제 가정이 깨어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큰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올 경우에, 남편은 교도소에 있는 아이를 안아보고 싶어하고 본인은 큰 아이를 안아주고 싶지만 두 아이가 칸막이를 두드리면서 노는 것으로 짧은 면회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고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은 자녀들이 칸막이가 있는 면회실에 오면 엄마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예 자녀들과의 면회를 단절해버렸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6세 된 아들을 둔 한 여성 수용자는 전에는 아이가 친정부모와 매주 토요일마다 면회를 왔으나 2개월 전부터는 면회 온 아이의 태도가 변했음을 감지했다. 면회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자, “엄마 어디로 들어갔어?” “엄마가 병원에 있다면서 침대는 어디

있는데?” 등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아이를 면회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래도 가족 합동접견의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아이를 면회하겠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에게 엄마가 교도소/구치소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기 싫어서 대개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멀리 돈벌러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도소 바깥의 가족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여성 수용자의 경우,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면회 시에 특별 접견을 배려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말 면회에 대한 수용자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년) 연구에서는 주말 면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항목에서 ‘원거리에 해당하므로 면회를 할 수 있다’가 45.7%(310명), ‘원거리가 아니지만 면회를 할 수 있다’가 10.8%(73명)로 전체 응답자의 66.5%가 주말 면회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었다. 그리고 주말 면회를 요구하는 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절실히 원한다’는 여성 수용자가 62.2%(433명)로 많은 여성 수용자들이 주말 면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수용자와의 면담에서 남편도 다른 교도소에서 구금생활을 하고 있어서 서로 면회가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서신왕래까지 할 수 없어서 고통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다.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에 있으면서 같은 구금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서신 왕래가 원칙상 불가능하다면 화상접견이라도 가능하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좋겠다.

J소에 조사를 간 날에는 마침 가족합동접견이 열리고 있었다. 가족들이 음식을 준비해와서 수용자와 함께 교도소 앞마당에 모여서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는 자리였다. 합동가족접견은 수용자들과 가족 모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합동접견은 작업을 하는 여성수용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행형 성적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유아대동 수용자나 환자 등은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합동접견을 좀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은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수용자의 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57> 접견실외에서의 면회

문항	보기	인원수 (%)
접견실외에서 접견 경험	없다	387(77.2)
	있다	79(15.8)
접견실외의 접견 희망 여부	아니다	38(7.6)
	그렇다	445(88.8)
접견실외에서 접견하고 싶은 사람 (복수응답)	부모	159(31.7)
	배우자/애인	108(21.6)
	자녀	206(41.7)
	친척	19(3.8)
	친구	26(5.2)
	변호인	9(1.8)
	기타	22(4.4)

변호사 접견 시, 여성 수용자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용 시설(H소)에서는 변호사 접견실이 여성 수용자 시설에 없어서 항상 여성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남자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밖에서 다 들린다”라며 접견 분위기가 불편하다는 대답도 있었다. 또한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인데 바쁘다고 빨리, 대충하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도 있어, 국선 변호사들의 수용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10) 서신

수용자 본인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편지를 쓰는 빈도는 ‘매일 쓴다’가 66명(13.2%), ‘주1회’가 185명(36.9%)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의 안 쓴다’(42명, 8.4%)와 ‘전혀 안 쓴다’(39명, 7.8%)는 수용자도 상당 수 있었다.

<표 2-58> 가족과의 면회 및 서신

단위: 명(%)

	가족의 면회	가족/친지에 편지 쓰기
매일	41 (8.2)	66 (13.2)
주2-3회	66 (13.2)	-
주1회	100 (20.0)	185 (36.9)
한달에 2-3회	178 (35.5)	95 (19.0)
한달에 1회	24 (4.8)	35 (7.0)
두세달에 1회	20 (4.0)	14 (2.8)
일년에 1-2회	59 (11.8)	-
거의 없다	0	42 (8.4)
전혀 없다	-	39 (7.8)
무응답	13 (2.6)	25 (5.0)
계	501 (100.0)	501 (100.0)

서신을 작성한 후에 폐기된 경우가 있다는 수용자가 43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신이 폐기된 사실과 폐기된 이유를 통고 받은 사람은 33명이었지만 3분의 1은 자신의 서신이 폐기된 사실과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다수의 여성 수용자들은 자신의 편지가 제대로 도착했는지도 알지 못했고, 검열의 걸리는 이유도 잘 알지 못했다. 한 여성 수용자는 “검열에 걸렸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기서의 생활을 얘기하면 검열에 걸린다고 한다”라고 대답하였고, 또 다른 수용자는 “1번 미발송된 적이 있다. TV는 몇 시에 보고, 왕따 당하는 거 같다고 썼었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다시 돌려줬다”고 대답하였다.

<표 2-59> 서신 검열과 폐기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서신이 폐기된 경우	모르겠다	77(15.4)
	없다	337(67.3)
	있다	43(8.6)
폐기사실과 폐기이유 통보 여부	받았다	33(66.0)
	못 받았다	17(34.0)
	계	50(100)

11) 규율과 징벌

행형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의 종류는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이 있다. 그리고 제3항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입소 후 징벌을 받아본 적이 있는 수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4.6%인 21명이었다. 그 중에 징벌은 경고와 금치가 각각 7명이었고 작업정지가 1명이었다. 한 가지 잘못에 대해 두 가지 징벌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응답한 수용자 17명 중 4명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나 이중 처벌된 징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표 2-60> 징벌 경험

명(%)

문항	보기	인원수 (%)
징벌 경험	없다	432(95.4)
	있다	21(4.6)
징벌 사유	폭력, 폭언	8(38.1)
	허가되지 않은 일 함	4(19)
	기타	3(14.3)
	무응답	6(28.6)
징벌의 종류	경고	7(46.7)
	금치	7(46.7)
	작업 정지	1(6.7)

최근 5년간 여성 수용자의 징벌자 현황을 살펴보면 D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J소로 나타났다.

<표 2-61> 최근 5년간 여성 수용자 징벌 현황

기관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총 계
A	-	1	-	-	-	1
B	2	4	2	-	-	8
C	-	-	-	-	-	-
D	9	29	8	4	4	54
E	8	6	4	1	-	19
F	-	4	-	4	-	8
G	3	1	2	-	-	6
H	-	-	-	-	-	-
I	4	10	4	-	-	18
J	3	12	5	6	9	35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에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3항에 '조사업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교도관이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하며 제8조에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징벌협의 내용을 심문하고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징벌 경험자들은 대부분(93.8%) 징벌 혐의에 대해서 교도소/구치소 측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지만, 징벌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약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징벌 경험자를 면담한 바에 의하면 징벌 혐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독거실(대개는 징벌방)에 수감되며 징벌 결정이 징벌위원회의를 거친 결정인지 아닌지는 여성 수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한 여성 수용자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징벌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조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구금시설은 없었으며 대개는 '상담실' 혹은 직원의 집무실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표 2-62> 징벌 경험에 관한 기타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징벌 혐의에 대해 교도소/구치소 측의 조사 여부	그렇다	15(93.8)
	아니다	1(6.3)
징벌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여부	그렇다	5(41.7)
	아니다	7(58.3)
이중 처벌	없다	13(76.5)
	있다	4(23.5)
계구 (수갑, 포승, 사슬, 안면보호구 등)의 사용	없다	14(82.4)
	있다	3(17.6)
징벌의 수준	잘못에 비해 적절했다	7(43.8)
	잘못에 비해 가벼웠다	-
	잘못에 비해 과도했다	9(56.3)

행형법 제46조 제3항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한 가지 잘못에 대해 두 가지 징벌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총 응답자 17명 중 4명이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나 이중 처벌된 징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면담 결과 한 수용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경고를 받았는데 경고 이외에 10일 동안 반성문 쓰기와 자기 전까지 정좌 자세로 있어야 했다고 했다.

행형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46조 1항 '포승과 수갑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2항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3조에도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징벌시 계구가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한 여성 수용자는 3명이었는데 그 중 2명이 '수갑, 포승, 사슬'이 사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G소에서는 수갑에 채워진 여성 수용자가 2명 있었다. 그들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이들은 입소할 때부터 수갑이 채워져 한 사람은 현재 3일간 또 한 사람은 2개월간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한다. 교도소 측에서는 대개 살인 등 중범죄자는 입소 후 1주일간 시갑(수갑을 채움)을 하고 보름 간격으로 수용자를 면담하여 해갑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구치소의 사례를 들어보면 보름 간격으로 면담하여 해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천되는지 의문이다. 면담을 자청한 한 여성 수용자는 살인 범죄로 S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약 100일 동안 계속해서 수갑을 차고 생활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구치소 측에서 별다른 면담이나

평가가 없었고 여성 교도관(계장)과 가끔씩 상담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 수용자는 1심 재판 후 다른 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수갑을 풀어주었다고 하면서 자해 위험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갑을 차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자신이 경험한 징벌의 수준이 잘못에 비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명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9명으로서 조금 더 많았다.

<표 2-63> 체벌경험 및 기타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체벌 경험	아니오	465(92.8)
	예	15(3.0)
암실에 갇혀 있기	아니오	476(99.2)
	예	4(0.8)
교도관의 욕설	아니오	464(92.6)
	예	16(3.2)
교도관의 폭행	아니오	477(99.4)
	예	3(0.6)
교도관의 차별대우	아니오	425(88.5)
	예	55(11.5)
교도관이 수용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	아니오	343(71.5)
	예	137(28.5)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1조는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체벌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여성 수용자는 15명이었으며, 암실에 갇혀 있었다고 한 여성 수용자도 4명 있었다. 구체적인 체벌의 종류는 정좌²⁾, 자술서 쓰기, 오리걸음 걷

2) 양반 다리를 하고 꼳꼳이 앉아있는 것

기, 청소, 볼펜으로 이마를 찍는 것, 방을 옮기는 것, TV시청 금지 등이 있었다. 이 중 TV시청 금지나 방을 옮기는 것은 체벌이라고 보기에 부적절한 것이다. 수용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체벌은 정좌와 자술서 쓰기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도관의 욕설을 경험했다고 한 여성 수용자는 16명(3.2%)이었고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수용자도 3명(0.6%) 있었으나 교도관의 차별대우(55명, 11.5%)와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137명, 28.5%)를 경험한 여성 수용자들은 좀 더 많았다.

<표 2-64> 금치 집행시 의사의 건강진단 여부

문항	보기	인원수(%)
금치 집행 전에 의사나 간호사의 진찰을 받았습니까?	아니오	5(62.5)
	예	3(37.5)
금치의 집행 중에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6(75.0)
	예	2(25.0)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3항에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무관이 그의 건강을 진단한 후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146조에 '금치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그 건강상태를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제148조에 '금치를 받은 자가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무관으로 하여금 그의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금치를 받아본 여성수용자들 중에서 금치 집행 전에 의사나 간호사의 진찰을 받았다는 수용자보다는 받지 않았다고 한 수용자가 더 많았고, 금치 집행 중에도 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수용자가 더 많았다. 금치를 받은 적이 있는 어떤 수용자와 면담을 했을 때, 금치 집행 전에 의무과 직원이 와서 건강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했으나 그것은 건강 진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치를 경험한 다른 수용자의 경우

현재 매우 중한 환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치 집행과 종료 시 어떠한 건강 진단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표 2-65> 징벌에 대한 이의 제기

문항	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징벌의 혐의나 징벌집행 결정에 대해서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168(33.5)	260(51.9)	73(14.6)	501(100)

징벌 혐의나 징벌집행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여성 수용자는 33.5%에 불과했고 51.9%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수용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징벌 혐의나 징벌집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시설에서 받아 드려지지 않는 경우가 면담을 통해 나타났는데, 면담에 응한 어떤 수용자는 자신이 징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기관측에서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독거실에 가서 몇 일 있다 오라'며 이의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하였다.

12) 수용자 권리 구제 수단

행형법 제6조(청원) 제1항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행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청원 절차에 대한 교육

본 조사의 응답자들 중 82.9%에 해당하는 364명은 입소 시에 교도소/구치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처우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권리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면담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수용자가 청원권리 및 청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2-66> 청원절차에 대한 교육

문항	보기	인원수(%)
입소 시 청원권리 및 청원절차에 관한 교육	없다	364(82.9)
	있다	75(17.1)

(2)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권리

구금시설 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가 127명으로 27.6%이었고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33명으로 72.4%로 나타났다. 청원 절차에 관해서 알고 있는 127명의 경우에도 다른 수용자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60명이었고 교도관이나 기관실시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는 52명뿐이었다.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명으로 2%로 나타났다. 또한 청원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청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달 받았나와 관련해서는 ‘받았다’와 ‘받지 못했다’가 각각 4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면담시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해 본 수용자는 만날 수 없었으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할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청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67>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권리

문항	보기	인원수 (%)
구금시설내 처우에 불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나	모른다	333(72.4)
	알고 있다	127(27.6)
누가 알려 줬나	책보고 알았다	32(28.6)
	다른 수용자	28(25.0)
	교도관이 알려 주었다	28(25.0)
	교도소/구치소에서 실시한 교육을 통해	24(24.4)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해 본적 있나	없다	445(98.0)
	있다	9(2.0)
청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달 받았나	받지 못했다	4(50.0)
	받았다	4(50.0)

(3) 고소

구금시설 내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소를 해본 적이 있는냐는 물음에 8명(1.8%)이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432명(98.2%)은 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고소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고소 결과에 대해 '알고 있다'가 6명(85.7%)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고소 결과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1명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2-68> 고소

문항	보기	인원수(%)
구금시설내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고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432 (98.2)
	있다	8 (1.8)
고소 결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6 (85.7)
	아니오	1 (14.3)

(4) 면담 신청

교도소장 혹은 구치소장에게 면담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여성 수용자의 수는 186명(41.2%)이었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266명, 58.8%). 면담 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 수용자는 30명(17.3%)이었고, 면담 신청을 한 경우 면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1명(72.4%),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8명(27.6%)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살펴본 바로는 교도소장 혹은 구치소장에게 면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구제절차 보다 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또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한 수용자는 교도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려고 교도관에게 말하였으나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해 보고 그때 말하라'라고 제지하는 바람에 교도소장 면담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도소/구치소장과의 면담을 하려고 할 때 수용자들은 이미 그 시설을 떠날 각오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특히 교도관의 처우와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이송 갈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면담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표 2-69> 면담 신청

문항	보기	명 (%)
교도소장 혹은 구치소장에게 면담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266 (58.8)
	알고 있다	186 (41.2)
면담신청을 해보았습니까	예	30 (17.3)
	아니오	143 (82.7)
면담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예	21 (72.4)
	아니오	8 (27.6)

(5)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인권위원회 진정할 권리를 알고 있는 여성 수용자는 267명(57.4%)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여성 수용자 198명(42.6%)이었다. 진정할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누가 알려 주었는지에 관련해서는 '책이나 신문 등을 보고 알았다'라고 응답한 수가 97명으로 38.2%, '다른 수용자가 알려주었다'라는 응답이 34명(13.4%), 교도관이 알려준 경우는 82명(32.3%), '교도소/구치소에서 실시된 교육을 통해 알았다'라고 응답한 수는 41명(16.1%)으로 나타났다.

<표 2-70>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

문항	보기	명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한	모른다	198 (42.6)
	알고 있다	267 (57.4)
누가 알려주었나?	책이나 신문 등을 보고	97 (38.2)
	다른 수용자	34 (13.4)
	교도관이 알려줌	82 (32.3)
	교도소/구치소에서 실시된 교육을 통해	41 (16.1)
국가 인권 위원회에 면전 진정 경험	없다	440 (97.8)
	있다	10 (2.2)
면전진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처우에 대한 불만 없음	123 (38.7)
	불만이 있지만 면전 진정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	85 (26.7)
	면전진정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몰랐다	67 (21.1)
	면전 진정을 신청하려 했으나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신청서를 안 주었다.	24 (7.5)
면전진정 신청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원이 방문했다	2 (40.0)
	면전진정서를 작성했으나 구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회신을 못 받았다	1 (20.0)
	기타	2 (40.0)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 진정을 해본 적이 있는 여성 수용자는 10명(2.2%)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여성 수용자는 해본 적이 없었다. 면전진정 신청을 해본 경우 신청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원이 방문했다고 한 응답자가 2명, 면전진정서를 작성했으나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가 1명, 그리고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면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처우에 불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가 38.7%, '불만이 있지만 면전 진정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응답한 수용자가 26.7%, 면전진정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몰랐다는 수용자는 21.1%, '면전 진정을 신청하려 했으나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신청서를 안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지 못했다'(15명), 그냥 '참고 지낼 만하다'(8명),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그만 두었다'와 '신청하면 면담실에 불려가기 때문에'(각각 2명) 등이 나타났다.

면담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한 수용자는 '여기선 그런 거 불가능하다. 여사는 단절되어있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모른다. 입다물면 끝이다. 문닫고 들어가면 외부에 알려줄 수도 없고.. 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있는데 항상 그쪽으로 문이 기대져 있어서 넣지도 못하고.. 쓴다해도 직원들 손에서 다 열려질 것 같아 쓸 생각도 안 한다'라고 호소하였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신이 진정서를 내고 싶어도 교도관 손에서 차단되거나, 혹은 진정서 등을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아무도 면전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6) 진정신청에 따른 부당 대우

<표 2-71> 진정신청에 따른 부당 대우

문항	보기	명(%)
고소, 청원, 인권위원회 진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	없다	363 (96.8)
	있다	12 (3.2)
고소장이나 청원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집필보고전이 제 때 처리되지 않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없다	348 (97.5)
	있다	9 (1.8)
고소장이나 청원서를 작성했는데 검열을 받은 뒤에 발송이 안된 적이 있다	없다	337 (97.4)
	있다	9 (2.6)

고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으로부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는 12명(3.2%)이었다. 그러나 고소(8명), 청원(9명), 인권위원회 진정 신청(10명), 면담신청(30명)을 해 본 수용자의 수가 총 57명으로 볼 때, 그 중 21%인 12명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가시적인 불이익인지 아니면 암묵적인 불편감인지는 알 수가 없다.

고소장이나 청원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집필보고전이 제 때 처리되지 않아 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9명(1.8%)이었다. 또한 고소장이나 청원서를 작성했는데 검열 받은 뒤에 발송이 안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수용자는 9명(2.6%)으로 나타났다.

13) 분류 처우

(1) 분류심사

분류처우는 미결수를 제외한 기결수들만(무응답을 제외한 282명)이 응답하였다. 입소할 때 분류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에서는 기결 응답자의 32.6%가 받

있다고 하였으며, 67.4%이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면담을 했던 여성 수용자 한 명은 “몸이 안 좋으니까 나가라고 하고, 분류 심사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하였다. 어떤 종류의 분류심사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아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92명, 35.2%)가 제일로 많았고, 적성검사(76명, 29.1%), 인성검사(74명, 28.4%)순이었다. ‘받았으나 무슨 검사인지 모름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62명(23.8%)이나 되었으며, 지능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49명(18.8%)이었다. 현행 분류심사 체계는 남성 수용자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절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수형생활의 문제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된 교정심리검사는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검사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즉 표준화 점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남성의 기준으로 여성 수용자를 평가하고 있다. 여성 수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범죄 성향 등이 남성 수용자들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일한 분류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은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과학적인 분류에 근거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72> 분류심사

문항내용	보기	명 (%)
입소 시 분류심사	받았다	92 (32.6)
	안 받았다	190 (67.4)
	계	282 (100)
분류심사 종류 (복수응답)	인성검사	74 (28.4)
	지능검사	49 (18.8)
	적성검사	76 (29.1)
	아무검사도 받지 않음	92 (35.2)
	받았으나 무슨 검사인지 모름	62 (23.8)

(2) 누진 계급

자신의 누진 계급을 묻는 질문에는 총 283명의 기결수가 응답을 하였는데, 3급이 80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4급이 74명(26.1%), 2급이 31명(11.0%), 1급이 19명(6.7%)이었다. 급외라고 대답한 수용자는 8명(2.8%)이었고, 자신의 누진 계급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수용자도 71명(25.1%)이나 되었다.

<표 2-73> 기결 응답자의 누진계급

	1급	2급	3급	4급	급외	모른다	계
명(%)	19 (6.7)	31 (11.0)	80 (28.3)	74 (26.1)	8 (2.8)	71 (25.1)	283 (100)

누진계급 산정결과에 대한 합당성의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6.1%는 합당하다고 대답하였고, 33.9%는 부당하다고 응답하여 수용자 3명중 1명은 누진계급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이유로는 '교도관의 편파적 행위와 차별 때문에'라고 대답한 수용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수용자가 10명이 있었다.

(3) 책임점수

책임점수에 대한 항목에서는 본인의 책임점수를 모르는 수용자(63.8%)가 알고 있는 수용자(36.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모르는 수용자(78.1%)가 알고 있는 수용자보다 3배정도 많았다. 책임점수를 알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분류과 직원이 얘기해줘서 안다는 여성 수용자가 16명으로 그래도 가장 많았고, 교도관이 말해줘서 알고 있다는 수용자는 11명이었다. 하지만, 본인의 책임 점수는 알고 있어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수용자가 많아, 전반적으로 책임점수에 대한 수용자들의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면담에 임한 한 여성 수용자는 “내 책임 점수는 105점인데,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득점수에 대한 고지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 276명중 185명이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한 여성 수용자는 소득 점수를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는 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다. 교도관의 재량인 거 같다”고 대답했고, 다른 수용자는 “생활 잘 하면 따는 거 같다. 교육받거나 들어본 적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수용시설 측에서 수용자들에게 책임점수나 소득점수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분류심사처우규칙’에는 분류심사 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의 분류심사 결과를 모르는 여성 수용자들이 많았다. 이는 교도소 측에서 알려주지도 않고, 여성 수용자들도 자신의 분류심사 결과를 알기 위해 교도소 측에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소득 점수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수용자들이 자신의 소득점수를 모르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기인한 것 같다.

<표 2-74> 분류처우에 관한 문항

문항	보기	인원수 (%)
누진계급 산정결과	합당하다고 생각	146(66.1)
	부당하다고 생각	75(33.9)
본인의 책임점수	모른다	180(63.8)
	알고 있다	102(36.2)
책임점수 계산	모른다	217(78.1)
	알고 있다	61(21.9)
진급정치처분	없다	257(95.9)
	있다	11(4.1)
강급	없다	263(97.4)
	있다	7(2.6)

(4) 진급정지·강급

진급 정지처분이나 강급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있다는 대답이 각각 11명(4.1%), 7명(2.6%)으로 나타났다. 진급 정지처분을 당한 이유로는 부정서신으로 인한 징벌,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등으로 나타났지만, 모른다고 대답한 수용자도 2명이 있었다. 강급을 당한 이유로는 징벌을 받아서 강급을 당했다는 대답이 있었고, 역시 모른다는 수용자도 2명이 있었다. '강급'이란 것이 있다는 말을 이번 설문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수용자도 있었다.

누진계급에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지 모르고 있는 수용자가 59.9%였으며 동료수용자가 알려줘서 알고 있는 수용자가 21.6%, 교도관이 알려주거나(12.2%) 교육을 받은 경우(6.4%)는 많지 않았다.

14)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출소 후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약 절반 정도의 여성 수용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238명, 47.5%). 그 외에 예상되는 어려움은 '가족과의 관계'(18.6%), '사회에 대한 재적응'(16.8%), '주변 사람들의 시선'(26.1%), '직장을 구하는 것'(11.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과의 관계'(3명), '건강'(1명), '모든 것이 힘들다'(1명), '사회에서의 생활을 걱정'(4명), '앞으로의 인생'(2명), '자기 자신에 대해 걱정이 된다'(3명), '학업'(2명) 등이 출소 후 어려운 점으로 예상되었다.

<표 2-75> 출소 후 예상되는 문제

문항	보기	명 (%)
경제적인 문제	아니오	238 (47.5)
	예	238 (47.5)
	무응답	25 (5.0)
가족과의 관계	아니오	384 (76.6)
	예	93 (18.6)
	무응답	24 (4.8)
사회에 대한 재 적응	아니오	393 (78.4)
	예	84 (16.8)
	무응답	24 (4.8)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아니오	346 (69.1)
	예	131 (26.1)
	무응답	24 (4.8)
직장을 구하는 것	아니오	418 (83.4)
	예	59 (11.8)
	무응답	24 (4.8)
기타	아니오	457 (91.2)
	예	20 (4.0)
	무응답	24 (4.8)

출소 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여성 수용자는 71.6%으로서 대부분의 수용자가 출소 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경제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6> 출소 후 재정 문제

문항	보기	명 (%)
출소 후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합니까?	그렇다	338 (71.6)
	아니다	64 (13.6)
	그 때 가봐야 알겠다	70 (14.8)

15) 개선을 바라는 점

설문지의 가장 마지막에 전반적인 수용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자유기술 하게 하였다. 자유응답한 내용들을 일관된 항목별로 묶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가장 높은 빈도의 응답은 수용자의 관계(73명)이었고, 가족에 대한 생각이 64명, 거실의 비좁음이 55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건강문제, 교도관의 비인격적인 태도, 목욕,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 작업이 없음, 운동 공간 및 시간 문제 등이 많은 여성 수용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점들이었다. 불편한 점이 없다고 답한 수용자도 19명 있었지만 이들은 전체 응답자에 비하면 아주 소수(3.8%)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77> 수용생활 중 힘든 점 (자유응답)

힘든 점	명 수	힘든 점	명 수
수용자와의 관계	73	재판과정의 미비함	10
가족 생각	64	세탁 장소 협소	11
거실이 비좁음	55	TV시청	9
건강(몸 불편, 외부 진료)	38	생필품 사용	9
교도관의 비인격적인 태도	36	사회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7
목욕	35	간혀 있는 것 자체	7
하루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	27	사회에 대한 재적응	7
작업 문제(작업 없음 등)	26	의약품 부족	7
운동 공간 및 시간	24	거실, 이불의 위생	7
불편 없다	19	지난 날의 후회	5
식사시 위생, 식수	19	모두 힘들	5
화장실	19	답답한 공간	4
면회 횟수, 시간	17	개인 사물함 없음	3
자유에 대한 그리움	15	일찍 취침해야 하는 것	3
난방시설	15	남녀 차별	2
영치금 없음	13	이송시 타인의 시선	2

구급시설의 시설이나 제도 중에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 응답을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어서 정리해보았다.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은 운동공간과 운동 시간의 부족(60명)이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53명), 난방(42명), 가족 접견시 음식물 등을 가져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33명), 영치 품목 증가(31명), 목욕 횟수 증가(31명), 거실 공간에 대한 개선(29명), TV 시청 등 여가활동에 대한 개선(26명), 교도관의 태도(23명), 음식 개선(19명), 세탁, 건조대 설치(18명) 등이 비교적 많은 여성 수용자들이 개선을 바라는 사항들이었다.

<표 2-78>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자유 응답)

내 용	명 수
운동 공간, 시간 부족	60
화장실	53
난방시설	42
가족 접견 개선	33
영치 품목 증가	31
목욕 횟수	31
거실 공간	29
목욕 시설 개선	25
여가 활동	26
교도관의 태도	23
음식 개선	19
세탁, 건조대 설치	18
급수	14
전화 사용	14
교도소내 자유로운 생활	12
교육 실시	12
제도 개선(감호제도, 가석방 제도)	10
특징별 수용(종교별, 연령 등)	9
수용인원 감소	6
온수 사용	6
환기시설	5
약품 구입	5
진료 시설	5
편지 검열 개선	4
의료보험 적용	4
작업할 수 있도록	3
기상 시간	2
사생활 보호	2
생필품 보관 장소	2
경제적 보조	2
남녀 차별 개선	1

3.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시설 조사 결과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의 시설 조사는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참고로 하고 조사팀이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직접 확인하고 여성 수용자들에게 물어서 작성한 것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1) 거실 내 시설 조사

다음 표 1은 각 수용 기관별, 총 수용인원과 총 거실 수, 총 거실 평수, 1인당 거실 평수이다.

<표 2-79> 수용 기관별 거실 수와 여성 수용자 수

기관	총 수용 인원(명)		총 거실수(개)	총 거실평수(평)	1인당 평수(평)
	기결	미결			
A	31	95	17	45.76	0.36
B	10	73	11	53.63	0.65
C	39	0	35	91.245	2.34
D	93	242	79	182	0.54
E	40	157	24	141.7	0.72
F	7	25	17	36.63	1.11
G	39	62	52	98.47	0.97
H	75	7	24	67.08	0.82
I	37	34	9	26.28	0.37
J	448	0	132	267.168	0.60
합계	819	695	400	1009.963	0.667

총 10개의 수용 기관에서 여성수용자들의 인원을 조사하였다. 가장 인원이 적은 곳이 C소로 총 39명의 여성수용자들이 있었고, 가장 많은 곳은 J소로 총 448명의 여성 수용자들이 지내고 있었다. 10개 구금시설의 기결과 미결수는

기결이 총 819명, 미결이 총 695명으로 조사 기관 10곳의 여성수용자는 모두 1,5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용기관마다 거실 수에서도 차이가 났는데, 9개(I소)부터 132개(J소)까지 다양하였다. 조사 수용기관의 거실 수의 총합은 400개였다.

총 거실 평수를 보면, 가장 작은 곳이 I소로 26.28평이었고, 가장 큰 곳은 J소로 267.168평이었다. 인원수나 총 거실 평수에 있어 J소가 큰 것은 여성 수용자만을 위한 수용 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다. 10개 수용기관의 총 거실 평수의 합은 1,009.963평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1인당 거실 평수를 살펴보면, 0.36평부터 2.34평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1인당 거실 평수가 가장 좁은 곳은 A소로 0.36평이었고, 그 다음이 I소로 0.37평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1인당 거실 평수가 가장 넓은 곳은 C소로 2.34평이었고, 그 다음이 F소로 1.11평이었다. 그 밖의 수용기관들은 1인당 거실 평수가 채 1평도 되지 않았다. 총 거실 평수를 총 수용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수는 0.667평으로 나타났다.

본 거실 조사표는 위의 각 수용기관에서 무작위로 거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A소, B소, D소, F소, H소, I소에서 각각 4개의 거실을 조사하였고, C소, E소, G소, J소에서 각각 5개씩의 거실을 조사하여 총 44개의 거실이 조사되었다.

(1) 거실 당 수용자 수

수용자 수는 0명에서 20명까지로 다양하였다. 0명은 지금 수용자가 살지 않는 방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10개 수용시설에서 44개의 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3명이 쓰는 방이 9개, 4명이 쓰는 방이 8개로 가장 많았다. 20명이 있는 방(E소)은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이 기거하는 방으로 평수는 8.06평이었다. 한 수용시설(G소)에서는 원래는 독거실로 배정된 0.79평의 거실에 2명의 수용자가 지내고 있었다. 이는 여성수용자의 거실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성수용자 수가 늘어나서 생기는 결과라고 교도소 측에서는 말하였다.

<표 2-80> 거실당 수용인원 (2003년 현재)

기관	최소수용인원(명)	최대수용인원(명)
A	4	12
B	1	15
C	1	5
D	1	7
E	5	20
F	1	5
G	1	7
H	1	10
I	1	13
J	1	8

한편, 기관 제출 목록에 따른 각 기관별 거실당 수용인원은 <표 2-80>과 같다. A소와 E소를 제외한 8곳의 구금기관에서 최소 수용인원이 1명으로 나타났으며, 최대는 C소가 5명으로 가장 적고, E소가 20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2) 분리 수용

미결, 기결 분리 수용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현재 시설 내 미결이 없는 2곳(C소, J소)을 제외한 8군데 시설 모두 기결, 미결 분리 수용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미결 수용자가 기결과 동일 사동 내에서 독립거실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4곳, 독립 사동에서 독립 거실이 배정된 곳이 4군데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연령을 고려한 수용하여 수용하는 시설이 5곳이었으며, 연령을 고려하지 않는 곳도 동일하였다. 또한 범죄경력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시설이 4곳 고려하지 않는 시설이 6곳으로 나타났다.

<표 2-81> 분리 수용

문항	내용	시설수 (%)
기결. 미결	그렇다	8 (80)
	아니다	2 (20)
미결수용자	독립거실-동일 사동	4 (50)
	독립거실-독립사동	4 (50)
	기결과 혼합 수용	-
연령	그렇다	5 (50)
	아니다	5 (50)
범죄경력	그렇다	4 (40)
	아니다	6 (60)

(3) 조명

각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에 대한 조사결과, 형광등이 44곳 모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명개수는 1개가 15곳(34.1%), 2개가 25곳(56.8%), 4개가 4곳(9.1%)이었다. 조명등 크기는 '대'가 6곳(13.6%), '중'이 12곳(23.7%), '소'가 26곳(59.1%)로 비교적 조명등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명등의 위치는 '중앙'에 위치한 거실이 16곳(36.4%), '측면'에 위치한 거실이 23곳(52.3%), '코너'에 위치한 거실이 5곳(11.4%)로 나타났다. 모든 거실에서 조명등은 제대로 작동하였다.

취침등은 거의 모든 수용시설에서 조명등을 그대로 켜놓고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용시설 2곳(B소, D소)에서는 형광등을 두 개 중 하나만 켜놓고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H소의 경우는 각 거실마다 취침용 백열등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켜놓고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개 취침용 조명등의 위치나 크기는 낮에 사용하는 일반 조명등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교도관들이 밤에도 조명을 켜놓아야 야간에도 계호가 가능하고 비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달리, 수용자들은 잘 때도 불이 켜져 있어서 눈이 부시고, 피곤하다는 불만들을 많이 호소하였다.

<표 2-82> 조명등

문항	내용	거실수 (%)
조명등 종류	형광등	44 (100)
	백열등	0 (0)
크기	대	6 (13.6)
	중	12 (27.3)
	소	26 (59.1)
위치	중앙	16 (36.4)
	측면	23 (52.3)
	코너	5 (11.4)
작동여부	작동	44 (100)
	미작동	0 (0)
	부분작동	0 (0)

(4) 창문과 환기시설

각 거실에는 복도측과 화장실이 접한 외벽 쪽에 모두 창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징벌방이나 작은 방의 경우 복도를 내다 볼 수 있는 작은 관찰구 창문 외에는 대개 화장실에만 창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창문크기는 각 수용시설마다 다양하였는데, 작은 것은 36×20(가로×세로)부터 170×160정도까지의 크기가 있었다. 대체로 작은 방은 창문이 작았고, 큰방은 창문이 크거나 두 개가 있었다. 창문 재질은 유리(강화유리)로 된 곳이 7곳(15.9%), 비닐이 9곳(20.5%), 아크릴이 22곳(50.0%)이었다. 그밖에 그냥 철창으로 된 곳(1소)이 1곳(2.3%)이었다. 비닐로 된 곳은 거의 알루미늄 창틀로 바꾸는 공사중이었고,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알루미늄 창틀로 바뀌기려는 추세였다. 창문 상태는 양호한 곳이 27곳(61.4%), 깨진 곳이 2곳(4.5%), 틈새 넓은 곳이 5곳(11.4%)으로 조사되었다. 난방이 안될 경우, 창문상태가 좋지 않으면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어, 수용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환기시설의 경우, 있는 곳이 5곳(11.4%), 없는 곳이 39곳(88.6%)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기시설이 있다고 하여도 오래되어 작동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용시설 한 곳(소)만이 환기시설이 작동되었고, 교도관이 복도에서 환기 스위치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 '거실은 환기가 잘되어 실내 공기가 맑은 편이다'라는 항목의 조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가 34.4%(239명)로 나타났었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6.2%(182명)로 나타났었다. 거실의 환기에 대한 구금시설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

<표 2-83> 창문과 환기시설

문항	내용	거실수 (%)
창문 유무	유	44 (100)
	무	0 (0)
재질	유리	7 (15.9)
	비닐	9 (20.5)
	아크릴	22 (50.0)
상태	양호	27 (61.4)
	깨짐	2 (4.5)
	틈새 넓은	5 (11.4)
환기시설 유무	유	5 (11.4)
	무	39 (88.6)

(5) 수도시설과 화장실

수도시설이 있는 곳은 41곳(93.2%)으로 나타났다. 수도시설이 작동하는 거실은 34곳(77.3%)이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대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단수가 된 상태였다. 수도시설의 입구턱 높이(화장실턱 높이)는 0.5cm에서 22cm정도로 다양하였다. 평균 입구턱 높이는 11.4cm(중간값은 13cm)이었다. 온수는 하루에 1-2통씩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넣어준다고 하였다. 병방에 있는 환자나 임산부, 유아대동수용자에게는 별도로 여분의 온수를 더 공급해주었다.

화장실은 모든 거실 내에 있었다. 변기방식은 재래식 좌변기인 곳이 21군데(47.7%), 양변기인 곳이 23곳(52.3%)으로 나타났다. 변기수세시설은 작동되는 곳이 20곳(45.5%)이었고, 작동되지 않는 곳이 24곳(54.5%)이었는데 작동되지 않을 경우 수용자들은 물을 물통에 받아왔다가 용변 후 끼얹어 쓰는 것으로 나타나 불편함이 많고, 악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담을 실시했던 한 여성 수용자는 “거실이 좁고 화장실이 재래식이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응답했으며, 또 다른 수용자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 물이 화장실 바닥에 고여서 다 퍼내고 있는 중이다. 변기도 다 삭아서 물이 고여있지 않고 다 새버린다.”라고 대답하였다. 화장실 문은 있는 거실이 36곳(81.8%), 없는 거실이 8곳(18.2%)으로 나타났다. 없는 경우는 대개 징별방이나 독방이어서 낮은 칸막이 벽으로 문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실에서 화장실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칸막이 높이는 10cm에서 72cm까지로 나타났는데, 평균 39.55cm(중간값 41cm)로 나타났다.

<표 2-84> 수도시설과 화장실

문항	내용	거실수 (%)
수도시설 유무	유	41 (93.2)
	무	1 (2.3)
작동여부	작동	34 (77.3)
	미작동	3 (6.8)
온수사용 유무	유	0 (0)
	무	37 (84.1)
화장실 유무	유	44 (100)
	무	0 (0)
방식	좌변기	21 (47.7)
	양변기	23 (52.3)
수세시설	작동	20 (45.5)
	미작동	24 (54.5)
문	유	36 (81.8)
	무	8 (18.2)

(6) 난방 및 냉방

현재 거실에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시설은 8곳이었다.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은 2개 시설(E소, G소)에서는 중 한 곳은 산모실과 병실에 바닥 난방이 되어 있었으며 다른 한 곳에서도 병실 2개와 출역수 거실 4곳은 바닥 난방이 가능하였다. 여름철 난방은 비오거나 습기 찰 경우 혹은 쌀쌀할 때 난방을 한다고 대답하였고, 겨울철에는 시간을 정해서 난방을 하였다. 그래서 여성 수용자들이 추위를 많이 호소하였는데 한 수용자는 “마루에 스팀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너무 춥다. 수용자들이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양말을 몇 켤레씩 끼어 신는다”라고 대답했다. 국부 난방으로는 물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하거나, 일회용 찜질팩 등을 개인이 사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복도 난방이 가능한 시설은 7곳으로 난방 형태로는 중앙 난방이 5곳, 난로를 놓는 곳

이 2곳으로 나타났다. 복도 난방 시 난로 개수는 1개와 6개가 각각 1곳씩이었고, 2개와 3개가 각각 2곳이었다. 복도 난방 난로의 위치는 복도 끝이 3곳, 복도 중앙이 3곳, 복도 끝과 복도 중앙에 모두 있는 경우가 2곳으로 나타났다.

<표 2-85> 바닥 난방

기관	난방유무	난방시간	
A	유	동절기	24시간
		하절기	-
B	유	동절기	22시-06시
		하절기	-
C	유	동절기	24시간
		하절기	-
D	유	동절기	24시간
		하절기	우천시
E	무	동절기	-
		하절기	-
F	유	동절기	24시간
		하절기	-
G	무	동절기	-
		하절기	-
H	유	동절기	20시-21시 03시-04시
		하절기	-
I	유	동절기	24시간
		하절기	-
J	유	동절기	기온에 따라
		하절기	

거실내 선풍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풍기가 전 거실에 없는 시설이 1곳(E소)이었고 한 시설에서는(G소) 조사된 5개의 거실 중 선풍기가 있는 거실은 2

곳 없는 거실은 3곳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모든 시설에서 각 거실마다 선풍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선풍기가 없었던 거실 8개를 제외한 35개의 거실 중 33개(94.3%)곳에서 작동하였고 2(15.7%)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 스위치가 거실 내에 있는 경우가 20개(57%)이며, 복도에 있는 경우는 15개(43%)이었다. 또한 선풍기를 켜고 끄는 것을 수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실의 수는 22개(63%)이었다. 선풍기는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자유로이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는데, 선풍기 스위치가 복도에 있으나 수용자가 통제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 수용자와 면담을 해 본 결과, 창문을 통해 선풍기 스위치가 손에 닿아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시설을 방문했을 때, 관리자의 말을 인용하면, “선풍기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 독지가의 후원해준 것이다. 예산도 없는데 수용자의 시설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느냐?”라며 선풍기가 수용자 거실에 달려 있는 것이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역설했다.

<표 2-86> 거실 내 선풍기

문항	내용	거실수 (%)
선풍기	있다	35 (81.4)
	없다	8 (18.6)
선풍기 작동 여부	작동	33 (94.3)
	미작동	2 (15.7)
선풍기 스위치	거실내	20 (57)
	복도	15 (43)
선풍기 통제자	수용자	22 (63)
	교도관	13 (37)

(7) 침구 및 내의

조사 대상 거실에 남아있는 수용자들에게 침구와 내의의 지급 상황을 구두로 물어 보았다. 겨울 철 관급으로 지급되는 침구의 수는 0~3장, 여름철 관급으로 지급되는 침구의 수는 0~2장으로 나타났다. 자비로 구입하는 경우, 겨울철이 0~3장, 여름철은 0~2장으로 나타났다.

내의의 경우, 겨울철 관급으로 지급되는 내의의 수는 0~2벌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관급 내의는 0~1벌로 나타났다. 자비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겨울, 여름 내의 모두 0~3벌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침구와 내의의 경우 동일 기관 내에서도 수용자마다 다르게 응답하여, 각 기관별 특징과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구와 내의의 경우 관급품만으로는 수용자들이 겨울을 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문헌을 통한 겨울철 옷과 침구의 방한과 위생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93-94) 겨울철 옷과 침구의 방한 기능이나 침구의 위생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철 옷이 추위를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75.2%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 한 겨울철 침구로 추위를 막을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응답자의 64.7%로 이었으며, 겨울용 침구의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의 면담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침구를 세탁을 할 수 없는데서 오는 비위생적인 상태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침구는 일주일에 한번 밖에서 건조 할 수 있고, 기관마다 다르기는 하나 수용자 자신의 돈(5천원 정도)으로 침구를 외부로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일년에 두 번 정도 침구 세탁시기까지 세탁이 불가능하였다. 면담을 통해 한 수용자는 겨울이면 담요는 한사람 앞에 3장과 매트리스를 주는데 냄새가 심하며, 세탁 없이 1년 간 그대로 쓴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담요는 덮기 전에 수건을 코에 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담요 때문에 생

졌고 다른 많은 수용자들도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른 수용자는 담요는 관급 사용을 하지 않고 자비로 사서 덮는데 더러우면 그냥 버리고 다시 산다고 이야기하였다. 모든 시설에서 침구에 세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침구를 세탁하지 못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F소의 경우에는 여사동에 세탁기를 비치하여 사소가 여성 수용자의 옷과 침구를 필요할 때마다 모아서 빨아주기 때문에 침구상태가 청결했고, 사동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도 적었고, 수용자들의 불만도 거의 없었다. F소의 관리자는, “세탁기 빨래가 반드시 물이 더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수용자마다 방에서 각자 빨래하면서 쓰는 물이 더 많고, 다만 환경오염이 적은 물세탁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탁기가 있어도 쓰지 않고 탈수기의 용도로만 쓰기보다는 수용자들의 위생을 위해서 세탁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세탁 문제는 시설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관급으로 지급되는 내의는 0-3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 대부분 내의에 있어서는 입소 시 면티셔츠, 양말 같은 것은 자비으로 사게 되는데 영치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급의 경우는 그 질에 있어서도 매우 좋지 않다라고 면담을 통해 대부분의 수용자들의 지적하였다.

관급으로 지급되는 내의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에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p. 92-93) 내의의 크기가 잘 맞지 않는다는 수용자는 총 602명 중 278명(46.2%)이었고,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수는 215명(35.7),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는 109명(18.1%)으로 나타났다. 내의의 고무줄이 너무 조인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총 557명 중 127명(22.8%)이었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수용자는 256명(46.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내의를 입고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수용자는 561명중 183명(32.6%), 보통이라고 대답한 수용자는 226명(39.9%)으로 나타났다. 내의의 대한 품질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살펴볼 때 만족하지 않거나 보통으로 생각하는 수용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8) 벽면 상태

거실과 화장실의 벽면상태를 보면 거실의 경우 벽면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32곳(72.7%)이며, 곰팡이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12곳(27.3)으로 나타났으며, 화장실 벽면 상태를 살펴보면 28곳(63.6%)은 양호하였으나 16곳(36.4%)은 곰팡이 등으로 불량한 것으로 보여졌다. 거실 벽면 보다 화장실 벽면의 상태가 조금 더 불량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화장실이 수도시설에 같이 붙어 있어 항상 습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2-87> 거실 벽면 상태 및 TV

문항	내용	거실수 (%)
거실 벽면 상태	양호	32 (72.7)
	곰팡이	12 (27.3)
화장실 벽면 상태	양호	28 (63.6)
	곰팡이	16 (36.4)
벽시계	있다	10 (22.7)
	없다	34 (77.3)
TV	있다	37 (88)
	없다	5 (12)
TV 작동 유무	작동	35 (94.5)
	미작동	2 (5.5)

(9) 벽시계와 TV

벽시계가 있는 거실은 10곳(22.7%)이었으며, 없는 거실은 34곳으로(77.3%)였다. 거실에 벽시계가 있었던 시설은 3곳(A소, H소, F소)이었으며 그 외 시설에서는 자비로 구입한 손목시계를 벽이나 선반에 놓고 벽시계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TV가 있는 거실은 37곳(88%)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의 일반 거실에 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곳(C소, I소)에 독거실 혹은 징별실에는 TV가 설치되지 않았다.

(10) 사물함

모든 수용 시설에 개인 사물함이 있었으며, 거의 모든 시설에서 칸 선반과 주머니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벽면 선반의 크기는 수용소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가로×세로×깊이가 30×17×15에서부터(B소) 148×88×54로(C소)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2-88> 사물함

문항	내용	시설 수(%)
개인 사물함	있다	10(100)
	없다	-
사물함 형태 (복수 응답)	칸 선반	10(100)
	주머니	9(90)

2) 거실 외 시설 조사

(1) 신체 검사실 환경

<표 2-89> 신체 검사실 환경

문 항	내 용	시 설 수 (%)
문	여닫이	7(70)
	미닫이	0(0)
	접이문	0(0)
탈의용 커튼	유	2(20)
	무	5(50)
창문	유	6(60)
	무	1(10)
창문종류	투명	2(20)
	불투명	5(50)
조명	유	7(70)
	무	0(0)
책상	유	7(70)
	무	0(0)
의자	유	7(70)
	무	0(0)

신체 검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곳은 3군데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설들에서는 교무과나 직원 휴게실, 컴퓨터실 등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 중, 한 곳을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7개 기관만 신체검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제외된 곳은 C소, G소, I소). 신체검사실로 들어가는 문의 경우, 조사를 한곳 7군데 모두가 여닫이 문이었다. 문의 재질로는 나무 재질이 1곳, 철재 재질을 쓰는 곳이 6곳이었다. 탈의용 커튼이 있는 곳은 2군데에 불과했고, 5곳에서 탈의용 커튼이 없었다. 창문은 7곳에서 있었는데, 그중 투명 창문이 있는 곳이 2곳, 불투명 창문이 있는 곳이 5곳이었다. 조명은 조사한 곳 모두 있었고, 책상과 의자 역시 모든 곳에서 구비하고 있었다. 의자

개수는 1개에서부터 7개까지 있었는데, 대부분 교도관이 앉을 의자거나, 여러 수용자들이 신체검사를 할 경우에 기다릴 수 있는 의자들이었다.

신체검사 절차는 대개, 옷을 벗거나 들고 교도관이 문신과 흉터 등을 조사한 후에 관복으로 갈아입는 순 이었다. 생리중인 수용자의 신체검사 때 생리대를 떼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수용자는 “생리를 할 때 신체검사를 받았었는데, 옷을 벗게 하고서는 속옷을 내리고 생리대를 떼게 했다. 그리고 다시 불이게 하고는 속옷을 입고 관복으로 갈아입게 했다.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면담시 불만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교도관에게 생리대를 떼고 검신을 하는 것의 이유를 물었더니 “생리대 가운데를 잘라서 약이나 교도소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건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생리대를 떼고 검신하는 것이 수용자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신체검사는 수용자들이 옷을 벗고, 검사를 하고,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의용 커튼이 없거나 창문이 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신체검사로 인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목욕 및 샤워 시설

목욕 시설의 면적을 살펴보면, 목욕 시설의 면적은 가장 작은 곳은 I소로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135×260cm로 나타났고, 목욕 시설이 가장 큰 곳은 J소로 860×715cm이었으며 일반 대중탕 목욕탕처럼 가운데 큰 욕조가 있었다. 기관 중 욕조 시설이 있는 곳도 실제로 탕욕을 허용하지는 않았으며 샤워만이 허용되고 있었다. 한 곳(I소)의 경우 받아 놓은 물이 샤워기를 통해 머리 위에서 바로 물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 놓은 물은 뚜껑조차 닫혀지지 않아서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수용자들은 제대로 씻을 수 없다

고 불만이 많았다.

샤워기가 있어도 개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기관에서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아 놓고 수용자들에게 일정량만을 배급하거나, 또는 퍼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모범적인 샤워 시설을 갖춘 시설은 H소로 5개의 수도꼭지와 샤워기가 일반 가정에서와 같이 되어 있어 둘 다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샤워실 사용하는 수용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어 수용자 한 명 당 한 개의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도 충분하여 수용자들이 샤워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시간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20-30분으로 나타났는데 샤워시간에 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샤워시간에 빨래를 함께 하는 등으로 샤워시간을 활용하고 있어 시간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표 2-90> 목욕탕 시설

항 목	내 용	시설 수 (작동개수)
수도꼭지 수	2개	4(2/2/2/1)
	4개	2(4/4)
	5개	2(2/5)
	10개	1(8)
	20개	1(20)
샤워기 수	0개	3(0/0/0)
	4개	1(0)
	5개	3(5/5/0)
	10개	1(0)
	14개	1(7)
	21개	1(21)
욕실문	여닫이	8
	미닫이	2
	접이문	-

목욕시설 내 수도꼭지는 2개인 경우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2개 인 곳은 현재 수용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고 물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 4개, 5개가 가장 많았고, 그 이외 10개와 20개가 있는 곳이 각각 한 곳씩이었다. 목욕시 수용자 여러 명이 함께 하게 되는데 수용자의 수에 비해 수도꼭지의 수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샤워기의 수도 마찬가지로인데, 한 개도 없는 곳과 5개 있는 곳이 각각 3곳씩으로 가장 많았다. I소는 샤워기의 개수는 21개에 달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샤워기가 머리 위에 있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1> 목욕

문항	내용	시설 수(%)
여름 목욕 허용 횟수	주 7회	10(100)
겨울 목욕 허용 횟수	주 1회	3(30)
	주 2회	7(70)
1인당 목욕시간	20분	2(20)
	30분	7(70)
	무제한	1(10)
급수 통제자	수용자	4(40)
	교도관	6(60)
희망 목욕	그렇다	-
	아니다	10(100)
목욕 용품	관급품	1(10)
	자비 구입	9(90)

여름철 목욕 허용 횟수는 하루에 한번으로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2회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주 1회는 목욕을 하고 1회는 머리 감는 것만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

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샤워 및 목욕일수는 1일에 1회라 응답한 수가 664명 중 631명으로 95.0%이었고, 1-2일에 1회가 20명(3.0), 2일에 1회가 8명(1.2%), 3-6일에 1회가 5명(0.8%)으로 본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겨울철의 경우, 7일 이상에 1회가 449명(72.2%), 4-6일에 1회가 80명(12.9%), 1-2일에 1회가 93(15.0)으로 본 연구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겨울철 목욕 횟수가 늘었을 가능성과 본 연구에서 대부분 일주일에 2회라고 응답한 기관은 2회 중 1회는 머리 감는 것만 허용되었는데, 1999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가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고려도 되어야 할 것이다.

1인당 목욕시간에 대해서는 20분이 2곳, 30분이 7곳이었고 무제한을 가능하더라고 응답한 곳이 1곳이었다. 그러나 목욕시간에 운동시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빨래를 해야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20-30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p. 95-97)에서 목욕시간은 30분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49.8%로 가장 많았고 10-15분이라고 응답한 수는 35%, 5-10분 정도라고 응답한 수는 11%로 이었고, 5분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은 3.5%로 나타났다.

목욕 시 급수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직접 통제하는 곳이 4곳, 교도관이 통제하는 곳이 5곳으로 나타났다. 교도관이 통제하는 경우는 목욕 전 물을 받아 놓았다가 배급하거나 또는 받아 놓은 물을 퍼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관이 급수를 통제하는 경우 수용자들은 목욕 시 물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할 때 목욕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10곳 모두 목욕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신이 원할 때 자유로이 목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역수의 경우 작업이 끝나고 등 편의를 봐주는 경우는 있으나 사실상 원할 때 자유로운 목욕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목욕 용품에 대해서는 9곳에서 자비로 구입하였으며 1곳(C소)에서만 관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용품으로는 비누와 이태리 수건만을 사용하였으며, 자비로 오일은 구입이 가능하였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샴푸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는 여자 수용자들은 가장 불만 것 중 하나로, 샴푸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살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듬치료제나 질세정제로 머리를 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격이 더 비쌀 뿐 아니라 그 성분이 독해서 두피가 벗겨지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나, 샴푸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응답하였다.

(3) 세탁 및 건조실

<표 2-92> 세탁 및 건조실

문항	내용	시설 수(%)
세탁기 수	0대	7(70)
	1대	1(10)
	2대	2(20)
탈수기 수	0대	3(30)
	1대	6(60)
	3대	1(10)
세탁 시간	30분	4(50)
	50분	3(30)
	자유	3(30)
건조실	있다	-
	없다	10(100)
세탁용 세제	관급품	2(20)
	자비 구입	8(80)

세탁기가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하였는데, 세탁기가 설치된 곳에서도 세탁기는 탈수 기능만을 사용하였다. 여자 수용자의 경우 세탁은 손으로 직접하며, 보통 탈수기가 각 사동에 1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날씨가 흐려서 빨래의 건조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중 한 곳(F소)만이 모든 수용자의 빨래를 사소가 세탁기를 돌려 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수용자가 적은 지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인 구치소, 교도소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없었다. 사동에서 세탁기를 사용해 수용자들의 옷과 침구를 빨아 주는 F소 경우에 일단 사동에서 나는 쉼쉼한 냄새가 거의 없고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지소장과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세탁기 사용 후 각자 세탁하는 것에 비해 물의 소비도 더 줄었으며 세탁 시 환경오염이 적은 액체 세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세탁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으로 나타났으며, 세탁 장소는 세탁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샤워장에서 빨래를 하거나 거실에서 빼는 경우가 많았다. 거실에서 세탁을 금지하는 경우, 세탁 빈도가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 번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수용자들과 면담 결과 세탁을 하지 못해 갈아 입을 속옷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급하게 속옷의 세탁이 필요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거실에서 세탁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세 때문에 금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거실 내 세탁을 할 경우 정벌 등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팬티라이너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수용자들은 속옷만이라도 거실에서 빨 수 있도록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 장소가 거실인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겉옷과 같은 큰 빨래를 할 경우 화장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빨래가 변기에 빠지거나 제대로 빨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세탁 시간은 대부분 30분 내지 50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세탁 빈도와 마찬가지로 거실 내에서 세탁하는 경우는 세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자유롭게

세탁할 수 있었다. 건조실이 따로 설치된 곳은 없었으며 건조실이 없는 경우, 야외에 빨래를 널 수 있도록 빨래 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거실 내에 널거나, 시설 내 난간 등의 빨래 줄에 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용 세제의 경우 관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2곳(C소, F소)이었으며, 8곳에서는 자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급식

① 급식의 질

급식에 관한 문항에서 주간 식단표는 10곳 모두 있었고, 식단표가 게시된 곳은 각 거실이나 복도에 있는 게시판이었다. 한 수용 기관(F소)의 경우, 식단표가 있지만, 게시는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각 거실에서 종이에 식단표를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았었다. 영양사가 있는 곳은 6군데였는데, 이들 영양사는 모두 자격증이 있었다. 급식의 양과 질을 물어보는 항목에서, 급식의 양은 적당하다고 한 반면, 급식의 질은 보통이다라고 말한 수용자들이 많았다. 남는 찬을 버릴 수 있고, 모자라면 더 달라할 수 있지만, 가끔 밥이나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맛이 없다는 대답들도 있었다.

<표 2-93> 급식

문항	내 용	시 설 수 (%)
주간식단표	무	0(0)
	유	10(100)
영양사	무	3(30)
	유	6(60)
급식의 양	적당	10(100)
	부족	0(0)
	과다	0(0)
급식의 질	좋음	0(0)
	보통	10(100)
	나쁨	0(0)
환자용 식사	무	0(0)
	유	10(100)
여자 수용자 식당	무	10(100)
	유	0(0)
식사시간 준수여부	예	10(100)
	아니오	0(0)

과거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에서 급식의 질과 양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식사의 양은 충분하다'라는 항목에서 응답자의 43.0%(301명)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매우 그렇다'도 24.4%(171명)를 차지하였다. '맛있게 조리되고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가 44.8%(311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18.0%(125명)로 나타났다. 즉, 과거의 연구와 현 연구 모두 급식의 양적인 면에서는 그런대로 만족하는 반면, 질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찬 가짓수는 국을 포함하여 3가지라는 것이 모든 수용 시설의 공통된 사항이었다. 잡곡 비율은 쌀과 잡곡 비율이 6:4, 7:3, 8:2,

9:1 등이라는 대답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7:3의 비율이 일반적인 것 같았다. 조사 수용 시설 모두에서 환자용 식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죽식이었다. 대개 의사가 처방을 내리거나, 의무과에 신청을 하면 먹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급식은 모두 거실내에서 이루어졌다. 여성수용자 식당이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H소의 경우에 거실 밖의 홀에 여성 수용자 식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일부 작업수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었고, 거실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은 거실내에서 배식을 하고 있었다.

② 식사시간

식사시간의 경우, 아침은 7시에서 7시 40분 사이에 시작하고, 점심은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저녁은 17시 20분에서 18시 사이에 시작하였다.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수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 2-93>에서 보듯이, 식사시간은 10곳 모두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데, '식사시간은 항상 일정하고 규칙적이다'라는 항목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여성 수용자가 45.6%(320명),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수용자가 44.2%(310명)로 조사되었었다.

③ 식수의 양과 위생상태

식수는 모두 끓인 물을 사용하여 마신다고 하였다. 수도물이나 정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군데도 없었다. 식사 전, 하루에 3번 식수통이 방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끓인 물이라서 수용자들은 위생에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년) 연구에서도 식수에 관한 조사가 있었는데, '식수는 깨끗하고 맛있다'라는 항목에 37.6%(259명)의 여성 수용자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고, 19.6%(135명)의 수용자들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해, 현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식수는 거실로 제공되고, 물컵은 모든 수용 시설에 없었는데 그래서 수용자들은 자신이 먹은 그

릇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 의료

① 의약품 비치

의약품 비치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10곳 모두에서 의약품 비치함이 있었으며, 구비된 의약품으로는 각 수용시설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진통제, 소화제, 소독약, 화상연고, 동상연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입한 약품도 보관해 두고 있다.

② 건강진단, 정기검진

시설 조사시 모든 시설에서 건강진단과 정기 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담에서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또한 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도 입소 시 혈압과 몸무게 정도만 측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정기 검진의 경우에도 일년에 2번 교정청에서 실시하는 순회 x-ray 촬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총 659명 중 의사에게서 받은 수용자가 351명(50.6%)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아닌 직원에게서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23명(27.1%), 아무에게도 못 받은 수용자가 1898명(27.1%)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정기검진의 경우 받은 사람은 659명중 417명(6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수용자들의 경우 특히 오랫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겪는 부담감 중 하나가 부인과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이며 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부인과 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한 곳(J소)으로 일년에 두 번 신청자에 한해서 자궁암과 부인과 검사를 실시하고있는데 비용은 수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③ 의료시설

현재 여자 수용자 사동 내에 진료실이 있는 곳이 4곳, 없는 곳이 6곳으로 나타났다. 여사동내 진료실이 없는 경우 일정한 날짜에 진료 예약을 해서 남사동 진료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있으며, 여사동 내에 진료실이 있는 경우, 진료실의 시설로는 컴퓨터, 책상과 같은 일반 사무 용품과, 침대, 산소통, 멸균기, 혈압계 등의 기본적인 시설만이 갖추어져 있었다. 한 곳의 경우(J소)만이 초음파진료 기계가 있어 임신한 수용자들의 부인과 진료가 가능하였다.

치과 진료의 경우 여성수용자 사동 내에 치과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2곳이었고 그 외는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여성수용자 사동 내에서 치과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 치과 의사가 방문했을 때 남사동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외부 병원 이송

외부 병원 이송과 관련해서는 10곳에서 모두 외부 병원 이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외부 병원 이송에 따르는 기간에는 차이가 났는데, 신청하면 바로 가능한 기관이 있는 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기관도 있었다. 이는 교도관의 부족과 지역적인 영향으로 외부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외부 병원에 나가는 수용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외부병원에 갈 때는 종합병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산부인과, 안과, 치과, 피부과 등 다양한 외부 협력 병원을 갖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기관을 방문하는 진료는 10곳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혈액검사 검사의 경우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소로 보내는 등과 같은 진료 협정이 되어 있었다. D소에서는 한 종합 병원과 진료 협정을 맺어 진료비의 20% 절감, 구급차, 진료비 후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외부 진료 시 수용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진료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외부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수용자 자

비로 하고 있어서 의료비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앞에서의 D소와 같이 진료 협정은 수용자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두 번째 수용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외부 병원 진료 시 계구의 사용이다. 면담결과 실제로 외부 병원에 가야 할만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수감과 포승한 채로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서 외부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이 나타났다.

<표 2-94> 의료시설

문항	내용	시설 수(%)
여사 전용 의약품 비치	없다	10(100)
	있다	-
건강 검진	미시행	0
	시행	100(0)
정기 검진	미시행	1(10)
	시행	9(90)
진료실	없다	6(60)
	있다	4(40)
치과진료	불가능	8(80)
	가능	2(20)
일반병원 이송	불가능	-
	가능	10(100)
협력 의료 기관	없다	-
	있다	10(100)
보건소 기관 방문 진료	없다	10(100)
	있다	-
진료 협정	없다	-
	있다	10(100)

⑤ 정신과 진료

정신과 진료의 경우는 내부 진료 가능한 경우가 3곳으로 외부 정신과 의사가 의무과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로 나타났고 그 외 7곳에서는 외부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 장애자를 정신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곳이 2곳, 치료감호소로 이송하는 경우가 4곳,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곳이 3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사동 내에 상담 시설이 있는 곳이 4곳 없는 곳이 6곳으로 나타났는데, 상담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은 소파, 책상, 의자, 등이 있었으나, 실제로 상담실이 상담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컴퓨터실, 직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적인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에 의한 상담은 10곳 모두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수용자 상담은 담당 보안과 직원 내지는 6급 보안과 직원(계장)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기록은 조사한 모든 기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표 2-95> 정신과 진료

문항	내용	시설수(%)
정신과 진료	내부 진료 가능	3 (30)
	외부진료만 가능	7 (70)
	불가능	-
정신 장애자 이송기관	정신과 병원	3 (30)
	치료 감호소	4 (40)
	기타	3 (30)
상담시설	없다	6 (60)
	있다	4 (40)
전문 상담	없다	10 (100)
	있다	0
상담 기록부 관리	미확인	10 (100)
	확인	-

(6)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설치 여부

<표 2-96>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 설치 여부

문항	내용	시설수(%)
없음	없다	6 (60)
	있다	4 (40)
경사로	없다	8 (80)
	있다	2 (20)
점자 블록	없다	10 (100)
	있다	-
욕실손잡이	없다	7 (70)
	있다	3 (30)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에서 교도소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살펴보면 8기관에서 모두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시설내용으로는 휠체어용 경사로, 장애인용 소변기, 수평 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이들 기관에서 제시한 시설은 남성 사동에 있거나 또는 민원실 등의 외부 시설에 있는 것으로 여성 수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여성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이 설치된 곳은 4곳이었다. 이 중 1곳(J소)은 경사로 설치되어있었으며 욕실 손잡이가 있는 곳은 (B소, G소) 2곳이었다. 경사로와 욕실 손잡이 두 개 다 설치된 시설은 1곳(H소)으로 총 4개의 시설에만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장애인 및 노약자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 블록의 경우는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한 시설(I소)에서는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수용자가 있었으나 장애인용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변기 위로 올라가야 했으며 면회 등을 위해 거실을 나와서는 경사로

가 마련되지 않아 다른 두 명의 수용자가 부족하거나 또는 다른 수용지들에 의해서 휠체어 자체가 들어 올려져 층계를 올라가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매우 많다고 했다.

<표 2-97> 장애인 거실

문항	내용	시설 수
병방	없다	1
	있다	9
출입문턱	없다	-
	있다	9
거실 내 손잡이	없다	9
	있다	-
세면장 문턱	없다	2
	있다	6
점자블럭	없다	9
	있다	-
화장실 문턱	없다	2
	있다	6
비상호출 장치	없다	5
	있다	4

병방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1곳(1소)이었다. 병방에도 일반 거실과 마찬가지로 출입문턱이 모두 있었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폭을 가진 병방은 한 곳도 없었다. 반대로 거실내 노약자용 손잡이는 9군데 시설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면장의 문턱의 경우 문턱이 없는 경우가 2곳이었고, 6 곳에서는 세면장의 문턱이 있었으며, 화장실 문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비상호출 장치가 설치된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설에서 병방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거실에 환자들을 모아 병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환

자 혹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병방과 다른 거실의 차이는 환자를 고려하여 온돌을 깔아 난방이 가능하게 하거나 화장실 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는 등의 시설의 차이를 보였다.

(7) 여가 시설

① 운동장 및 운동기구

운동장의 경우는 고층 빌딩식으로 된 수용시설에는 내부에 있었고, 그 밖의 수용시설에서는 건물 옆에 함께 붙어 있었다. 건물 내부에 운동장이 있는 경우, 수용자들의 운동량이 부족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면이 많았고, 햇볕도 쬐지 못할뿐더러, 흙을 밟을 수가 없다고 하여 수용자들과 교도관 모두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운동장의 면적은 10.89평(E소)에서 511평(D소)까지로 다양하였다. 운동가능 시간은 오전 10시경부터 4시까지 사이에 이용을 많이 하였고, 운동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이다. 유아대동 수용자에게는 운동 횟수를 늘려주거나 시간을 더 허용해주는 배려를 해준다고 했으나, 유아에게는 더 많은 운동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의 경우 운동을 할 수 없어, 수용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운동 시설로는 배드민턴과 홀라우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밖에 배구공, 줄넘기 등을 쓰고 있었다.

② TV 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 신문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관련하여, 현재 TV의 위치는 모든 시설에서 거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의 종류는 1개로 수용자가 선택할 수 없었으며, 녹화하여 방영하거나, 실제 상영되는 방송을 방영하는 등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시간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났으나 대부분 하루에 2시간에서 6시간 30분 사이로 나타났다. 이 중 시

청시간이 3시간인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소로 아침 10시에서 11시30분, 1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6시부터 8시까지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총 6시간 30분을 TV 시청 할 수 있다)

라디오와 관련하여 라디오는 각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중앙에서 통제하여 방송하였고, 수용자가 채널을 선택할 수 없었다. 라디오 청취시간은 기관별로 30분에서 2시간 가량 되었다.

<표 2-98> TV 및 라디오에 관한 항목

문 항	내 용	시 설 수(%)
TV시청 위치	거실	10
	다른 곳	-
TV 시청 시간	2시간 10분	1
	3시간	3
	3시간 30분	1
	6시간 30분	1
TV 채널 종류	1개	10
	1개 이상	-
라디오 시간	30분	1
	45분	1
	1시간	2
	2시간	3
라디오 청취 방송	1개	10
	1개 이상	1

(8) 종교 시설

기관 조사결과, 종교시설은 E소와 I소를 제외한 나머지 구금시설에서 갖추고 있었다. 개수는 H소가 4개이고, 나머지 7곳은 1개씩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수는 C소가 8.5평으로 가장 작았고, J소가 43.28평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소가 여성 수용자만을 위한 시설이고, 여성 수용자의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편, 각 구금시설의 종교집회에서, 기독교는 종교시설이 있는 모든 구금시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천주교, 불교 집회를 하는 구금시설들이 많았다. D소의 경우엔 원불교도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소가 종교시설이 없는 대도 집회를 하는 것은, 종교집회를 위한 전용 시설이 아닌 다른 곳(직원식당 등)에서 집회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E소의 경우에는 종교시설도 없고, 집회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99> 조사기관별 종교시설 (2003년 현재)

	종교시설유무	개수	평수	집회 종교 종류
A	유	1	10.4	기독교, 천주교
B	유	1	15	기독교, 천주교, 불교
C	유	1	8.5	기독교, 천주교, 불교
D	유	1	18.15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E	무	-	-	-
F	유	1	9.80	기독교, 불교
G	유	1	17.94	기독교, 천주교, 불교
H	유	4	28.0	기독교, 천주교, 불교
I	무	-	-	기독교, 불교
J	유	1	43.28	기독교, 천주교, 불교

(9) 면회실 및 접견실 시설

총 10곳의 수용 시설 가운데 여성수용자 전용접견실이 없는 곳은 2곳이었다. 이 곳에서는 남성수용자와 함께 접견실을 사용하는데, 여성 수용자 접견이 있

을 때엔 여성수용자들이 사용하고, 없을 때엔 남성수용자들이 사용하는 식이었다. 칸막이가 없는 곳은 1곳(C소)이었고, 칸막이가 있는 곳은 총 9군데였는데, 재료는 대개 크릴이었고, 철창이 있거나, 아니면 아크릴에 철창이 있는 모양이었다. 구조는 거의 비슷했는데, 수용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교도관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교도관 의자와 책상이 구비되어 있었다. 선풍기가 있던 곳도 7곳이었고, 수용자와 접견하는 사람들이 말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한 곳은 5군데였다. 대부분 교도관이 접견 시간이 끝나면 음을 말해주는 데, 1곳(H소)의 경우엔 자동시계가 있어서 접견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는 곳도 있었다. 부부접견실이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고, 가족접견실이 있는 곳은 한군데(F소)로 조사되었다. 원격화상접견실은 7곳에서 있었는데, 대개 남성 수용자들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컴퓨터 한대가 마련된 방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은 따로 없어서 어린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수용자가 번번이 소장의 허가를 요청하여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장소변경 접견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100> 면회실 및 접견실 시설

문항	내 용	시설수 (%)
여성수용자 전용접견실	무	2 (20)
	유	8 (80)
칸막이 여부	무	1 (10)
	유	9 (90)
부부접견실	무	10 (100)
	유	0 (0)
가족접견실	무	9 (90)
	유	1 (10)
원격화상접견실	무	3 (30)
	유	7 (70)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	무	10 (100)
	유	0 (0)
장소변경접견	가능	10 (100)
	불가능	0 (0)

(10) 작업과 교육

2003년 현재, 기관별 자료에 따르면 모든 구금 시설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출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직원 식당과 사동 청소(소지)는 모든 구금 시설의 여성 수용자들이 출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소의 경우에는 미용훈련으로 출역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구금시설 내에서 미용훈련을 받고 난 후에, 다른 여성 수용자들에게 훈련을 가르쳐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H소와 I소에서는 구금시설 내에 위탁작업장으로 출역을 나가는 여성 수용자들이 있었고, J소의 경우 출역을 하는 수용자들이 가장 많

있는데 직업 훈련과 노무(외부통근)로 출역을 하는 여성 수용자들이 있었던 것이 특징적이었다.

<표 2-101> 여성 수용자 출역 현황표 (2003년 현재)

기관	출역(명)	직원식당	사동청소	미용훈련	위탁 작업장	노 무 (외부통근)	직업훈련
A	15	2	-	-	-	통)	-
B	14	2	-	-	-	-	-
C	9	2	6	-	-	-	-
D	34	16	-	-	-	-	-
E	24	7	-	-	-	-	-
F	7	2	-	-	-	-	-
G	16	3	-	-	-	-	-
H	18	4	-	24	-	-	-
I	16	3	-	20	-	-	-
J	62		-	230	22	71	

시설 관찰 결과, 여성수용자들이 작업을 하는 곳은 대개 사동 내에서 청소를 하거나, 직원식당에 출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출역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결 여성수용자도 작업을 할 수 없는 기관도 있었다.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다 하여도 적성이나 특기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시 한 여성수용자는 현재 작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느냐는 질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거기에 맞춘다. 되도록 밝게 살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일부 교도소/구치소 측에서는 여성수용자들이 편안히 거실에서 생활하고 싶어하지 힘든 작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여성수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수용자들 개별면담 결과, 작업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책임점수 소각, 형량 감량, 가석방 유리, 상여금 등)이 있고 거실 생활이 답답

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차라리 작업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다는 수용자가 많았다.

여성수용자가 작업 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춘 시설이 얼마 되지 않았다. 거실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예전에는 거실 안에서 종이를 붙인다거나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실 내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비조사를 실시했던 영등포구치소에서는 거실 내에서 봉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실이 한 곳 있었다.

작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원 식당 출역과 사동 청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로 나타났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다닌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식당 출역자가 관절염을 앓고 있으며, 면담했던 수용자 모두 아침이면 손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상여금이 일반 공장 출역자와 비교하여 같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많았는데 일이 힘든 만큼 작업 상여금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다른 직업 훈련에 나가는 여성수용자들도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는데, 미용 훈련을 하고 있는 한 여성 수용자는 “작업은 적성에 맞는다. 하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재료가 부족하고, 강사진도 열악하고 에어컨이 되지 않아서 너무 덥다. 훈련생이 많아(20명 정도) 힘들다”고 말했다.

(11) 여성의 특수성과 관련된 항목

①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시설

산전 산후 간호 설비와 관련해서는 한 곳(소)을 제외하고는 전혀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 곳에서만(소) 초음파 기기가 있어 산전에 태아에 대해 체크가 가능하였다. 모든 기관에서 산모는 출산 예정 약 1달 전에 형 집행 정지로 귀가 조치 취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용 시설 내 출산 및 병원 이송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2> 임신, 출산, 양육

문항	내용	시설 수(%)
산전 산후 간호 설비	없다	9(90)
	있다	1(10)
출산 사례	없다	10(100)
	있다	-
출산 장소	시설내	-
	병원	-
	귀가	10(100)
	기타	-
병원 이송 출산 사례	없다	10(100)
	있다	-
병원 이송 출산 시 입원비	관급	-
	자비 부담	-
유아보호 시설	없다	10(100)
	있다	-

② 생리대

생리대의 경우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시설이 3곳으로 나타났고, 관급으로 지급된다는 시설이 1곳(C소)밖에 없었고, 자비가 기본이나 필요시에 관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시설이 5곳, 관급이 기본이나 필요에 따라 자비로 구입한다는 경우가 1곳으로 나타났다. 199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관에서 지급하는 것만 사용한다는 수용자의 수는 총 651명 중 90명으로 13.8%이었고, 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사용하고, 일부 부족한 것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용자는 260명 (39.9%)이었으며, 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매한 것만을 사용하는 수용자는 252명(38.7%)으로 자신의 구입한 것만을 사용하거나, 관에서 지급한 것을 사용하기는 하나 자신이 구매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용자들은 대부분 자비로 구입하고 있으며, 자비로 구입하는 것이 기본이나 필요할 때 관급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생리대가 준비되지 않아 급하게 필요할 시에 관급 생리대를 받을 수 있거나, 입소 시 한 통 혹은 두 통 정도 지급 받는 경우,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일년에 몇 번 관급품으로 생리대가 들어올 때 한 통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기관마다 생리대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p.122-125) 여성수용자가 구입할 수 있는 생리대의 '종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용자는 총 622명 중 163명(26.2%)이었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19명(19.1%)이었으며, '종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340명(54.7%)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생리대의 종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관급품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관급품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없고 그 갯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휴지 등과 같은 용품은 필수품으로 관에서 주고 있지만 생리대의 경우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수용자의 숫자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교도소/구치소에서는 이를 필수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들의 경우 생리대를 못 사서 휴지를 생리대 대신 사용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이 돌아가며 생리대를 사주는 것으로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형법시행령 제74조 3항에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치솔·치약·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생리대는 여성수용자의 생활필수품으로 지정하여 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생리대의 질에서도 많은 수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수용자와 면담 결과 "질이 나쁜 생리대가 들어와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데 현재 당뇨 때문에 조금만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가렵고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난다. 현재 동생이 소독한 거즈를 넣어 주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생리대 깨끗

한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경우는 조금은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다른 많은 수용자들이 제품명은 같지만 질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나, 창고 같은 곳에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난다 등의 이유로 지급되는 관급 생리대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자변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하고 품질에 있어서도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생리대의 가격이 시중가와 비슷하여 적은 영치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관급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대신 자비로 살 수 있는 생리대의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103> 생리대 지급

문 항	내 용	시 설 수 (%)
생리대 조달방법	자비	3 (30)
	관급	1 (10)
	자비기본, 필요시 관급	5 (50)
	관급기본, 필요시 자비	1 (10)

(12) 무인감시카메라

여사동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시설인 H소에 가장 여러 곳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오래된 시설인 C소, G소, I소에는 여사동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A소, D소, F소에는 여사동 복도에만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C소는 남사동에는 여러 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사동에는 한 대도 없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었는데, 여사동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여사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곳은 H소와 D소 두 곳밖에 없었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모두 남사동의 보

안과에서 남성교도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 보안과 관리자들은 여사동의 감시카메라는 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사동 감시카메라를 항상 보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스위치를 조작하니까 여사동을 모니터할 수 있었다. 여사동에는 남성교도관이 여성교도관의 참여 없이 시찰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행형법시행령 제28조) 여사동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를 남성 교도관이 관리한다는 것은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표 2-104> 여사동내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현황

기관	거실	복도	작업장	식당	목욕실	접견실	징벌실	화장실	신체검 사실	기타	중앙모 니터링
A		O									보안과
B		O					O				보안과
C											
D		O									보안과 여사동
E		O					O			승강기홀	보안과
F		O									보안과
G											
H	O	O		O			O				여사동
I											
J		O	O				O			외벽, 보호실	보안과

(13) 진정함

모든 조사기관에서 인권위원회 진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5곳은 여사동 현관에, 5곳은 여사동 복도에 설치해두었다. 한 수용 시설(F소)의 경우, 진정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그 수용기관의 명칭이 써여 있어서 수용자들이 그 함

이 무엇을 하는데 쓰이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경우 '각 거실에 부착되어 있다'가 3곳, '복도에 부착되어 있다'가 7곳, '기타 장소'가 1곳(B소)이었다. '기타 장소'는 신체 검사실에 부착되어 있었다.

<표 2-105> 진정함에 관한 항목

문항	내 용	시설수(%)
진정함 위치	여사동현관	5(50)
	사동복도	5(50)
	기타	0(0)
	없다	0(0)
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복수응답)	각 거실에 부착	3(21)
	복도에 부착	10(71)
	기타 장소	1(8)
	없다	0(0)

(14) 개인물품 보관 시설

수용자들이 수용시설에 들어오면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한 항목에서 조사한 10군데 모두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용자가 명세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관 상태가 어떠한지 수용자들은 수용시설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이송시설

이송은 대개 법원으로 나가기 위해 사용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용 시설에

서 버스를 사용하였다. 특이한 경우라면, 1곳(E소)에서는 법원이 바로 옆이라 법원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이동을 한다고 하였다. 만일 남성수용자와 함께 걸어가는 경우에는 출정 여직원 한 명이 함께 가는데, 남성수용자가 앞에 가고 여성수용자는 뒤에 걸어간다고 하였다. 이송 시 차량 종류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였고, 인원이 적을 때는 관용 승합차를 타고 간다는 곳도 있었다. 이송 차량 종류는 J소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 시설에서 남성수용자와 혼용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성수용자와 여성수용자가 함께 차량을 탈 때에는 9곳 모두 여성수용자가 앞에 앉고, 남성수용자가 뒤에 앉는다고 하였다. 계호 직원은 남성교도관과 여성교도관이 함께 한다는 곳이 6곳, 여성교도관만이 한다는 곳이 1곳(J소), 남성교도관만이 할 때도 있다는 곳도 3곳이었다.